

차 례

● 외국인투자법	3
● 합병법	9
● 합병법시행규정	20
● 합작법	70
● 합작법시행규정	75
● 외국인기업법	118
●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126
● 대외경제계약법	15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161
● 토지임대법	179
● 토지임대법시행규정	192
●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226
●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246
● 외화관리법	281
● 외화관리법시행규정	288
● 세관법	307
● 보험법	32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331
● 외국투자은행법	340
●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349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371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 규정	383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체류및 거주규정	389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규정	395

- 자유무역항규정404
-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413
-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집임대사대리업무규정433
-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및지당규정441
-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460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및등록규정471
-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개발및경영규정476
-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485
- 외국투자기업료동규정491
-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505
- 외국인투자기업명칭제정규정516
- 외국인투자기업등록규정521
- 환경보호법527
- 민사소송법544
-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588
-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594
-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609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
 규정618
-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624
-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643
-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649
- 자유경제무역지대 국경검역규정655
- 자유경제무역지대 경계봉행검사
 규정661
- 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665
- 부 록 : 외국인투자 관련 서식 ... 671

외국인투자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외국인투자자란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분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비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투자는 공화국 령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 5 조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상제조직들은 공화국 령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제 6 조 외국투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산,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제 8 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 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

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4조 공화국 법령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 법령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 안에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국투자자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자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합 영 법

1994. 1. 2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합영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 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 영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서의 합영기업 창설은 이 법에 준하지 않는다.

제 3 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

을 장려한다.

제 4 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의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 5 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을 한다.

제 6 조 합영기업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 7 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같은 우대를 한다.

제 8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 2 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 9 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

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합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부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정부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영기업 창설일이 된다.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이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것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

시장가격에 준하여 합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합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권을 상속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제13조 합병기업은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올 수 있다.

제14조 합병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70%이상 되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늘이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제 3 장 합병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16조 합병기업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병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17조 이사회는 합병기업의 기본규약을 수

정 보충하거나 합병기업의 발전대책, 경영 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18조 합병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병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장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병기업은 기본 규약, 이사회와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21조 합병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 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 합병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정부원 대외경제기관 또

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제23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 영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재품을 공화국 영역 안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 판매계획을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 물자에 대하여는 반출입 승인만을 받는다.

제25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나라 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부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노동법과 외국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노력을 관리하며 이용하여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9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0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 4 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 합병기업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간 결산은 다음 해 2월 안으로 한다.

제34조 합병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정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뺀 결산이익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합병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이익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병기업의 결산을 배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 수 있다.

제36조 합병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급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37조 합병기업은 결산문건을 제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이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 이익분배는 결산이

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병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합병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제39조 합병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이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하여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40조 합병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 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다른 나라 합병당사자는 분배받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42조 다른 나라 합병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

고 분배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5 장 합병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43조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 해산된다.

제44조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병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 안에 기업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45조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의 계산은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46조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며 기업채무에 대하여 자기 소유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진다.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범위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 4 조 합영기업의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합영기업과 합영당사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합영기업과 합영당사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5 조 합영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이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하부터는 지대라 한다.) 안에 있는 합영기업과 관련한 사업을 장악 지도한다.

제 6 조 합영기업의 모든 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

다.

제 7 조 공화국령역안에서 합영기업의 창설과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 2 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 8 조 합영은 과학기술부분과 전자, 자동차, 기계제작, 금속, 채취, 동력, 건설, 제약, 화학 공업부분, 건설, 운수, 금융, 관광, 봉사 부분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 조직할수 있다.

제 9 조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을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 대상에 대한 합영은 장려한다.

제 10 조 장려하는 대상의 합영기업,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공화국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

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수 있다.

제11조 국가가 따로 정한 부문의 대상,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에 대한 합병은 금지한다.

제12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효과성이 적은 대상에 대하여서는 합병기업의 창설을 제한한다.

제13조 합병기업을 창설하려는 공화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병계약서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공화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병계약을 맺은 다음 합병기업의 기본규약과 경제기술타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5조 합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3. 기업의 조직목적과 업종, 경영 범위와 규모, 존속기간

4.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분과 출자액, 출자명세, 출자기간, 출자분의 양도
5. 리사회의 조직과 운영
6. 경영관리기구의 정원과 직능, 종업원수 (그중 외국인수), 로터관리
7. 직업동맹조직
8. 생산물의 처리, 설비, 원료, 자재의 구입, 기술이전
9. 재정부기 및 외화리용
10. 전산과 리윤분배, 기금의 조성 및 리용
11. 해산과 청산
12.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 분쟁해결
13.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 및 취소, 보험, 불가항력적인 사유, 준거법
14. 계약의 효력
15.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6조 기본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영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3. 기업의 조직목적, 업종, 생산 품종 및 규모, 존속기간
4.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 출자내용, 출자기간, 출자몫의 양도
5. 리사회의 구성과 임무, 리사회운영방식, 통지방법, 기업의 법정대표
6. 경영관리기구 및 관리성원과 그 임무
7. 재정부기, 로력관리
8. 결산과 분배, 기금
9. 해산과 청산
10.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7조 경제기술타산서에는 투자관계, 건설과 관련한 자료, 생산 및 생산물처리와 관련한 자료, 로력, 원료, 자재, 자금, 동력, 용수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기술적분석자료, 환경보호, 노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8조 합병기업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 지대당국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은 지대밖에 창설되는
합영기업과 지대안의 총투자액 2,000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건설대상, 하부구조건
설대상밖의 대상가운데서 총투자액 1,000
만원이상 되는 합영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지대안에서 총투자액 2,000만
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
설대상밖의 대상가운데서 1,000만원까지
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제19조 공화국투자가는 외국투자가와 합영
계약을 맺은 다음 합영기업창설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합영기업창설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을 바치고 합영기업의 기본규약, 합영계약
서, 경제기술타산서, 합영당사자의 거래은
행신용확인자료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영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3. 창설목적 및 유의성
4.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 및 투자의 단계와 기간

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 날자
6. 업종, 경영범위
7. 생산능력과 생산제품의 수출비율
8. 부지면적과 위치
9. 연간 예정리윤과 분배
10. 관리기구정원 및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11.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0조 지대당국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심의대상에 속하는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달아 정무원대외경제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1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서의 내용을 밝힌 합의의뢰서를 관계기관에 보내어 합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 합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기관과는 총투자액과 현물투자, 생산 및 생산물처리, 소요조건,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2. 재정기관과는 총투자액, 현물 및 현금투자액, 자금원천, 단계별 수익성타산자

료.

3. 과학기술행정기관과는 현찰 및 기술 투자자의 기술분석자료.
4. 건설감독기관 및 국토관리기관과는 건설 및 토지와 관련한 자료.
5. 환경보호기관과는 환경보호와 관련한 자료.

제22조 합의의뢰서를 받은 해당 기관은 그것을 15일안에 검토하고 의견을 밝힌 합의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이 기간안에 해당한 합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한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안으로 심의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합영기업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합영기업창설승인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합영당사자들의 이름, 총무자액과 등복자본, 당사자들의 출자분과 출자액, 출자기간, 기업의 존속기간, 조인에정날자, 위종과 경영범위, 관리기구와 종업원수(그

중 외국인수),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며 부결통지서에는 부결근거, 권고할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합병당사자는 합병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기업소재지의 도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기업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창설승인서사본, 기업의 기본 규약, 기업의 도장표(수표)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병당사자들의 이름과 소재지, 출자문과 출자액, 출자기간
3. 기업의 법정대표와 기업책임자의 이름, 주소
4. 총투자액, 등록자본과 투자기간
5. 존속기간과 조업예정날자
6. 경영활동 내용과 범위

7.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6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을 등록한 다음 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자가 합병기업의 창설일로 되며 이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7조 합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이 아래부터는 세무기관이라 한다.)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세무기관은 세무등록을 한 다음 세무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29조 합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합병기업은 공화국령역안이나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올수 있다.

공화국령역안에 지사를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지사설립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지사설립신청서를 정부원대외경제기관에 내어 합의를 받아야 한다.

지사설립신청서에는 지사의 설립근거, 활동내용, 기구, 설립하려는 장소같은것을 밝히고 지사의 거주승인문건이나 기업창설 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합영기업의 지사는 공화국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 3 장 출 자

제3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출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

재산권에는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토지리용권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32조 조선원과 원료, 자재의 출자는 기업을 조업한후 한 회전분의 류통 및 생산에 쓸수 있는 범위에서 할수 있다.

제33조 현물재산(토지는 제외)의 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이고 불가분리적인것이여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공화국령역안에서 생산하더라도 질적 및

량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것이어야 한다.

출자하는 현물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현물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재산명, 급직, 단위, 수량, 용도, 총액, 생산 공장 및 회사명, 현물재산을 수입해오는 나라이름,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힌 명세서와 계산서, 대외상품검사문건, 해당한 상품알림책이 있어야 한다.

제35조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동산의 면적, 용도, 가격, 부동산권의 유효기간 같은것을 밝힌 설명서와 도면,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자료, 해당 소유권 또는 리용권 증서가 있어야 한다.

공화국투자가가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이관받아야 한다.

제36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절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가운데서 한가지이상의 요구조건에 맞아야 한다.

1.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제품을 생산할수 있어야 한다.
2.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어야 한다.
3. 원료, 로터, 동력을 내폭 절약하거나 공화국의 자원을 충분히 리용할수 있어야 한다.
4.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생산공정이어야 한다.
5. 경제조직사업과 경영관리를 개선할수 있어야 한다.

제37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기술비결의 유효기간은 제외) 같은것을 밝힌 설명서와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제38조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을 경우에 인정된다.

1. 화폐재산은 해당 금액을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한 은행의 기업돈자리에 넣었

을 경우

2. 부동산은 재산등록기관에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리용권 이전수속을 끝냈을 경우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을 끝내고 기업의 구내에 옮겨놓았을 경우
4. 재산권은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의 관할에 넘겼을 경우

제39조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출자하는 재산의 값은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불당일에 무역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라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출자하는 당시 출자재산의 가격이 합병계약 또는 기본규약에 정한 출자의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출자자가 그 차액만큼 더 보충하여 출자하여야 한다.

광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출자

총액은 총출자액의 20%를 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합병당사자는 출자를 한번에 하거나 여러번에 나누어 할수 있다.

출자를 한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출자를 여러번 나누어 하는 경우 첫번째 출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90일안에 출자액의 15%를 하여야 하며 그밖의 출자는 기업창설신청서에 정한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41조 합병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출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정한 출자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출자기간연장신청서를 내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자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출자금액, 출자기간, 연장기간, 연장근거를 밝히고 상대방합영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기간은 여러번 연장할수 있으나 총연

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수 없다.

제42조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끝내지 않았을 경우 기업창설증명서는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합병기업은 기업창설증명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바치고 기업등록과 세무등록, 세관등록, 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3조 출자를 정한 기간안에 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4조 합병기업은 출자자들이 출자를 끝냈을 경우 리사회에서 평가한 다음 출자확인 문건을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미 출자자에게 출자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출자증서에는 출자자의 이름, 출자분, 출자금액, 존속기간, 기업등록 날자와 번호를 밝히야 한다.

제45조 합병당사자는 자기 출자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판매, 증여) 또는 상속할수 있다.

출자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합병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자몹을 판매하는 경우 합병상대방은 같은 판매조건에서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제46조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은 합병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하며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총투자액 3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70%이상
2. 총투자액 300만 1원부터 6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이상
3. 총투자액 600만 1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45%이상
4. 총투자액 2,000만 1원부터 6,0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이상
5. 총투자액 6,000만 1원이상부터는 총투자액의 30%이상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비율은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수도 있다.

총부자액은 합영기업을 창설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총액이다.

총부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충당할수 있다.

제47조 등록자본은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등록자본을 늘이려는 경우에는 리사회에서 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등록자본증가신청서를 내어 합의를 받아야 한다.

등록자본증가신청서에는 증가액과 그 원천, 담보조건, 증가근거를 밝히고 리사회의 결정을 첨부해야 한다.

제48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증가신청서를 합의받았을 경우 기업등록기관에 등록자본의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관 리 기 구

제49조 합영기업에는 리사회로 구성되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리사회에는 리사장 1명과 부리사장 1~2명

을 둔다.

부리사장과 리사들의 수는 합병당사자들이
기본규약에서 정한다.

제50조 리사장과 부리사장은 리사회회의에
서 선거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리사장은 합병기업의 법정대표이다.

부리사장은 리사장의 사업을 방조하며 리
사장이 결원이거나 1개월이상 자리를 비웠
을 경우 그를 대리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51조 리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
집할수 있다.

정기회의는 년 1차이상, 임시회의는 필요
할 때마다 소집할수 있다.

임시회의는 리사, 재정검열원, 청산위원회
의 요구에 따라 할수 있다.

제52조 리사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하기 30일전에, 임시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시회의
를 하기 15일전에 회의날자, 장소, 안건을
리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리사회회의는 전체 리사의 3분의 2
이상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리사회는 기본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기업 책임자와 부책임자, 제정직업원, 제정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 등록자분의 증가, 출자분의 양도, 임종민정, 존속기간연장, 해산, 청산위원회조직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제54조 기본규약의 수정보충, 출자분의 양도, 임종 및 등록자분의 민정, 존속기간연장, 기업해산에 대한 리사회의 결정은 리사회회의에 참가한 리사들의 전원찬성으로, 이밖의 문제는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채택된다.

제55조 리사들의 결의권은 1인 1표제로 한다. 리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리사가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리사장에게 통지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밝힌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지참시켜야 한다.

제56조 리사회의 결정은 손을 들이 하거나 비밀투표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한다.

제57조 리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한 리사장과 부리사장, 리사들이 투표한 다음 기업이 해산된후 5년까지 보관한다.

제58조 합병기업에는 경영관리기구를 둔다. 경영관리기구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 필요한 관리성원이 포함된다.

규모가 큰 합병기업에는 기업의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책임자와 같은 성원들로 협의기구를 들수 있다.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책임자와 재정결렬원은 합병당사자들이 각각 나누어 맡아한다.

제59조 합병기업의 경영대표권은 기업책임자가 행사하며 기업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이상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대리위임을 받은 부책임자가 행사한다.

경영대표권의 범위는 리사회회의에서 정한다.

합병기업의 책임자는 기본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을 관리운영하며 경영활동결과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5.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공동협회의 구성과 임무, 운영방법
7. 기업의 관리성원과 그 임무, 기업의 책임자,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8. 생산 및 판매, 로력관리, 재정부기 및 재정검열
9. 결산, 기금의 조성과 리용,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
10. 해산 및 청산
11. 기본규약의 수정, 보충
12.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0조 경제기술타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비율, 투자액 및 투자방식, 현물투자의 명세
2. 건설물의 연건평과 대상별 건평, 건설투자액, 건설기간, 건설방식, 건설위치, 린점과의 관계, 기존 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비용
3. 지표별 연간 생산량과 수출비율, 국내외시장 수요, 판매(수출)가능성, 폐설물의 리용 및 처리, 외화수지균형

손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 5 장 영 업 허 가

제64조 합병기업은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조업예정날자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예정날자안에 조업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조업기일연장신청서를 내어 조업기일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65조 합병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합병기업창설승인서에 밝힌 조업예정날자안에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서의 발급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영업허가증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66조 영업허가증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이 갖추어져야 발급받을수 있다.

1. 건물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2. 생산기업인 경우에는 시운전을 한 다음

다.

제73조 합영기업은 입종변성승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기업등록기관에 입종변성승인통지서를 내어 입종변성등록을 하고 기업등록증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허가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 6 장 경 영 활 동

제7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자와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이하부터는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을 기술이라 한다.)을 공화국령역안에서 사쓰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수 있으며 기술,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안에 팔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있다.

제75조 합영기업은 불자, 로터, 진가를 공화국령역안에서 보장받으려고 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기관을 통하여 해질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연간 불자구입 및 제품판매계획을 맞붙

리고 수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수공급계약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계약날자, 계약기간, 계약대상, 수량과 질 및 기술적요구, 가격 및 지불조건, 넘겨주고받기, 계약리행담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해결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76조 합영기업은 기본건설을 직접 맡아하거나 건설기업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기본건설을 건설기업에 위탁하여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77조 합영기업은 경영용물자를 공화국의 상업기관에서 직접 사쓸수 있다.

제78조 합영기업의 생산용물자, 생산제품, 기술의 수출입가격(기술봉사료금 포함)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

제79조 합영기업의 수출입물자에는 관세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관세를 적용한다.

제80조 합영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과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공화국의 해당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81조 합영기업은 출자국으로 들어오는 현물재산을 대외상품검사기관(기술은 과학기술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영기업은 현물재산 또는 기술을 검사 및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82조 대외상품검사기관과 과학기술검사기관은 검사 및 확인 의뢰서에 따라 현물재산 또는 기술을 검사, 확인하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83조 합영기업은 경영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 물자의 반출입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출입신청서에는 물자의 이름과 수량, 가격과 금액, 통과 지점과 기간, 반출입근거를 밝히야 한다.

제84조 합영기업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국가가 정해준 기관, 기업소에 조선헌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은 조

선원은 로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로 쓸수 있다.

제85조 기술을 수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수출입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술수출입신청에는 기술의 명칭, 내용, 가격, 수출입근거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86조 물자의 생산제품의 반출입신청서를 받은 해당 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기술수출입신청서는 30일)안으로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한 승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부결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7조 합영기업은 기관, 기업소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가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88조 합영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공화국의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로동법규범에 따라 채용하거나 리용하여야 한다.

제89조 합영기업은 합영계약에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로력으로 쓸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로력채용신청분건을 기업창설심사
승인기관에 내어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90조 합영기업이 받아들인 로력은 자연재
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않는다.

제91조 합영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노동보호
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과 같은 로
동보호물자를 공화국의 노동법규범에 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게 자체로 정하고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9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
직을 내올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징제과임을 잘 수
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다.
2. 종업원들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화 활동과 관련한 사업
을 한다.
3.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
업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노동계약(단체
계약)을 맺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노동계약에는 종업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과 질지표, 로동시간과 휴식, 로동보수와 보험후생, 로동보호와 로동조건, 로동규률, 상벌, 사직 조건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4. 종업원들이 권리,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토의에 참가하여 조언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한다.

제93조 합영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4조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에 활동자금과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자금규모는 월마다 종업원 5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총액의 2%, 종업원 500명이상부터 1,0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총액의 1.5%, 종업원 1,000명이상은 전체 종업원 월로임총액의 1%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한다.

제95조 합영기업은 재정부기계산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제96조 합영기업은 부기종합계산장부, 부기

분석계산장부, 필요한 보조장부,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와 같은 재정부기분건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제97조 합병기업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외화로도 경영계산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선원으로 환산하여 재정부기분건에 기입하여야 한다.

외화에 대한 조선원의 환산은 해당 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교환 및 결제시세로 한다.

제98조 합병기업의 출자증서, 년간결산보고분건, 청산보고분건은 부기검증사부소의 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99조 합병기업의 재정부기분건은 보존년 한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00조 합병기업은 고정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개월안에 정부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고정재산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1조 합병기업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

기, 양도, 적당할수 있다. 이 경우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5일안에 해당한 통지서를 고정재산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통지서에는 고정재산을 처리한 근거를 밝히고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2조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따로 적립하여놓고 고정재산을 갱신하거나 보수하는데 써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류동자금으로도 쓸수 있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류동자금으로 쓰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안으로 매꾸어야 한다.

제103조 합영기업은 고정재산에 대한 실사를 년에 1차이상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을 실사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형을 고정재산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합영기업은 류동재산을 월 또는 분기마다 실사하고 재산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4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외화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 105조 합병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무역은행이나 무역은행밖의 공화국령 역안에 있는 다른 은행에 조선원돈자리, 외화원돈자리, 외화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돈자리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에는 은행돈 자리개설신청서를 해당 은행에 내야 한다.

제 106조 합병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조선원이나 외화를 해당 거래은행에 입금시키고 정한데 따라 써야 한다.

외화는 자체로 수지관형을 맞추면서 써야 한다.

제 107조 합병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화국령의안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수 있다.

다른 나라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외화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108조 합병기업은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있다. 이 경우 외화관리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할 은행의 명칭과 개설금기를 밝힌 분전, 기업창설승인서사본을 내어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09조 합영기업은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넣으려고 할 경우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0조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둔 합영기업은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안에 그 돈자리의 외화 수입, 지출과 관련한 문건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11조 합영기업은 기관, 기업소, 개인과 외화현금거래를 할수 없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소비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써야 한다.

제112조 합영기업에 입금된 조선원출자금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원료 및 자재의 구입비로 쓰거나 로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와 같은 지출에 쓸수 있다.

제113조 합영기업은 폐설물과 부산물을 처리하여 얻은 조선원을 거래은행의 돈자리에 따로 적립하고 지정된 항목에 쓸수 있다.

제114조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7 장 결산 및 분배

제115조 합병기업의 결산연도는 해마다 1월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업을 창설한 해의 결산연도는 기업창설
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업을 해산
한 해의 결산연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해
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6조 합병기업의 연간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뺀
고 결산리율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7조 합병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
당할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
리율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병기업의 결산을 매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수 있다.

제118조 합병기업은 결산리율의 10%까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 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급기금, 분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 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9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세금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공화국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지대안의 합영기업은 결산리윤의 14%,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합영기업은 결산리윤의 20%를 기업소득세로 바친다.

제120조 합영기업은 리윤이 난 해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장려대상의 합영기업과 지대안의 생산 부문 합영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2.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면서 공화국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지대밖의 생산 부문 합영기업과 지대안의 봉사부문 합영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

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떨어줄수 있다.

3. 지대밖의 공화국영역에서 조선동포와
하는 합영기업과 지대안의 합영기업이
총부자의 6,000만원이상 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떨어줄수 있다.

제121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합영기
업은 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를 해당 세무기
관에 내야 한다.

제122조 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
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여
야 한다.

기업소득세감면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업
소득세감면승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23조 합영기업이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승인받은 다음 10년안에 계산하는 경우에
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액을 마쳐야
한다.

제124조 합영기업의 전년도 손실은 예미기

금으로 메꿀수 있다.

전 년도의 손실을 예비기금으로 다 메꿀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바치고 남은 리윤으로 메꿀수 있으나 연속하여 4년을 넘길수 없다.

제125조 합영기업의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 합영기업은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은 연간재정부기결산문건을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바치고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출자몫에 관계없이 합영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배 할수도 있다.

제127조 합영기업은 분기결산문건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에, 연간결산문건을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까지 해당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과 세무기관,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년간결산문건에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28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를 반환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반환신청서를 내야 한다.

재투자한 자본을 투자한 날부터 5년안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되돌려받은 기업소득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쳐야 한다.

제129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세금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공화국령역밖으로 외화를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송금신청서를 해당 은행에 내야 한다.

제 8 장 존속기간 및 해산

제130조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영계약에 정한대로 하며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131조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연장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 기간과 근거를 밝히고 리사회의 결정서사본, 경제기술타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2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병기업의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해당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133조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연장승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기업등록기관과 세무등록기관에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일 같은것을 밝히고 존속기간연장승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4조 기업등록기관, 세무등록기관은 합병기업의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에 따라 해당한 변경등록을 하고 기업등록증, 세무등록증과 같은 해당한 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35조 합병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

1. 재판소가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2.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3. 합병당사자들이 계약의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4.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사유로 기업을 할수 없는 경우
5. 의사회에서 기업의 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6. 기업장설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제136조 합병기업은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업을 할수 없는 경우, 리사회에서 기업해산을 결정하였을 경우 기업해산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기업해산신청서에는 해산근거를 밝히고 리사회결정서(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문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7조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 입은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138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기업해산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해당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39조 합영기업은 해산이 승인된 날부터 15일안에 리사회에서 토의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성원에는 합영기업의 책임자, 채권자대표, 부기검증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0조 합병기업이 정한 기간안에 청산위원회
조직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재판
소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1조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줄데 대한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재판소가 기
업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기업창설승
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재판
소 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청산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142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대표를 선출한
다.
2. 기업의 재산과 공인을 넘겨받아 재산을
관할한다.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제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며
청산안을 작성한다.
5. 거래은행, 세무기관, 기업등록기관에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한다.

6.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를 넘겨받아 처리한다.
7. 세금을 바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143조 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하며 공시하여야 한다.

제144조 채권자는 해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산공시를 한 날부터 90일) 안에 채권청구서를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채권청구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근거를 밝히고 해당한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5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서를 받은 순서대로 채권을 등록하며 청산안에 따라 채권을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안은 기업을 해산시킨 리사회 또는 재판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46조 합병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비용,

청산위원회성원들의 보수, 종업원들의 보
동보수, 기업소득세, 기업의 채무 순서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합
영당사자들의 출자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147조 청산위원회(재판소가 조직한 청산
위원회는 제외)는 기업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해당 재판소에 파산선고를 신청
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결로 파산이 선고되었을 경우
에는 청산사업을 재판소에 넘겨주어야 한
다.

제148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안에 청
산보고서를 만들어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
에 내야 한다. 파산에 의한 청산사업을 끝
냈을 경우에는 재판소에도 청산보고서를
내야 한다.

제149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기업등록증과 영입허가증, 세무등
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하며 거래은행
에 기업분자리취소신청을 내야 한다.

제150조 청산위원회성원은 청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청산위원회를 조직한 리사회 또는 재판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 앞에 책임진다.

제151조 기업등록기관은 합병기업의 해산을 등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152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지대당국, 기업등록기관은 합병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의 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세무등록기관은 필요한 경우 합병기업의 재정부기문건과 현물을 검열할수 있다.

제153조 감독통제기관은 합병기업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것을 시정시키고 정도에 따라 1만원부터 1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정사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킬수 있다.

1. 기업창설문건, 기업등록문건, 세무문건, 재정부기문건을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2. 정한 부기장부밖의 다른 부기장부를 두었을 경우

3. 정한 가급을 법과 규정대로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4. 기업의 청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5. 등록된 기업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쓰고있을 경우
6. 변동사항을 정한 기간안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7. 승인없이 지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8. 법에 이긋나게 리윤을 분배하였을 경우
9. 승인된 업종밖의 영입을 하였을 경우
10. 기본규약을 자의대로 고쳤을 경우
11. 등록자본을 승인없이 줄였을 경우
12. 승인없이 6개월이상 영입을 중지하였을 경우

제154조 출자하는 원본의 가격과 질, 수량을 계약과 다르게 속여 출자한 경우에는 계약가격과 평가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권을 람용하여 비법적으로 수입을 얻었거나 기업의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소득액 또는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평가, 부기검증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하이 얻은 비법적소득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

자한 재산을 빼낸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그 재산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의 이름으로 은행돈자리를 열고 기업의 재산을 예금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비법소득액의 5~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벌금으로 물린다.

제155조 문건의 접수, 심사승인, 감독통제 사업을 법규범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법적제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해당하는 제재를 준다.

제156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157조 합영기업은 해당 일군의 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일군이 속한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158조 합영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합 작 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경제
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
지한다.

제 2 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
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분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
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 부문에도 조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
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
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5 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
70.

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을 할 수 있다.

제 6 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투자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한 해당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으로 그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 안에 해당기업 소재지의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날이 합작기업 창설일로 된다.

제 9 조 합작기업은 승인된 합작업종을 다음 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승인된 업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측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정부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다.

제12조 합작기업은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다.

제15조 외국투자자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 기타 소득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예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9조 합작 당사자들 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제20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 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정무원 내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합작법시행규정

1995. 12. 4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다.

제 2 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외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공화국령역안에 합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다.

제 3 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업을 창설하고 공화국측에서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문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제 4 조 합작기업은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창설운영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관광, 봉사 부문에도 합작기업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제 5 조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대상에는 합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6 조 장려하는 대상의 합작기업,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공화국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합작기업,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지역에 창설운영되는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 또는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수 있다.

제 7 조 나라의 안전과 국가 및 사회의 리익에 지장을 주는 대상, 국가가 따로 정한 대상의 합작은 금지하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심히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효과성이 적은 대상의 합작은

제한한다.

제 8 조 합작기업은 당사자들이 투자한 재산과 기업운영과정에 늘어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법인이다.

제 9 조 합작기업은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안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0 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계약에 정한대로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한 리운을 분배받으며 합작기업이 외국측 투자자에게 투자몹을 상환해주거나 리운을 분배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외국측 투자가는 합작계약에 따라 합작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협조하며 투자몹을 상환받거나 리운을 분배받는다.

제 12 조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은 법적보호를 받으며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합작사업에 대한 통일적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합작사업에 대한 지도는 지대의 사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한다.

제14조 합작기업의 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외국측 합작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외국어로 된 번역문을 붙일수 있다.

제15조 이 규정은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분이 기업등록자본의 30% 이상인 합작기업에 적용한다.

맞물림무역이나 가공무역 형태로 외국투자를 받아들여 합작을 하는 기업체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법과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합작기업의 창설

제16조 합작기업은 앞선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설비를 갱신하여 제품의 질을 국제적수준으로 높일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출품을 생산할수 있거나 연료,

원료, 자재, 동력을 절약하고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어야 창설할수 있다.

제17조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계약서초안, 경제기술타산서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음 외국측 투자자와 함께 합작계약서, 기업의 기본규약, 경제기술타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8조 합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규모, 존속기간
4.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몫, 투자액, 투자기간과 투자몫의 양도
5. 투자내용(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6.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7. 관리기구정원,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8. 생산규모와 자금, 설비, 자재, 연료,

동력의 소요량과 그 보장조건, 생산물처리방법

9. 생산과 판매, 기술이전
10. 로력, 제정부기, 외화리용
11. 결산과 기금의 조성 및 리용
12. 투자몹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
13. 해산과 청산
14.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 분쟁해결
15.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 취소, 계약의 효력, 보험
16.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9조 합작기업의 기본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및 규모, 존속기간
4.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몹, 투자액, 투자내용(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투자기간, 투자몹의 양도

5.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공동협회의 구성과 임무, 운영방법
7. 기업의 관리성원과 그 임무, 기업의 책임자,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8. 생산 및 판매, 로력관리, 재정부기 및 재정검열
9. 결산, 기금의 조성 및 리용, 투자문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
10. 해산 및 청산
11. 기본규약의 수정, 보충
12.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0조 경제기술타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비율, 투자액 및 투자방식, 현물투자의 명세
2. 건설물의 연건평과 대상별 건평, 건설투자액, 건설기간, 건설방식, 건설위치, 린점과의 관계, 기존 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비용
3. 지표별 연간 생산량과 수출비율, 국내외시장 수요, 판매(수출)가능성, 폐설물의 리용 및 처리, 외화수지균형

4. 로력, 자금, 자재, 원료, 연료, 동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5. 단계별에 따르는 지표별 예정수입, 항목별 원가, 결산리윤, 세금을 비롯한 공제액, 리윤분배, 투자상환방식과 기간
6. 기본생산기술공정과 기술경제적지표, 새 기술(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내용과 그 평가가격 및 사용가치
7. 환경보호, 노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
8. 이밖에 필요한 내용
9. 종합적인 분석평가내용

제21조 합작기업의 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은 지대밖의 합작대상, 지대안에서 총투자액 2,000만원이상 되는 하부구조건설대상과 그밖의 대상가운데서

총투자액이 1,000만원이상 되는 합작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지대안에서 총투자액 2,000만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그밖의 대상 가운데서 1,000만원까지의 합작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제22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합작기업창설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합작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 합작당사자거래은행의 신용확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과 유익성
4.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몹과 투자액, 투자 단계와 기간
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 날자
6. 업종과 경영범위
7. 생산능력과 생산물의 수출비율

8. 부지면적과 위치
9. 연간 예정리윤과 분배, 투자몫의 상환
10. 관리기구장원 및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11.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3조 지대당국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심사승인대상에 속하는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정무원대외경제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4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관계기관에 합작기업창설합의의뢰서를 보내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여야 한다.

1. 계획기관과는 총투자액과 현물투자, 생산 및 생산물처리, 로력, 자금, 자재, 원료, 연료, 동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단계별 수익성타산과 관련된 자료
2. 제정기관과는 총투자액, 합작당사자들의 투자액과 투자내용(현물, 현금) 및 그 보장대책, 투자상환 및 리윤분배 방법과 같은 자료

3. 과학기술행정기관과는 현물 및 기술 투자
자의 기술분석, 기술이전과 같은 자료
4. 건설감독기관과는 건설과 관련한 소요
조건, 그 보장대책과 같은 자료
5. 국토관리기관과는 토지의 임대 및 리용
과 관련한 자료
6. 환경보호기관과는 환경보호 및 산업위
생과 관련한 자료

제25조 합작기업창설합의의뢰서를 받은 해당관계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밝힌 합의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이 기간안에 해당한 합의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한것으로 인정한다.

제26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안으로 심의하고 합작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합작기업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는 합작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총투자

액과 등록자본, 당사자들의 투자몹과 투자액, 업종과 생산규모,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투자기간, 합작기간, 조업예정날자, 투자상환 또는 리윤분배 방법,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7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도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을 기업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합작기업등록신청문건을 내어 기업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등록을 한 날자가 합작기업의 창설일로되며 합작기업은 이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8조 합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제정기관(이 아래부터는 세무기관이라 한다.)에 세무등록신청문건을 내어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9조 합작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신청문건

을 내어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합작기업의 관리성원은 다른 기관 또는 기업의 직무를 겸임할수 없다.

제31조 합작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합작기업의 재정부기문건을 검열하고 검열보고서를 만들어 기업책임자에게 내야 한다.

제32조 합작기업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회를 운영할수 있다.

공동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필요한 수의 정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합작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협의회 정원에는 합작당사자와 기업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합작당사자 일방이 다 맡아할수 없다.

제33조 공동협의회는 합작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소집한다.

회의 날자와 장소, 토의안건은 기업책임자가 회의소집 30일전에 공동협회에 참가할 성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 공동협의회에서는 새 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투자 및 재투자, 투자몫의 양도, 등록자본의 증가, 업종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기업의 발전대책, 연간경영활동계획과 같은 합작기업의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한다.

제35조 합작당사자들은 공동협의회에서 토의하고 합의한 문제를 건별로 계약하거나 합작계약서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투 자

제36조 합작기업에 투자하는 몫은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으나 외국측 투자자는 등록자본의 30%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제37조 합작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것으로 투자할수 있다.

제38조 외국측 투자자가 투자하는 현물재산은 투자자의 소유이면서 합작기업에 반드시 필요한것이아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것이어야 한다.

현물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현물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재산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가격, 생산공장 및 회사의 이름, 현물재산을 수입해오는 나라 이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힌 명세서와 대외상품검사문건, 해당한 상품알림책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제40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어야 투자할수 있다.

1. 새로운 제품 또는 수출품을 생산할수 있거나 현존 생산설비와 기계의 성능을 개조하고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어야 한다.
2. 원료, 자재, 로력, 연료, 동력을 대폭 절약하고 공화국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어야 한다.
3.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지 말아야 한다.

제41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기술비결의 유효기간은 제외) 같은것을 밝힌 설명서와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제42조 투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을 때에 인정한다.

1. 화폐재산은 해당 금액을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한 은행의 돈자리에 넣었을 때
2. 부동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냈을 때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이전수속을 끝내고, 기업의 구내에 옮겨놓았을 때
4.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은 해당 소유권 증서를 기업의 관할에 넘기었을 때
5. 기술비결은 계약에 정한 기술이전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제43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작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평가한다.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비결의 평가가격이 합작계약서 또는 기본규약에 정한 투자 의무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가 그 차액만큼 보충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제44조 투자하는 재산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화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돈자리에 넣은 날에 무역은행이 발표한 환률에 따라 조선원으로 계산한다.

제45조 합작당사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90일안에 투자 의무액의 15%를 투자하여야 하며 그밖의 투자는 합작기업 창설승인서에 정한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자를 정한 기간안에 할수 없는 경우에는 정한 투자기간이 지나기 1개월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투자기간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투자금액, 투자기간, 연장기간, 연

장근거를 밝히고 상대방 합작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투자기간은 여러번 연장할수 있으나 총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수 없다.

제47조 투자를 정한 기간안에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합작기업은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바치고 기업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 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합작당사자는 투자를 정한 기간안에 하지 않아 상대방 합작당사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수 없이 해산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제49조 합작기업은 합작당사자들이 투자를 끝내었을 경우 투자확인문건을 부기검중사무소의 검증을 받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며 투자자에게는 투자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투자증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투자금액, 투자몹, 투자받은 합작기업의 명칭과 존속

속기간, 등록날자와 번호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50조 합작당사자는 자기 투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중여, 판매에 한함) 또는 상속할수 있다.

투자몫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합작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몫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판매조건에서 상대방 합작당사자가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합작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작당사자들이 투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총투자액은 합작기업의 류동재산과 고정재산의 총액으로 하며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총당할수 있다.

제52조 등록자본은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등록자본을 늘이려는 경우에는 합작당사자들이 합의한 다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등록자본증가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자본증가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 투자액, 등록자본, 등록자본의 증가액과 증가방법, 증가근거를 밝히고 합작당사자들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 합작기업은 투자기간의 연장, 투자액의 양도 또는 상속, 등록자본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안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경영활동

제54조 합작기업은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조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조업기일연장신청서를 내어 조업기일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업기일연장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조업기일연장리유와 연장기일을 밝히고 근거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합작기업의 조업기일은 여러번 연장할 수 있으나 총연장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조업기일안에 조업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
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합작기일은 기업
창설심사승인기관에 합작기업창설승인서
를 바치고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취소수속
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합작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밝
힌 조업예정날자안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서의 발급은 정무원대외경제기
관 또는 지대당국이 한다.

제57조 영업허가증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
건이 갖추어져야 발급받을수 있다.

1. 건물을 신설 또는 개건, 확장하는 경우
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2. 생산부문에서는 시운전을 한 다음 시제
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3. 봉사부문에서는 해당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봉사물자의 구입과 같은 봉사준
비를 끝내야 한다.
4.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한 투자를 하

여야 한다.

5. 이밖에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야 한다.

제58조 영업준비를 끝낸 합작기업은 준공검사기관, 부기검증사무소,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환경보호를 검증하는 해당기관에 검사 또는 확인 의뢰서를 내야 한다.

검사 또는 확인 의뢰서를 받은 해당기관은 정한 기간안으로 의뢰대상을 검사 또는 확인하고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시정시킨 다음 해당한 검사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59조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신청서를 정무원대와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조업예정날자,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실적, 업종 같은것을 밝히고 시제품건본, 해당기관의 투자확인서, 준공검사서,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건, 환경영향평가서, 합작기업창설승인서

사본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은 영업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세무기관에 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은 날이 합작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제61조 합작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안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업종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업종변경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업종변경 내용과 이유를 밝히고 경제기술타산서와 합작당사자들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업종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63조 합작기업은 업종변경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기업등록기관, 세무등록기관, 세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업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수속을 거쳐 영업허가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64조 합작기업은 기업창설과 경영에 필요한 로력, 물자, 기술, 설비, 전기 같은것을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구입할수 있으며 생산제품이나 구입한 물자를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에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에 계획을 맞물리고 수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수공급계약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계약날자, 계약기간, 계약대상과 수량, 질, 기술적요구, 가격 및 대금지불, 넘겨주고받기, 계약리행 담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해결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65조 기관, 기업소는 합작기업과 맞물린 로력, 물자, 전기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

장해주어야 한다.

제66조 합작기업은 직접 또는 공화국의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기업창설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 기술(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비결)을 수입하거나 생산제품과 기술을 수출할수 있으며 그것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팔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살수 있다. 이 경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는 물자의 반출입신청서를, 과학기술행정기관에는 기술의 수출입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은 물자(생산제품 포함)의 반출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과학기술행정기관은 기술의 수출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부결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8조 합작기업의 생산용물자, 생산제품, 수입상품, 기술의 수출입 가격과 국내구입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하는 생산제품을 비롯

한 모든 물자와 기술의 가격은 국가가격제
정기관이 정한 가격에 준한다.

제69조 합작기업은 경영용물자를 공화국의
상업기관에서 직접 사출수 있다.

제70조 합작기업은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
자기업과 샅가공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샅
가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71조 합작기업은 기본건설을 직접 맡아하
거나 건설기업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건
설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범
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제72조 합작기업은 외국측 합작당사자의 투
자 붓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대외상품검사
기관(기술은 과학기술검사기관)에 의뢰하
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
는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이
야 한다.

제73조 대외상품검사기관과 과학기술검사기
관은 검사 또는 확인 의뢰서에 따라 의뢰
대상을 검사 또는 확인하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74조 합작기업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

을 해당 기관, 기업소에 조선원을 받고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받은 조선원은 원료 및 자재비, 로력비, 대외사업비로 쓰거나 세금, 사용료를 무는데 쓸수 있다.

제75조 합작기업종업원의 로동보수는 외국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따라 지불한다.

제76조 합작기업은 외국합작당사자의 기술자나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로력채용신청서를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자대당국에 내어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인로력채용신청서에는 채용할 기술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채용근거, 채용기간, 거주지, 기술이전내용, 기술이전기간, 생활보장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77조 합작기업의 종업원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로동보호,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다.

제78조 합작기업의 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부기계산법규범에

따라 한다.

제79조 합작기업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국합작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계산된 조선원은 외화로 환산하여 부기문건에 기입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해당시기 외화 교환 및 결제 사세로 한다.

제80조 합작기업의 출자증서, 연간결산보고문건, 청산보고문건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81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산관리, 자재및 제품관리, 재정관리를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해당 법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82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따로 적립하여 놓고 고정재산을 갱신하거나 보수하는데 써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류동자금으로 쓸수 있으나 다음분기안으로 메꾸어야 한다.

제83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외화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84조 합작기업에 출자된 조선원은 공화국
령역안에 있는 원료, 자재의 구입비로 쓰
거나 로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와
같은 지출에 쓸수 있다.

제85조 합작기업은 폐설물과 부산물을 처리
하여 얻은 조선원을 거래은행의 돈자리에
따로 넣고 정한 항목에만 쓸수 있다.

제86조 합작기업은 외화수지균형을 자체로
맞추어 써야 한다.

제87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령역안에 있는
보험기업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5 장 결산 및 투자뭉상환, 리운분배

제88조 합작기업의 결산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합작을 시작한 해의 결산년도는 기업창설
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업을 해산
한 해의 결산년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해
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89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년간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지출, 거래세를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0조 합작기업은 해마다 연간결산리윤에서 5%를 떼어 등록자본금의 25%가 될 때까지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작기업의 결산을 매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쓸수 있다.

제91조 합작기업은 결산리윤의 10%까지 확대재생산 및 기술발전 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확대재생산 및 기술발전 기금은 자체의 계획에 따라 쓰며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은 해당 재정기관과 합의밑에 써야 한다.

제92조 합작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해당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93조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는 공화국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지대밖의 합작기업은 다음과 같이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1. 기업소득세를 20%로 한다.

2. 생산부문에서는 10년이상 기업을 운영 하는 경우 리윤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3. 총투자액 6,000만원이상 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리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50% 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제94조 외국측 합작당사자는 투자몫으로 상환받았거나 분배받은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기업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

제95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반환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 대상확인문건을 첨부한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 신청서를 해당 세무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6조 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

자에게 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승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승인서에는 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 대상과 비율 및 금액, 기간과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히야 한다.

제97조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승인받은 다음 10년안에 합작기업을 해산하는 경우와 투자자본 및 재투자자금을 투자한 날부터 5년안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거나 반환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98조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다른것으로 할수도 있다.

제99조 합작기업의 리윤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 의무를 이행하는데 먼저 쓸수 있다.

제100조 합작기업은 외국측 투자가의 몫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투자몫을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제101조 합작기업은 리윤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 결산리윤에서 세금과 기금을 공제하고 남은 리윤을 합작계약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102조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에 대한 연간총화는 연간부기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토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은 다음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 전으로 하여야 한다.

제103조 투자몫상환이나 리윤분배를 제품으로 하는 경우 그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4조 합작기업은 분기결산문건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에, 연간결산문건을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까지 해당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과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연간결산문건에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5조 외국측 합작당사자는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로 받은 물자, 자금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세금없이 공화국
령역밖으로 내 갈수 있다.

제 6장 존속기간 및 해산

제106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합작기업창
설승인서에 정한대로 하며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107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
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
기관에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연장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
제지, 연장기간과 근거를 밝히고 당사자들
의 합의서와 정제기술타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
의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
하는 결정을 한 다음 해당한 통지서를 보
내주어야 한다.

제109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연장승인통지

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에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일 같은것을 밝히고 존속기간연장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10조 기업등록기관, 세무등록기관은 합작기업의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에 따라 해당한 변경등록을 하고 기업등록증, 세무등록증, 영업허가증을 다시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11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이 경우 외국측 당사자가 투자한 재산은 공화국측 당사자의 소유로 된다.

제112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할수 있다.

1.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사유로 기업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2. 합작당사자들이 기업의 해산을 합의한 경우
3. 기업이 파산되었거나 합작승인 또는 기

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13조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업운영이 터는 불가능한 경우, 합작당사자들이 기업해산을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기업해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해산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해산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그것을 확인할수 있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기업해산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심사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한 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제115조 합작당사자들은 합작기업의 해산이 승인된 다음날부터 15일안에 공동협의회를 열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성원에는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 부기점종원, 합작당사자 또는 제정점연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6조 합작기업이 파산되었거나 합작기업창설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되었을 경

우에는 재판소 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이 청산성원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제117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하며 채권자대표를 선출한다.
2. 기업의 재산과 도장을 넘겨받아 관할한다.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재산에 대한 잔존가치를 조선원으로 평가한다.
5.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를 넘겨받아 처리한다.
6. 재정결산서와 청산안을 작성한다.
7. 거래은행, 세무기관, 기업등록기관에 기업의 해산에 대하여 통지한다.
8. 세금을 바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며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9. 이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118조 청산위원회는 조직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기업의 청산에 대하여 통지하며 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 합작기업에 대한 채권자는 청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청산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청산공지를 한 날부터 90일)안에 채권청구서를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채권청구서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채권의 내용, 근거를 밝히고 해당하는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서를 받은 순서대로 등록하며 청산안을 작성하여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 또는 재판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1조 합작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비용, 청산위원회성원들의 보수, 종업원들의 노동보수, 세금, 기업의 채무 순서로 처리하며 남은 재산은 합작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남은 재산으로 외국측 당사자의 투자빚을 다 상환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측 당사자가 그것을 끝까지 상환할 책임을 진다.

제122조 합작당사자가 조직한 청산위원회는 청산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재판소에 기업의 파산을 제기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결로 파산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을 재판소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23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날부터 10일안에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파산에 의한 청산인 경우에는 재판소에도 청산보고서를 내야 한다.

제12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례로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하며 거래은행에 기업돈자리취소신청을 내고 기업의 해산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25조 청산위원회성원은 청산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126조 합작기업의 문건은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20년, 영구 보존한다.

제 7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127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기업등록기관은 합작과 관련한 법규범의 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한다.

세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합작기업의 재정부기문건을 점열할수 있다.

공화국측 투자가의 웃기관은 합작기업에 대한 기술실무적 지도와 통제를 한다.

제128조 합작기업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정도에 따라 1만~10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정상에 따라 일정한 기간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합작기업의 창설 또는 기업등록을 취소할수 있다.

1.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 기업등록문건, 세무문건, 세관수속문건, 재정부기문건을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하였을 경우
2. 정한 재정부기문건밖의 다른 재정부기문건을 두었을 경우
3. 기금을 정한대로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4. 등록된 기업의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
5. 변경사항을 정한 기간안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6. 승인없이 지사를 내오거나 등록자본을 줄였을 경우와 기본규약을 고쳤을 경우
7. 합작계약과 어긋나게 투자상환을 하거나 리윤을 분배하였을 경우
8. 승인된 업종밖의 영업을 하였을 경우
9. 기업의 청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10. 승인없이 6개월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제129조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을 물릴수 있다.

1. 투자하는 현물재산의 가격과 질, 수량을 합작계약과 다르게 속여 투자하였을 경우 계약가격에서 평가가격을 더한 값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청산위원회성원이 직권을 랍용하여 비법적으로 수입을 얻었거나 기업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소득액

- 또는 손해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산평가, 부기검증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득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4. 기업창설후 투자한 재산을 당사자에게 알려지 않고 빼낸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빼낸 재산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
 5. 기업의 재산을 개인의 돈자리에 예금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고 그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130조 이 규정을 이진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131조 외국측 당사자는 합작기업과 관련한 해당 일군의 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청원을 할수 있다.

신고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 부터 30일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132조 합작기업과 관련한 의견사항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

는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
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2 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투자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6 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 7 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 타산서, 투자가의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비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에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

하거나 부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이 승인되면 3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 창설일로 된다.

외국인가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인기업은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 11 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나라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 12 조 외국투자가는 승안받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 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투자가가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14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다.

제17조 외국인기업이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부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도 있다.

제1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제지 안에 재정부기분건을 두어야 하며,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계산 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 관련한 로력을 기업 소제지의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한 로력을 해고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다른 나라 기술자, 기능공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징무원 태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노동조건 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등록자본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부 정형을 검열 감독할 수 있다.

제 4 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8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30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된 도행정 경제위원회에 해산 또는 파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제31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

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1994. 3. 29 정부원 결정 제13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경제부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투자가가 자본을 단독으로 투자하여 창설하며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며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4 조 외국인기업의 창설 및 운영은 이 규

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외국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6 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문건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내는 문건을 조선어로 써야 하며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 7 조 투자가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1. 전자공업, 자동차공업, 기계제작공업, 동력공업 부문
2.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 부문
3.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 부문
4. 건설, 운수 및 봉사 부문
5. 이밖의 필요한 부문

제 8 조 외국인기업은 다음의 조건 가운데에

서 어느 한가지라도 만족시키는 경우에
야 창설할 수 있다.

1.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
신설비로 장비되어야 한다.
2.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제 9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1. 공화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
떨어진 경우
4.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음 경우
5.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
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
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 10 조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없다.

1. 출판, 보도, 방송 부문
2. 체신부문
3. 이밖에 국가가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부문

제1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위한 수속을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도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직무, 외국인기업 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업종, 생산품종 및 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거래은행, 투자 방식과 기간, 주요생산 기술공정자료, 생산제품의 실현대상시장과 실현방식, 기업의 기구, 종업원수 및 노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건설부지면적과 희망하는 위치, 용수, 동력 및 원자재 소요량, 연도별 생산계획, 경영기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투자

가에 대한 증명분진,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 명세,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과 그에 대한 설명서, 투자가의 자본산용확인서, 이밖에 필요한 분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기업의 창설목적, 경영범위, 생산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방식과 기간, 기업의 기구 및 그 직능, 이사장·사장·부기장·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경영기간, 해산 및 청산, 기본규약의 수정절차,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은 기업창설을 심사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의 정제타산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계획, 생산계획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산공정설비의 기술 및 유익성 분석자료,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 주요 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종

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원 양성계획, 단계별 수익성 타산자료, 이밖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에는 기계설비 및 자재의 이름, 규격, 단위, 수량, 용도, 단가, 총액, 생산공장 및 회사명, 수입해 오는 나라 이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계설비와 관련한 상품알림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설명서에는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 같은 것을 밝히고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공업소유권증서 사본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 창설을 위한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대외경제기관'이라 한다)와 지대당국이 포함된다.

대외경제기관은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총투자액 2천만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투자규모가 적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할 수 있다.

제19조 지대당국은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하는 대상의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제20조 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2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기업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주소, 외국인기업 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 조업예견날자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은 지대 또는 다른 나라에 자기의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두거나 새끼회사를 내올 수 있으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 것을 내오거나 기업을 연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건설을 공화국의 해당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 3 장 투자절차와 방법

제25조 외국인기업은 총투자액과 규모에 따라 정한 등록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의 총액이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 가운데서 국내 당국에 등록된 자본의 총액이다.

제26조 등록자본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1. 총투자액 6백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 이상
2. 총투자액 6백만원 이상부터 2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45%(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9백만원까지는 410만원) 이상
3.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부터 6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2천 7백만원까지는 950만원) 이상
4. 총투자액 6천만원 이상은 총투자액의

30% (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7천 7백 만원까지는 2천 6백 만원) 이상

제27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데 따라 지대당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8조 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의 가격은 투자가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투자하는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것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투자가의 소유권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2. 경쟁력이 강한 수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평가액이 등

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4조 외국인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재지의 노력알선기관과 노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5조 채용한 공화국의 노력을 계약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노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계약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6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외국인가위의 종업원 노임기준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노동규정에 따른다.

제58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은 직업동맹조직 안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다.

2. 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과 과학지식 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3. 외국인기업과 노동조직, 노동보수, 노동보호와 관련한 단체계약을 맺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4. 외국인기업과 종업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조정한다.
5. 종업원들의 권리, 이익과 관련한 문제 토의에 참가하여 돈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한다.

제60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직업동맹 대표와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사업 조건과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62조 외국인기업은 월마다 직업동맹조직에 다음과 같은 활동자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1. 종업원 5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2%에 해당하는 자금
2. 종업원 500명 이상부터 1,0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1.5%에 해당하는
자금

3. 종업원 1,000명 이상은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1%에 해당하는 자금

제 7장 경영기간과 해산

제63조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등록
증이 발급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64조 경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영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심사승인기
관에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은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받
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승인해 주거나 부
결하여야 한다.

제65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기간을 연장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경영기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외국인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는 다음
과 같다.

1. 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2.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가
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4.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5.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되었
을 경우

제67조 외국인기업을 해산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해산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
다. 지대당국은 접수한 기업해산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기가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
여서는 직접 해산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
여는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날이
기업해산일로 된다.

제68조 외국인기업은 해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해산을 공개하고 채권 채
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해산을 공개한 날
부터 15일 안으로 청산위원회 위원명단을

심사승인기관에 내어 합의를 받아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의받은 날부터 1주일 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0조 청산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기업의 책임자
2. 채권자의 대표
3. 심사승인기관의 대표
4. 부기검증원
5. 변호사

제71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 회의를 소집한다.
2.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할한다.
3. 채권 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5. 청산안을 작성한다.
6. 세금을 바치고 채권과 채무를 청산한다.
7.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72조 청산과 관련한 비용은 해산되는 외국인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73조 외국인기업은 청산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투자한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례로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심사승인기관에 낸 다음 지대당국에 기업등록종과 영업허가증을 바치고 기업 및 세무취소등록 수속을 하며 해당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 8 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75조 심사승인기관은 외국인기업의 장부와 현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76조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시키거나 정도에 따라 외국인기업에는 1만원까지, 외국인에게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1. 등록질서를 어기었을 경우

2.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3. 투자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4. 수출입 입부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77조 탈세행위를 하였거나 세금을 제때에
불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
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
정에 따르는 연체료와 벌금을 물린다.

제78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업종할 경우
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사
킬 수 있다.

제79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거래에서 생기
는 의견사항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
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제80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
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기
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외경제계약법

1995. 2. 2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대외경제계약에는 무역, 투자, 봉사 와 관련한 계약이 속한다.

제 3 조 대외경제계약당사자로는 대외경제 거래를 하도록 승인받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제 4 조 국가는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제 5 조 국가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 6 조 국가는 대외경제계약당사자들이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으며 그 이행 과정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도복 한다.

제 7 조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정부원대외경제기관이 한다. 계약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도 감독통제할 수 있다.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이행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2 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제 9 조 계약당사자는 승인된 입종, 지표, 수량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법인 또는 거주 등록과 재산, 이행담보 같은 신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은 정부원대외경제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맺는다. 그러나 표준계

약서의 일부 내용을 달리 정하려하거나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

제11조 공화국령역에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것과 관련한 계약, 거래액이 많거나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계약의 체결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들이 참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참가없이도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이 경우 한편 계약당사자가 제기하고 상대방 계약당사자는 승낙하는 방법으로 맺는다.

제13조 계약체결은 서면으로 한다.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맺은 계약도 서면계약으로 인정한다.

제14조 계약은 다음과 같은 때에 효력을 가진다.

1.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한 때
2. 계약서에 지정한 계약효력발생조건이 이루어진 때

3.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해당 기관
이 승인한 때

제15조 계약은 위임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도 맺을 수 있다.

제16조 상품목록, 기술자료 같은것은 계약
서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계약을 맺기전에 이루어진 합의서나 통신
교환문서는 계약이 맺어진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7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대표자 또
는 그 대리인이 수표한다.

제18조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
적리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 가만이나 강
요로 맺은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 3 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제19조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계약의
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 계약내용을
변경시키 리행할수 없다.

제20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리행하는 경우 그 리행

지고 다닐 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제27조 이사짐, 상속재산은 허가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낼 수 있다. 이사짐, 상속재산이라도 통제품은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들어오거나 내보낼 수 있다.

제28조 장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을 리용하여 물건을 들어오거나 내가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29조 무기, 탄약, 폭발물, 독약, 마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물건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제품은 들어오거나 내보낼 수 없다.

제30조 당 및 정부 대표단성원, 외교일군, 국제기구성원 그밖에 따로 정한 일군의 몸짐과 손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있거나

제24조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는 그 의무를 계속 리행하려고 할 경우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계약리행기간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늘이거나 줄일수 있다.

제 4 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제26조 계약당사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기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계약의 양도기간은 계약리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일부 변경할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에는 수정, 삭제, 보충이 속한다.

제28조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할수 있다.

1. 정한 기일에 계약을 리행할수 없거나 그 리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당사자가 리유없이 계약의무리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포기한다는것을 선언한 경우
3.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은 경우
4.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5.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계약리행기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6. 이밖에 계약에서 정한 취소조건이 발생한 경우

제29조 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어겼거나 리행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30조 계약을 승인한 기관은 해당 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부터 6개월이상 리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31조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해보상, 청산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은 상실

되지 않는다.

제32조 계약의 양도, 변경,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계약을 양도, 변경,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 5 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제33조 계약을 이긴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손해를 입힌 계약당사자는 보상의무를 진다.

제34조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불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은 화폐, 현물, 재산권으로 하거나 가격조절 또는 자체비용으로 허물을 없애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35조 손해보상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손해보상청구기간에 한다.

계약에 손해보상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르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시효기간에 할 수 있다.

제36조 보증조건이 설정된 계약대상의 허물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는 보증기간에 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한다.

보증기간에 계약대상의 허물을 발견하였으나 그것을 완전히 확증할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먼저 알리고 허물이 확증된 다음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허물을 확증하는 기간이 보증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보상청구기간은 확증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37조 손해보상을 받으려는 계약당사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내야 한다.

손해보상청구서에는 계약서번호와 계약대상, 손해의 형태와 범위, 보상청구근거, 요구조건을 밝히고 해당 검사기관의 확인문건 또는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손해보상청구서를 받은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손해보상을 청구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 보상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거절은 보상청구기간 또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났거나 보상청구권자가 명백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허물을 보여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허물있는 계약대상물을 자의대로 처리한것같은 경우에 한다.

제39조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지적한 계약금과 손해보상금, 위약금 같은것을 정한 기일에 붙지 못하였을 경우 늦어진 일수에 해당하는 리자 또는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제40조 어쩔수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책임면제사유를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41조 계약당사자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것을 제때에 막아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제42조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1995. 9. 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며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이 법은 우리 나라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 법인, 공민 사이의 재산가족 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며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규제한다.

제 3 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의 자주적권리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 4 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다.

제 5 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제 6 조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나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한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관례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 7 조 둘이상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1. 당사자가 가진 국적들 가운데서 하나가 우리 나라 국적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2. 당사자가 가진 국적들이 다른 나라의 국적인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국가들 가운데서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
3. 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들에 다 거주하고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

제 8 조 국적이 없는 당사자가 어느 한 나라에 거주하고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있지 않거나 여러 나라

에 거주하고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쳐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제9조 지방에 따라 내용이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의 본국법은 그 나라의 해당 법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해당 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이나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의 법으로 한다.

제10조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으면서 다른 나라에도 거주하고있는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당사자가 둘이상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쳐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1조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거쳐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2조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 법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13조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의 법 또는 국제관례를 적용하여 설정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우리 나라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14조 이 법에 따라 다른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나라 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되돌아갈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이 이 법 시행일전에 한 결혼, 리혼, 낚양, 후견 같은 법률행위는 그것을 무효로 할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나라 영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 2 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제16조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로는 대외민사관계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의 법인, 공민이 된다.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1994. 12. 28 정무원 결정 제48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
대발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운
영 및 해산과 관련한 절차와 질서를 규제
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안에 외국
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이 포함된다.

합영은행은 공화국의 은행(가타 금융기관
포함)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화국령역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몫에 따
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은 외국투자가가 공화국의 자유경
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운영

수 있다.

제20조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인종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인증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1조 소재불명자, 사망자 인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재불명자, 사망자 인증이 우리 나라에 있는 법인, 광민, 재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 3 장 재산관계

제22조 점유권, 소유권 같은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선박,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과 수송중에 있는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해당 수송수단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또는 수송수단이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3조 저작권, 발명권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에 규정된것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 조약에 따른다.

제24조 매매, 수송, 보험 계약을 맺는것 같은 재산거래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거래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5조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이 전보 또는 서신 같은것을 리용하여 계약을 맺을 경우에 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은 제의 통지를 한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의통지를 한 곳을 알수 없는 경우에 재산거래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은 제의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26조 재산거래행위의 방식은 행위를 한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27조 우리 나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설립같은 재산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

한다.

제28조 해난구조계약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을 적용한다.

1. 령해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
2. 공해에서는 해난구조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
3.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여러 선박이 구조한 경우에는 구조받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제29조 해상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법이 없을 경우 해당 항차가 끝나는 항구 또는 선박이 처음 도착한 항구가 속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들이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30조 법적의무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나 사무를 맡아보는 행위 또는 부당리득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으로 되는 행위나 사실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1조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위법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한 행위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법에 따라 위법행위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로 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
올수 있다.

제32조 공해상에서 국적이 같은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에 표시
한 국기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
적이 다른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
우에는 선박충돌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
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3조 채권양도에 대하여서는 양도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4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거
나 취소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채권채무관
계에 적용하는 준거법과 채무자가 제3자 앞
에 가지는 권리의 준거법을 같이 적용한다.

제 4 장 가족관계

제35조 결혼조건에 대하여서는 결혼당사자 각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국법에 따라 결혼조건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현재 존속되고있는 결혼관계나 당사자들 사이의 혈연관계가 인정되는것 같은 결혼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의 방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6조 결혼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부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며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7조 리혼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리혼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들이 같이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리혼당사자들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리혼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리혼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38조 리혼당사자들 가운데서 한편 당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이 법 제37조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39조 친부모, 친자녀 관계의 확정에 대하여서는 부모의 결혼관계에 관계없이 자녀의 출생당시 본국법을 적용한다.

제40조 립양과 파양에 대하여서는 양부모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양부모가 국적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립양과 관련하여 양자녀로 될자의 본국법에서 양자녀로 될자 또는 제3자의 동의나 국가기관의 승인을 립양의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립양과 파양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립양과

파양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갓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41조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자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부모와 자녀가운데서 한편 당사자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42조 후견에 대하여서는 후견을 받을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후견의 방식은 당사자가 후견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갓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43조 우리나라에 거주, 재류하고있는 다른 나라 국민에게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후견인을 정할수 있다.

제44조 부양관계에 대하여서는 부양을 받을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부양을 받을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부양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본국법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45조 부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넘겨받는다.

제46조 유언과 유언취소에 대하여서는 유언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유언과 유언취소의 방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유언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 유언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47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관계, 후견, 유언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 5 장 분쟁해결

제48조 대외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은 이 법에서 따로 규정한것이 없을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법에 따른다.

제49조 재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 또는 중재 관할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50조 재산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재판, 중재 관할을 합의하지 않았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우리 나라 령역에 소재지를 가지고있거나 거주하고있을 경우
2. 분쟁의 원인으로 되는 재산손해가 우리 나라 령역에서 발생된 경우
3. 피고의 재산 또는 청구의 대상이 우리 나라 령역에 있을 경우
4. 분쟁의 원인이 우리 나라에 등록된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제51조 행위무능력자와 부분적행위능력자, 소재불명자와 사망자 인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 영역에 있는 법인, 공민, 재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국적,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2조 결혼과 관련한 분쟁, 리혼에 대하여서는 소송제기 당시 피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거나 원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인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3조 부부의 재산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거나 원고 또는 피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으면서 그 재산이 우리 나라 영역에 있을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4조 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 관계, 후견, 부양 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5조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상속인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상속재산이 우리 나라 영역에 있을 경우에 상속인의 국적,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재판 또는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지한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2.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내용의 분쟁에 대하여 재판 또는 중재를 먼저 시작한 경우
3.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중지할테 대하여 합의한 경우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57조 다른 나라 영역에서 증거의 수집, 증인신문 같은 분쟁해결의 수속 또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인정,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다른 나라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58조 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제공한 증인신문조서, 증거물 같은것은 해당 나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분쟁해결의 증거로 리용할수 있다.

제59조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의 판결은 그것을 서로 인정할데 대한 국가적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관련한 다른 나라 해당 기관 판결집행의 당사자로 되는 우리 나라 공민이 그 집행을 요구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내린 판결을 인정할수 있다.

제60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1. 판결, 재결의 내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2.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과 관련이 있을 경우
3.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판결, 재결과 관련이 있을 경우
4. 판결, 재결이 우리 나라에서 이미 인정한 제3국의 판결, 재결과 동일한 내용인 경우
5. 판결, 재결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당사자를 참가시키지 않고 내려진 경우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61조 이 법 제59조, 제60조의 규정은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집행에도 적용한다.

제62조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집행에 대하여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당사자가 리해관계를 가질 경우 판결, 재결이 확정된 때부터 3개월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토지임대법

1993. 10. 2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

제 1 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공화국의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 3 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이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 4 조 토지임대는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는 지대당국이 한다.

제 5 조 합영, 합작 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다.

제 6 조 토지임대기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 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임대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한다.

제 8 조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 이용한다.

제 2 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 9 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자유경제부역지대 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10 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약
5. 환경보호, 위생방어, 소방과 관련한 요

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11조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희망자는 제공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건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이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목적과 기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
4.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받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제12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 및 낙찰 날짜,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거나 입찰 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분건을 판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4.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
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정제, 맷불부분을 비롯한 관계부분의 성원을 방라하여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6.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가발 및 건설과 임대료 조건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급한다.
8. 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임대료를 지

불한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해 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9. 낙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안에 해당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10. 낙찰자가 정한 기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13조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 날짜,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3. 낙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제14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토지 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 3 장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1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제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토지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서 남은 이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16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불고 계약에 지적된 부자뭇을 부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판매, 제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간다.

제18조 토지이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
2. 토지이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권 판매신청 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는다.
3.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명의변경 등록을 한다.

제19조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해 토지이용권

을 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지당된다.

제22조 토지이용권을 지당하는 경우 지당하는 자와 지당받는 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지당받는 자는 지당하는 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이용증 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토지이용권을 지당받은 자와 지당한 자는 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지당등록을 해야 한다.

제24조 토지이용권을 지당받은 자는 지당한 자가 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지당계약기간 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지당계약에 따라 지당받은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25조 토지이용권을 지당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

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 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제26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 기간 안에 저당받은 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이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10일 안으로 토지이용권 저당등록 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 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제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값이다.

제29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

제30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분이나 임대료가 많은 토지개발부분은 임차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의 합의범에 5년 안에 분할해 물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대해서는 해당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제31조 협상, 경매를 통해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한 이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토지임대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제32조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서난 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1%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연속 50일간 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임차한 토지의 이용자는 해마다 국가가 정한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장려부분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덜어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제 5 장 토지이용권의 반환

제34조 토지이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토지를 40년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 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해 줄 수 있다.

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이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이용권 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36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이용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이용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을 자기비용으로 철거하

고 토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안에 토지이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여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하여준다.

제 6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9조 토지이용증이 없이 토지를 이용하였거나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켰거나 토지이용권을 양도, 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에 건설한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및 지당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40조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총투자액의 50%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41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한글 높은

기관에 신소청원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저당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토지임대법시행규정

1994. 9. 7 정부원 결정

제 1장 일반규정

제 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조 공화국 영역 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외국인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제 3조 임대한 토지의 소유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다.

토지를 임차한자(이 아래부터는 토지임차자라 한다)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만을 가진다.

땅속 또는 물밑에 있는 천연자원, 매장되어 있거나 은닉된 분화유적유물, 귀금속과 같은 가치불은 토지리용권에 속하지 않는

다.

제 4 조 토지임대와 관련한 사업은 국토관리
기관이 한다.

국토관리기관에는 중앙국토관리기관과 지
방국토관리기관(도, 시, 군 국토관리기관)
이 속한다.

중앙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감
독통제사업을 하며 도국토관리기관이 제기
한 토지임대계획을 심사 승인한다.

도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차자와 토지임대
차계약을 맺고 이행하며 시, 군 국토관리
기관은 토지임대와 관련한 등록사업을 한
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토지는 자유
경제무역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
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임대한다.

제 5 조 합병,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
는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
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는 도국토관리
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토지
임대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토지리
용권을 가질 수 있다.

기관, 기업소가 합병, 합작 기업에 출자한 토지의 리용권은 입차한 토지의 리용권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 6 조 토지의 임대기간은 토지용도와 투자내용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최고 50년을 넘을 수 없다.

제 7 조 입차한 토지리용권은 토지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 토지임차자는 입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업에 투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 8 조 토지임차자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차한 토지를 관리 리용한다.

제 2 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 9 조 토지의 임대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희망자 사이에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 10 조 협상에 의한 토지임대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희망자 사이에 임대료, 투자

및 개발조건을 비롯한 임대차조건을 직접 합의한 다음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조건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의 개발상태
8. 이밖의 필요한 자료

제12조 토지임차희망자는 협상을 통하여 토지를 임차하려고 할 경우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받은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토지이용신청서를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토지이용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창설 또는 거주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임차자의 이름과 국적 또는 기업의

명칭, 법정대표

2. 임차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3. 토지임차자의 법정주소
4. 토지의 용도
5. 건설총투자액
6. 건설완공기일
7. 임차기간
8. 임대료와 그 지불화폐 및 지불방식
9. 이밖의 필요한 사항

제14조 기업창설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에는 지대당국 또는 정부원대의경제기관의 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창설승인서 또는 그 사본이 포함된다.

거주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에는 거주지 출입국사업부서의 거주 등록 또는 승인확인서가 포함된다.

제15조 기업을 창설하지 않고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려는 희망자는 토지리용신청분건에 투자승인확인서와 자금담보 또는 신용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토지리용신청분건을 받은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신청분건을 20일 안으로

심의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토지 임대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제되어야 한다.

1. 토지 위치, 면적
2. 임대차 목적과 기간
3. 토지의 용도, 리용범위
4. 총투자액, 건설투자액
5. 단계별 투자액
6. 건설기간(단계별 건설계획, 건설완공기
일)
7. 임대료 및 사용료와 그 지불방법
8. 특혜조건
9. 제재 및 분쟁해결방법
10. 이밖의 필요한 사항

제18조 토지의 입찰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서 규모가 크거나 주요한 개발대상의 토지
임대에 적용할 수 있다.

입찰에 의한 토지임대는 토지임차희망자들
이 지정된 기간안에 임대료, 투자 및 개발

조건을 비롯한 입차조건을 토지임대기관에 비공개적으로 제출하게 하며 토지임대기관이 입찰에 참가한자(이 아래부터는 응찰자라 한다)들 가운데서 유리한 입차조건을 제기한 입차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토지의 입찰은 지대당국이 조직한다. 지대당국은 토지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입찰분건의 작성 및 배포
2. 입찰과 관련한 상담
3. 응찰자의 자격심사
4. 개찰
5. 입찰심사조직과 낙찰자의 선정
6. 낙찰통지서의 발송
7. 이밖의 입찰과 관련한 업무사업

제20조 토지의 입찰분건에는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날자, 입찰절차, 입찰보증금과 같은 것을 밝힌 입찰안내서와 토지입찰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초안, 토지자료와 같은 분건이 포함된다.

제21조 토지의 입찰은 출판보도수단을 통하여 응찰자를 모집하는 공개입찰의 형식으로

로 하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토지입찰문건을 개별적으로 보내어 응찰자를 모집하는 지명입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 응찰자가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입찰문건을 산다.
2. 토지입찰문건을 연구한 다음 토지입찰서에 해당한 내용을 써넣는 방법으로 입찰서를 작성한다.
3. 입찰안내서에 정한 기일안에 입찰보증금을 낸다.
4. 기업책임자의 도장을 찍은 토지입찰서를 봉인한 다음 입찰함에 넣거나 정한 장소에 보낸다.

제23조 입찰함에 넣었거나 정한 장소에 보낸 입찰서는 다시 꺼내거나 찾을 수 없다. 입찰서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기간이 끝나기전에 변경시킨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내고 원래의 입찰서를 폐기시킨다

는 서면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대당국은 응찰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가한 장소에서 입찰서를 공개적으로 개찰하며 응찰자들이 제기한 입찰가격을 공개하고 예비당선자들을 발표한다.

제25조 지대당국은 징제실부일군과 전문가, 법률가, 공증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들을 망라하여 토지의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제26조 토지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개찰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예비당선자들이 제기한 입찰가격과 개발계획, 자산과 신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평가결과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체 입찰서를 부결시킬 수 있다.

제27조 토지위대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낙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안에 해당한 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

보증금에 대한 리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28조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채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토지임대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락찰자가 정한 기간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차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락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29조 토지의 경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부동산개발용지, 금융, 상업, 관광 및 오락 용지와 같은 경쟁성이 강한 토지의 임대애 적용할 수 있다.

경매에 의한 토지의 임대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 임차희망자들을 모여놓고 공개적으로 임차경쟁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 토지경매의 조직은 토지임대기관이 한다.

토지임대기관은 경매하는 토지의 면적, 위치, 임대차계약의 기본조건, 토지의 경매 장소와 날자, 절차, 보증금 같은 것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토지의 경매에 참가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금 및 투자능력을 확인하는 문건을 구비하고 정한 보증금을 낸 다음 경매참가 번호를 받는다.

제32조 토지의 경매는 기준가격을 공포하고, 그에 기초하여 응찰자들 사이의 가격경쟁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경매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자로 된다.

제33조 경매를 통한 토지임대차계약은 낙찰되는 날부터 7일 안에 맺어야 한다.

제34조 토지임대기관은 낙찰되지 못한 응찰자들의 보증금을 경매가 끝나는 차제로 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행보증금으로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한다.

리행보증금은 리자를 계산하지 않으며 보증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대료의 지불에 리용할 수 있다.

토지임대기관은 임차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정한 기간안에 리행보증금을 물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리행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임차희망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락찰자의 경매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제36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자가 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붙였을 경우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은 임차자는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그것을 등록한 때로부터 임차자에게 넘어간다.

토지임차자는 리용권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를 리용할 수 없다.

제3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 정한 용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정한 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

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에 용도변경내용, 투자규모변경내용 같은 것을 밝힌 토지용도변경승인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를 변경하는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9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등록할 때 중앙재정기관이 정한 등록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 3 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4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리용권을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당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의 양도에는 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이 포함된다.

제41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양도하거나 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안에서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 양도받은 토지의 리용기간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임차하여야 한다.

제42조 판매, 재임대, 증여를 통한 토지리
용권의 양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임차하였거나 토
지임차자로부터 판매, 교환 형식으로 양
도받은 토지의 리용권이어야 한다.
2.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료 전액을
문 토지의 리용권이어야 한다.
3. 토지임대차계약에 지적된 기한과 조건
에 따라 투자와 건설을 한 토지의 리용
권이어야 한다.

제43조 토지리용권을 판매, 증여, 상속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에
밝힌 토지리용과 관련한 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도받은 자에게 넘어간다.

토지임대기관과 맺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지
적된 모든 사항은 양도계약에 밝히지 않았
다 하더라도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제44조 토지리용권은 토지에 있는 건축물,
기타 부착물의 리용권 또는 소유권과 분리
시켜 양도할 수 없다.

제45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
을 값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판매는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값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제46조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려는 자는 구매
자와 양도(매매)계약을 맺고 공중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토지임대기관에 토지리
용권 판매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47조 토지리용권판매신청서에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임차기간 및 리용한 기
간, 판매목적, 판매가격, 임대료 및 사용
료 납부징형, 구매자의 이름과 소속, 기업
의 업종 같은 것을 밝히고 임대차계약서와
양도(매매)계약서사본, 구매자의 투자능력
을 확인하는 확인서 또는 신용담보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권판매신청
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
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9조 토지임대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리용권판매신청을 부결할 수 있다.

1. 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에 맞지 않을 정

우

2. 토지이용권양도(판매)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와 어긋나게 작성되었을 경우
3. 구매자의 투자 및 경영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격을 비롯한 매매조건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제50조 토지이용권을 판매하였거나 구매하였을 경우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토지이용권의 취소등록을 하며 구매자는 토지이용권 명의변경 등록을 한다.

토지이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이용권의 매매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51조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토지임차자는 이미 구매자에게 제기한 판매조건을 토지임대기관의 구매에 불리하

게 수정제기할 수 없다.

제5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토지재임대는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리용권을 소유한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를 개발하여 다시 제3자에게 리용권을 빌려주는 형식의 토지양도이다.

제53조 토지의 재임대는 임대차계약에 토지를 개발한 다음 재임대를 허용한 토지에 한한다.

제54조 토지를 재임대하려는 자는 토지의 양도(재임대)계약을 맺고 토지임대기관에 토지재임대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재임대신청서는 재임대하려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받는 자의 이름 또는 기업명칭, 업종 같은 것을 밝히고 임대차계약서사본, 양도(재임대)계약서사본, 토지를 재임대받는 자의 투자능력을 확인하는 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재임대신청서를

우

2. 토지이용권양도(판매)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와 어긋나게 작성되었을 경우
3. 구매자의 투자 및 경영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격을 비롯한 매매조건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제50조 토지이용권을 판매하였거나 구매하였을 경우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토지이용권의 취소등록을 하며 구매자는 토지이용권 명의변경 등록을 한다.

토지이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이용권의 매매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51조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토지임차자는 이미 구매자에게 제기한 판매조건을 토지임대기관의 구매에 불리하

게 수정제기할 수 없다.

제5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제임대할 수 있다.

토지제임대는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리용권을 소유한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를 개발하여 다시 제3자에게 리용권을 빌려주는 형식의 토지양도이다.

제53조 토지의 제임대는 임대차계약에 토지를 개발한 다음 제임대를 허용한 토지에 한한다.

제54조 토지를 제임대하려는 자는 토지의 양도(제임대)계약을 맺고 토지임대기관에 토지제임대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제임대신청서는 제임대하려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받는 자의 이름 또는 기업명칭, 업종 같은 것을 밝히고 임대차계약서사본, 양도(제임대)계약서사본, 토지를 제임대받는 자의 투자능력을 확인하는 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제임대신청서를

우

2. 토지리용권양도(판매)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와 어긋나게 작성되었을 경우
3. 구매자의 투자 및 경영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격을 비롯한 매매조건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제50조 토지리용권을 판매하였거나 구매하였을 경우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토지리용권의 취소등록을 하며 구매자는 토지리용권 명의변경 등록을 한다.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리용권의 매매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51조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토지임차자는 이미 구매자에게 제기한 판매조건을 토지임대기관의 구매에 불리하

게 수정제기할 수 없다.

제5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토지재임대는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리용권을 소유한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를 개발하여 다시 제3자에게 리용권을 빌려주는 형식의 토지양도이다.

제53조 토지의 재임대는 임대차계약에 토지를 개발한 다음 재임대를 허용한 토지에 한한다.

제54조 토지를 재임대하려는 자는 토지의 양도(재임대)계약을 맺고 토지임대기관에 토지재임대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재임대신청서는 재임대하려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받는 자의 이름 또는 기업명칭, 업종 같은 것을 밝히고 임대차계약서사본, 양도(재임대)계약서사본, 토지를 재임대받는 자의 투자능력을 확인하는 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재임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6조 토지를 재임대한 자와 재임대받은 자는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재임대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토지재임대계약은 등록수속을 끝낸 순간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57조 토지를 재임대한 자는 재임대받은 자가 계약에 맞게 임대물을 관리 리용하도록 요구하며 정한 임대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8조 토지를 재임대한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재임대한 토지의 보호, 류실방지, 류실된 토지의 복구 사업을 하여야 한다.
2. 재임대한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의 수리 및 보수 사업을 하여야 한다.
3. 재임대받은 자의 정상적인 토지리용을 방해하는 봉락, 침물과 같은 재해요소의 방지 및 제거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토지를 제임대받은 자는 토지양도(제임대) 계약에 따라 토지를 리용할 권리를 가지며 토지를 제임대한 자가 이 규정 제58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기 부담으로 그 의무를 수행하고 해당하는 비용을 임대료에서 삭감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토지를 제임대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토지양도(제임대) 계약에 정한대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토지양도(제임대) 계약의 요구에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
3. 토지의 리용권을 제양도할 수 없다.
4. 토지제임대자의 승인없이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에 개조 또는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5. 토지를 정히 다루어야 하며 그에 손상을 주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임차기간이 끝난 임대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61조 토지제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토지재임대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관, 기업소나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증여는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넘기는 형식의 양도이다.

제63조 토지리용권을 증여하려는 자는 증여 문건을 작성하고 토지임대기관에 토지리용권증여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권증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4조 토지리용권을 증여하는 자와 증여받는 자는 증여한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증여받은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질서의 토지리용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와 같다.

토지리용권 명의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기관의 증여세 납부확인서를 내야 한다.

제65조 증여하는 토지이용권은 명의변경등록을 한 순간부터 증여받는 자에게 넘어간다.

토지이용권의 명의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증여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66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상속할 수 있다. 토지이용권의 상속은 토지이용권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자 또는 유언이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자에게 토지이용권을 부상으로 넘기는 형식의 양도이다.

제67조 토지이용권을 상속받으려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거주지의 신분등록기관 또는 재판소가 발급한 상속확인서를 해당 거주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한다.

제68조 토지임대기관은 상속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검토하고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9조 토지이용권을 상속받으려는 자는 상속시키는 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안에

상속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안에 상속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리용권은 자동적으로 토지임대기관에 넘어간다.

제70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은 자는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의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토지임대기관의 상속확인문건, 재정기관의 상속세 납부확인서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

제71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에 정한 토지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는다.

토지임대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는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과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7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의 저당은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부의 상환담보로 세우는 행위이다.

토지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지당된다.

제73조 토지이용권을 지당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당하는 자(이 아래부터 지당자라 한다)와 지당받는 자(이 아래부터 지당권자라 한다)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토지저당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당권자는 지당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이용증 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 토지저당계약을 맺은 지당권자와 지당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토지저당권은 등록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5조 토지이용권의 지당자는 지당기간에도 토지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토지저당자가 지당한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지당권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76조 저당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당 받은 토지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1. 저당자가 기한이 되도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저당자가 저당기간안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파산당한 경우
3. 저당자가 저당기간안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자가 없을 경우와 상속자가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제77조 저당받은 토지리용권을 처분하려는 저당권자는 토지임대기관에 저당물처분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당물 처분신청서에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저당자와 저당권자, 저당기일, 채무액, 저당물의 채권상환담보범위와 처분형식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저당물의 채권상환담보범위는 원금상환, 리자상환의 지연에 의한 손해배상과 저당물의 평가비용, 경매비용과 같은 저당권실시비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제78조 토지임대기관은 저당물처분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승

용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과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82조 토지리용권에 대한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된다.

1. 저당자가 채무를 상환하였을 경우
2.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을 경우
3. 저당권자와 저당자가 합의하여 채무상환을 다른 재산으로 대치하는 경우

제83조 저당권자와 저당자는 저당권이 소멸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토지리용권 저당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4조 토지리용권의 양도 또는 저당과 관련한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 등록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 4 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제8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값이다.

제86조 협상을 통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기준임대료에 기초하여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7조 자유경제무의지대의 토지를 입찰과 정매를 통하여 임대하는 경우 입찰 및 정매기준가격은 지대당국이 정하며 낙찰자가 제기한 가격을 임대료로 한다.

제88조 토지임대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에 토지개발비를 포함시켜 받아야 한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포함된다.

제89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분이나 임대료가 2,000만원 이상되는 토지개발부분의 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의 합의밑에 임대료를 5년안에 분할하여 물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해당하는 리

자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미납금에 대한 리자율은 토지임대기관과 임차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90조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연속하여 50일간 물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불한 임대료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제91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는 소재지 재정기관에 해마다 정한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리용한 것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요금이다.

제92조 토지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토지사용료는 4년동안 변동시키지 않으며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변동폭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93조 토지사용료의 납부자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
2. 판매를 통하여 토지리용권을 넘겨받은 자
3. 토지를 제임대한 자
4. 합병 또는 합작 기업(토지를 출자함으로써 하였을 경우에 한함)

제94조 토지사용료는 토지리용권을 등록한 날부터 계산하며 해마다 12월 20일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토지사용료를 지불할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달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사용한 달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계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제95조 토지임대기관은 장려부분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하여 투자규모와 내용, 경제적 효과성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면해주거나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 5 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제96조 임대기간이 끝난 토지리용권은 토지

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40년 이상 임차한 토지에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안에 준공한 건설 총투자액 2,000만원 이상되는 기본건물에 대하여서는 해당 잔존가치를 보상하여 줄 수 있다.

제9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토지리용증을 토지임대기관에 반환하고 토지리용 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8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토지임대기관에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검토한 다음 토지리용연기를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9조 토지리용연기신청서에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개발정도와 연기하려는 이유, 기일, 투자계획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토지리용기간을 연기하여 토지를 새로 개

발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이용연기신청서에 투자의향서와 용도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 토지이용연기를 승인받은 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임대료를 분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으며 토지이용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1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으로 토지임대기관이 넘겨받지 않는 건축물, 설비와 임시건물, 저장탱크, 창고, 구축물, 야적장, 쿠내철길과 같은 부대시설물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임차자가 토지를 정한 기간안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에 그 사유를 알리고 토지정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비용을 토지임차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102조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토지임대기관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 사정이 있거나 공공리익을 위하여 도시건설계획을 변경시켜야 할 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한 전에 법적수속을 걸쳐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권을 취소하기 6개월전에 토지임차자에게 토지리용권의 취소리유, 토지의 위치와 범위, 취소기일 같은 것을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제103조 토지임대기관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토지리용권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자에게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주거나 해당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토지를 교환해주는 경우 토지임대기관과 임차자는 리용권을 취소하는 토지와 교환한 토지의 값을 합의결정하여 차액을 청산한 다음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며 임차자는 토지리용증을 다시 발급받고 해당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104조 토지를 리용증이 없이 리용하거나

리용권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회
수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토지를 원상복구
시키며 300원부터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
린다.

제105조 토지의 용도를 승인없이 변경시켰
거나 입차한 토지면적을 불법적으로 늘였
을 경우에는 기한을 주어 고치게 하고
4,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106조 토지리용권을 승인없이 양도 또는
저당하거나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처분하였
을 경우에는 양도 또는 저당 처분을 무효
로 하고 정도에 따라 토지리용권 또는 저
당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7조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한 기간안에
투자하지 않거나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계약의부를 리행하도록 제
촉하며 그래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
한 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매일 투자를
미달한 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
다.

정한 기한안에 투자하여야 할 투자액의

50%을 투자하지 못하였거나 토지를 계약
된대로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리
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8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
부터 20일 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한급 높
은 기관에 신고청원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9조 토지의 임대차와 관련한 의견상이
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
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
라 해결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데 따라 제
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이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가 세산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

기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재정부기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제 6 조 이 법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7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

제 2 장 기업소득세

제 8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우리나라 안에서 얻은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창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 지사, 출장소, 세끼회사 같은 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 9 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보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징비, 직장 및 회사 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10 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세정기관에 분기

소득세예정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며, 년도가 끝난후 2개월 안으로 연간 소득세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야 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연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에 하며, 연간종합계산은 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납부한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로 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이 공화국 병역 안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4조 외국기업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세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와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

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10년 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4.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부분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16조 외국투자자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령역 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부구조 건설부분에 재투자하는 경

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정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소득세액을 바친다.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17조 공화국 령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령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8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배당소득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4. 리자소득
5. 임대소득
6. 재산판매소득
7. 증여소득

8. 개인기업소득

제19조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 로동보수액이 2천원 아래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대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이 법 부록 2에서 정한대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5%로 한다.

제20조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 초과 루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증여에 의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

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터리, 포장비, 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에 의한 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한다.

공화국 은행에 저축성 예금을 한 돈과 자유경제부역지대 안에 있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달 10일 안으로, 개인 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다음 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3. 매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지

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 4 장 재산세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 령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동안 면제한다.

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 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등록취소 수속을 한다.

제27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거주지의 제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3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29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 날부터 거주지의 제정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0조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0일 안으로 재산소유자가 거주지의 제정기관에 납부한다.

제 5 장 상속세

제31조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제32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제34조 상속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4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35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해당하는 세를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6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은 때
로부터 3개월 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6 장 거래세

제37조 생산물 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 투
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8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에 의한 수
입금
2. 상업부문에서는 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
문에서는 봉사수입금

제39조 거래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5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40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생산부분의 거래세는 품종별 생산불 판매액에 해당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상업부분의 거래세는 품종별 상품판매액에 해당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분의 거래세는 봉사수입금에 해당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1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생산부분의 거래세는 달마다 판매자가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각종 봉사부분의 거래세는 달마다 봉사기관이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2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감면한다.

1.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50%로 한다.

제 7 장 지방세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라용세가 속한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바쳐야 한다.

제45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소 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 수입으로 한다.

제46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 로임총액에 1%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

다.

2. 거주한 외국인이 마치는 도시징영세는 월 수입에 1%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해당 제정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4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기업이나 광업권, 이업권 같은 것을 등록할 경우와 기술자격면허증 같은 증서를 받을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바쳐야 한다.

제48조 등록면허세는 전당 정해진 세액을 해당 등록단위와 면허증 발급단위가 받아 소재지의 제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9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바쳐야 한다.

제5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제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자동차 리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제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

는 기간에는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한데 따라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52조 등록면허세와 자동차리용세의 세액은 이 법 부록 6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 8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53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5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

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린다.

제55조 이 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6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소청원은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57조 재정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의 내용을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록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률표

월 로 동 보수액 (원)	세 률
2천1~3천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천1~4천	40원 +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천1~5천	90원 + 4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5천1~6천	1백50원 + 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6천1~7천	2백20원 + 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7천1~8천	3백원 + 7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
8천1~9천	3백90원 +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9천1~1만	4백90원 + 9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만1이상	6백40원 +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부록 2〉 증여에 의한 소득세률표

증여소득세 (원)	세 률 (%)
1만1~10만	2
10만1~20만	4
20만1~40만	6
40만1~60만	8
60만1~80만	10
80만1이상	12

〈부록 3〉 재산세의 세율표

구	분	세 율 (%)
건	물	등북값의 1
신	바	등북값의 1.4
비	행 기	등북값의 1.4

〈부록 4〉 상속세의 세율표

증여소득세 (원)	세 율 (%)
20만1~35만	6
35만1~60만	8
60만1~80만	10
80만1~1백20만	12
1백20만1~2백50만	14
2백50만1~4백만	16
4백만1~8백만	18
8백만1~2천만	20
2천만1~5천만	25
5천만1이상	30

〈부록 5〉 거래세의 세율표

부 문 별	세 율 (%)
생 산 부 분	생산불판매액의 1.5~20 술, 담배와 같은 제한하는 상품은 21~60
상 업 부 분	상품판매액의 2
봉 사 부 분	봉사수입금의 2~4

<부록 6>

지방세액표

구 분	세 액 (원)
1. 등록면허세	
1) 기업등록	
설립등록	건당 5백~1천
변경등록	건당 40
취소등록	건당 40
2) 광업권등록	
처음등록	광구당 1천2백
변경등록	광구당 10
취소등록	광구당 10
3) 어업권등록	
처음등록	건당 1천
변경등록	건당 10
취소등록	건당 10
4) 기술자격면허증발급	건당 20~1천
2. 자동차리용세	
승용차	대당 50
버 스	
12석까지	대당 90
13~30석	대당 1백
31석이상	대당 1백20
화물자동차	적재톤당 20
특 수 차	대당 50
자동자전차	대당 20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1994. 2. 21 정부위 결정 제9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을 정확히 집행
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
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
거나 소득을 얻은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
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투자
기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외국기업에는 공
화국 영역 안에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
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화국 영역 안에서 이자, 배당금, 임대료

와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 부과와 징수, 세금납부 정형에 대한 감독 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재정기관에는 재정부와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가 포함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무정형을 검열하는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제때에 보여줘야 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기업의 소재지가 변동되었거나 통합, 분리되었을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업종과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

관에 세무변경 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 취소 수속을 하기 20일 전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5 조 세무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등록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 세무등록 신청서에 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과 주소
2. 기업 등록날자, 등록번호
3. 기업의 경영방식과 업종
4. 경영기간
5. 종업원 총수(그중 외국인수)
6. 부지 면적
7.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
8. 기업의 책임자와 세정부기 책임자의 이름

외국인은 세무등록 신청서에 이름과 국적, 주소, 여권번호, 체류증 발급날자, 체류기간을 밝혀야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거나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세무등록취소 신청서에 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 및 취소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 6 조 세무에 이용되는 문서양식은 재정부가 정한다. 세무문서는 조선글로 써야 한다. 다른 나라 글로 쓴 경우에는 그 밑에 조선글로 번역하여 써야 한다. 세무문서에는 기업의 도장과 기업책임자 및 재정부기 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 조 세무와 관련되는 문서(전자계산기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테프와 원판)는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편철하여 문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5년(재정부기결산서, 고정 재산문서는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8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의 외화환산율에 따라 한다.

제 9 조 세금은 수익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거

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0조 세금은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세금납부서를 내는 것과 함께 해당 은행에 납부한다. 세금을 받은 은행은 신고납부자 또는 공제납부자(이 아래부터는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세금납부 영수증을, 재정기관에는 세금납부 통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귀국(임시출국은 제외)하려는 외국인은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규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이 포함된다.

제 2 장 기업소득세

제13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 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발 부문의 소득, 상업(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매 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수, 체신, 급양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 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기타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속한다.

1. 이자소득
2. 이익배당소득
3. 재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
4.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5. 기술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봉사를 하여 얻은 소득
6. 폐설물 및 부산물 처리에 의한 소득
7. 이밖의 소득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업소득세의 납세연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세연도 안에 영업을 시작한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해 해산을 선포한 날까지로 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이윤에 부과한다.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1. 공업부분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물자구입경비, 세제품 생산비, 노임,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직장 및 회사 관리비, 판매비, 보험료
2. 상업부분에는 상품비와 유통비(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용기 손모 및 수리비, 상품자연감모비, 영업용 연료 및 전력비, 노임, 대외판매 수속비, 비품비, 난방비, 조명비, 수도사용료, 사무비, 통신비, 여비, 선전비, 대외사업비, 노동보호비, 문화사업비, 대부이자, 보험료, 이밖의

유통비)

3. 봉사부문에는 급양원자재비와 유통비,
교통운수 운영비, 채신운영비

기타 지출에는 환자시세의 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공, 재포장하는데 든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16조 작업기간이 1년이상 걸리는 건설 및 조립, 설치공사, 대형기계설비의 가공, 제작 같은 것을 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납세년도마다 그 해에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제17조 기업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14%
2.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25%
3.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공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

윤의 10%

4.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10%,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20%

제18조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 또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연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분기결산이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1/4을 예정납부한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기 재정분기 결산서를 기업소득세 납부에 앞서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납세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 안으로 연간 기업소득세 납부서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분기 결산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연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 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

청과 돈자리번호, 결산이윤, 세율,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재정부기 결산서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이익 및 분배 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 감가상각금계산표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23조 공제납부자는 수익금을 지불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 지불항목, 지불금액, 세율,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끝났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납세담보금으로 세우고 청산안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담보금은 기업소득세로 들릴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

산하고 통합, 분리 신고일로부터 20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 통합, 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미납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채무의 이행에 앞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본사가 종합하여 납부하며 외국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지사가 신고납부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와 지사의 기업소득세율이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지사를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나라에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이 이 규정에 밝힌 세율로 계산한 기업소득세액과 같거나 그 보

다 적을 경우에는 실지 납부한 소득세액만큼 공제하여 주며 초과한 부문에 대한 기업소득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27조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 또는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 또는 기업에 낮은 이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28조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장려하는 부문에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이 포함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

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준다. 금융기업이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제30조 총투자액이 6천만원이상 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 등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31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기간은 이윤이 난 해로부터 연속 계산한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이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의 결산이윤에서 메꿀 수 있으며 다음 년도에도 메꾸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속하여 해마다 메꿀 수 있으나 4년을 넘을 수 없다.

제33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해당 제정기관에 내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

업소득세 감면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업종, 이윤이 생긴 년도, 총투자액,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를 밝히고 해당 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이 증명하는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제34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 및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 되기 전에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을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하부구조건설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다른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되돌려 받거나 다음에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신청서와 함께 재투자액과 경영기간을 증명하는 기업설립 심

사증인기관의 확인분건을 내야 한다. 정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36조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기간 안에 임시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알수불 체류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7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에는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절,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재산관배소득, 증여소득, 개인기업소득(개인업 소득에 한함)이 포함된다.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이 현물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것을 취득한 때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는 노임, 상금, 장려금, 가급금과 강의, 강연, 투고, 번역, 설계, 제도, 설치, 수예, 조각, 그림, 창작, 공연, 부기, 체육, 의료, 상담과 같은 일을 해 얻은 소득이 속하며 배당소득에는 이익배당금, 잉여금의 분배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공업소유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해 받은 소득이 속하며 기술비결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련기능, 경험 같은 것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소설, 시,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극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이자소득에는 예금·채권에 의한 이자소득이, 임대소득과 재산판매소득에는 건물, 기계, 설비, 자동차, 선박과 같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증여소득에는 화폐재산, 현

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을 증여받은 소득이 속하며 개인업소득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상점, 음식점, 수리소 같은 것을 차려놓고 자체로 상업 및 봉사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제38조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월노동보수액이 2천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1에 정한 초과누진세율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이 1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2에 정한 세율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업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제39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고정재산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의 20%(노력비, 포장비, 수수료와 같은 비용)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0조 개인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달 15일 안으로 공제납부한다.
2.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달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안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3.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4.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분기 첫달 10일 안으로 소득의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공제납부자는 공제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1조 공화국 영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다음분기 첫날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납세의무자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소득세의 범위 안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문건에는 해당 나라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문건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2조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 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
성예금 이자와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
3.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
자들이 예금한 돈에 의한 이자

제 4 장 재산세

제43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에는 살림집,
별장, 부속건물이 포함되며 선박, 비행기
에는 자가용 배, 자가용 비행기 같이 것이
포함된다.

제44조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을 임대하였거나 저당잡혔을 경

우에도 재산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소유자가 재산소재지에 없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재산세납부의무자로 된다.

제45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 건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것을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제정기관에 재산등록신청서를 내고 재산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넘겨 받은 자가 공화국 영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을 등록한다. 재산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재산의 이름, 단위, 수량, 건평(본수), 치수값, 대보수비, 내용년한, 사용한 년한, 건설(제작)년도, 평가한 가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46조 등록하는 재산의 가격은 국가 가격재정기관이 평가하고 공중기관이 공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47조 등록된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 평가하고 공중가격으로 2월 안에 해당 제

정기관에 재등록한다.

제48조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졌거나 재산의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와 재산을 폐기했을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0일 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으로 한다.

제50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51조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를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 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세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음 분기에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구입하였거나 건설한 건물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구입하였거나 준공한 달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5 장 상속세

제53조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 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화폐재산, 유가증권, 예금, 지급 및 보험금, 공익소유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제54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받은 때의 재산이 있는 현지시장가격으로 한다.

제55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상속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장례비용, 재산의 보존관리에 든 비용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상속자는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상속재산액, 공제액, 과세대상액, 상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상속세 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 공제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세 공제신청서에는 상속자의 이름과 주소, 상속세의 공제항목과 금액을 밝힌다.

제57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산종류,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제58조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3년안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상속액이 2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 6 장 거래세

제59조 외국투자기업과 개인업을 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수입에 대해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한 생산물과 수입한 물자를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
2. 상업(무역포함)부문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 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 대부이자와 예금이자와의 차이, 요금과 같은 봉사수입금

제60조 거래세는 생산, 상업, 봉사부문의 수입금에 부록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문별 세율에 따르는 전개된 항목의 세율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1조 납세의부자는 월중에 이루어진 수입금을 종합하여 다음달 10일 안으로 재정기관에 거래세 납부서를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와 생산한 제품을 국가적 요구에 의해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제63조 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에 낮은 이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6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 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분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0% 덜어준다.

제 7 장 지방세

제6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가 포함된다.

제66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의 월노임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으로 한다.

제67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노임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신고납부한다.
2.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및 재산판매소득을 비롯한 월수입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본인이 신고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68조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 이입권을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면허증,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에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포함된다.

제69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이 규정 부록 6에 정한 세액에 따라 납부한다.

제70조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동차 이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에는 승

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 특수차가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연유차, 시멘트운반차, 지게차, 굴착기, 불도젤, 트랙도르 같은 것이 속한다.

제71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자동차 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신청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자동차의 번호, 종류, 좌석수 또는 적재중량, 취득날자를 밝혀야 한다.

제72조 자동차이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이 규정 부록 7에 정한 세액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제73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하여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하여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8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7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달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매월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57조 재정기관은 세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정한 기일안에 세부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3. 장부, 전표, 증빙문건을 위조, 폐기하였거나 원가, 비용, 소득의 같은 것을 사실과 맞지 않게 계산하여 탈세한 경우에는 탈세액을 받는 것과 함께 탈세액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제76조 재정기관은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

자에게 벌금통지서를 보내며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물어야 한다.

제7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78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재정기관은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9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록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률표

월 로 동 보 수 액(원)	세 륜
2,001~3,000	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1~4,000	40원+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001~5,000	90원+4,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5,001~6,000	150원+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6,001~7,000	220원+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7,001~8,000	300원+7,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
8,001~9,000	390원+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9,001~1만	490원+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만 1이상	640원+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부록 2〉 증여에 의한 소득세률표

증여소득세(원)	세 륜(%)
1만1~10만	2
10만1~20만	4
20만1~40만	6
40만1~60만	8
60만1~80만	10
80만1이상	12

〈부록 3〉 재산세의 세률표

구	분	세 륜 (%)
건	물	등록값의 1
선	박	등록값의 1.4
비	행 기	등록값의 1.4

〈부록 4〉 상속세의 세률표

증여소득세 (원)	세 륜 (%)
20만 1 ~ 35만	6
35만 1 ~ 60만	8
60만 1 ~ 80만	10
80만 1 ~ 120만	12
120만 1 ~ 250만	14
250만 1 ~ 400만	16
400만 1 ~ 800만	18
800만 1 ~ 2,000만	20
2,000만 1 ~ 5,000만	25
5,000만 1 이상	30

<부록 5>

거래세의 세율표

구 분	세 률(%)
1. 생산부문	
1) 전기제품	4~10
2) 연료제품	2~ 7
3) 광물제품	4~ 5
4) 금속제품	4~ 7
5) 기계 및 설비	4~ 5
6) 화학제품	2~10
7) 건축제품	2~13
8) 고무제품	4~ 9
9) 섬유제품	1.5~10
10) 신발제품	3~ 4
11) 일용제품	3~15
12) 전자제품	4~14
13) 가죽 및 털제품	5~ 8
14) 기타공업제품	4~15
15) 식료품	3~20
16) 술, 담배와 같은 제 한하는 상품	21~60
17) 농산물	3~ 4
18) 축산물	2~ 5
19) 수산물	4~10
2. 상업부문	2
3. 봉사부문	2~ 4

<부록 6>

등록면허세액표

구 분	세 액(원)
1. 기업등록	
설립등록	전당 장려부문기업 500 그밖의 기업 1,000
변경등록	전당 40
취소등록	전당 40
2. 광업권등록	
처음등록	광구당 1,200
변경등록	광구당 10
취소등록	광구당 10
3. 어업권등록	
처음등록	전당 1,000
변경등록	전당 10
취소등록	전당 10
4. 면허증, 자격증 발급	
자동차	전당 20
의사	전당 1,000
약제사	전당 500
회계사	전당 500

<부록 7>

자동차이용세액표

구 분	세 액 (원)
승 용 차	대 당/년 50
비 스	
12석까지	대 당/년 90
13~30석까지	대 당/년 100
31석이상	대 당/년 120
화불자동차	적재톤당/년 20
특 수 차	대 당/년 50
자동자전차	대 당/년 20

외화관리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수입을 늘이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 3 조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국화폐,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 예금증서를 비롯한 외화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같은 귀금속이 속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공화국 령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 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는 외화현금을 유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원과 바꾸어야만 쓸 수 있다.

외화의 사고팔기와 저축, 예금, 저당은 외국환자 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 7 조 조선원의 외국환자 시세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제 8 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결제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외화가 아닌 다른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할 수 있다.

제 10 조 이 법은 외화를 리용하는 우리나라

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외화의 리용

제11조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1.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무역 밖의 거래
3.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자본거래

제12조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되는 외화를 조선원으로 바꾸어 자기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만 써야 한다.

제14조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화국 국민은 외화를 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보유하며, 그 기준이 넘는 외화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팔거나 예금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우리나라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다.

제17조 은행은 외화예금에 대하여 바닐을 보장하며, 해당한 리자를 계산하여 준다.

제18조 공화국 영역 안에 상주하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 령사관, 무역대표부 같은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우리나라의 은행으로부터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화 리용에 대한 감독 통제는 외화 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연간 외화재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 3 장 외화의 반출입

제22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다.

제23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 증빙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 범위 안에서만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

제2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

- 외화유가증권을 해당한 문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 제26조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들여왔던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 안에서만 내갈 수 있다.
- 제27조 외국부자가는 공화국 영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
- 제28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 영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 4 장 제 재

- 제29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30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겨 외화적 손해

를 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의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

제31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과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외화관리법시행규정

1994. 6. 27 정부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을 정확히 관철하여 외화의 관리 및 리용 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외화를 관리하거나 리용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 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기관에는 대사관, 령사관, 무역 및 국제기구 대표부 같은 것이 포함되며 외국투

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 4 조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화와 전환성이 없는 외화가 포함된다.

전환성있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은행권, 보조화폐), 외화유가증권(외화로 표시된 국가채권,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 주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 외화지불수단(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여행신용장, 송금증서, 지불지시서)과 기타 외화자금(전환성외화돈자리와 국제결제계산단위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 귀금속(장식품을 제외한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이 속한다.

전환성이 없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의 돈과 바꿀 수 없는 민족화폐와 민족화폐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이 속한다.

제 5 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외화관

리기관이 맡아 한다. 외화관리기관은 외화의 수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 지출을 통제한다.

제 6 조 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 집행의 방법론적 지시를 만들고 외국환자은행과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범위를 승인하며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자의 기준시세를 정한다.

외화거래, 대외결제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조선원에 대한 외화현금교환시세와 외국환자의 결제시세, 대외결제 취급 수수료율, 외화의 예금, 저금, 대부 리자율은 무역은행이 정한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무역은행 밖의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할 수 있다.

제 8 조 정부들 사이에 맺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은행들 사이의 지불협정은 무역은행이 맺는다.

제 9 조 공화국 영역 안에서는 외화현금을

유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은 지정된 은행 또는 외화교환소(외화교환대리소 포함)에서 조선원과 바꾸어써야 한다.

외화교환소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곳에 내올 수 있다.

제10조 외화에 의한 결제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돈자리(이 아래부터는 외화원돈자리라 한다)를 통하여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은행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거래에 따르는 결제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공화국 영역 안에서 외화를 팔고 사거나 저금 또는 예금하며 저당잡히는 것과 같은 외화거래는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12조 조선원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와 환자거래에 리용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외화밖의 다른 외화로 거래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거래에서 생기는 재계산차액, 거래잔액, 수수료, 채선료, 위약금, 해약금과 같은 외화수입금을 그 수입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으로 거래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0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서 벌었거나 쓰다남은 외화 가운데서 전환성외화는 거래은행에 넣으며 비전환성외화는 해당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에 맡기고 그 보관증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대표기관에 맡긴 보관금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다.

제31조 비무역외화수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는 벌어들인 외화를 해당거래은행을 통하여 무역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는 비무역외화를 지정된 항목과 기준범위안에서만 써야 한다. 비무역외화를 쓰려고 할 경우에는 쓰려는 외화에 해당하는 조선원을 해당 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 나가 외화를 리용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건별로

정해진 기간안에 외화를 내준 은행에 가서
총화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는 외화관리기관의 승
인을 받아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 같은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5조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
관은 정한 항목과 한도안에서만 외화를 써
야 한다.

제36조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
관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이 없이 기관,
기업소의 외화를 보관하거나 리용할 수 없
다.

제37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
돈자리를 둔 은행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한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넣으려는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공화국의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9조 자유경제부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 사이
의 거래업무를 할 수 있다.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
은 비거주자로부터 정기예금, 통지에금과
같은 예금을 받아들이거나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대부를 주며 약속수형을 발행
하거나 증권투자를 할 수 있다.

제40조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둔 외국투자기업은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30일안에 그 돈자리에서의 외
화 수입, 지출과 관련한 문건을 외화관리
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외국투자기업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외화재정상태표와 손익
계산표, 외화수지보고표를 다음해 2월안으
로, 다음해 외화수지에산서를 그전해 11월
안으로, 분기외화재정상태표와 외화수지보
고표를 다음 분기 첫달 안으로 외화관리기
관에 내야 한다.

제42조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서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현금을 가지

고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에 팔거나 저금할 수 있다.

공화국 국민은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2,000원에 해당하는 외화만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상되는 외화현금은 저금하거나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화교환증명서나 외화현금지불문건에 지적된 범위안의 외화현금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제43조 공화국 국민은 송금하여왔거나 저금한 외화를 외화현금으로 찾을 수 없다.

저금한 외화를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 시기의 외화교환시세에 따라 내준다.

송금하여왔거나 예금 또는 저금한 외화를 다른 나라에서 쓰기 위하여 외화현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국증명문건을 확인하고 지불해 줄 수 있다.

제44조 공화국 영역을 떠나는 외국인은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다시 외화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에 출국증명문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외화와 바깥 조선원은 지정된 사업, 봉사부문에서만 쓸 수 있다.

개인들 사이에는 외화와 바깥 조선원을 팔고 살 수 없으며 기관, 기업소는 외화와 바깥 조선원을 쓸 수 없다.

제 3 장 외화의 반출입

제46조 외화는 제한없이 공화국 영역 안에 들여올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개인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 현금지불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범위안에서 외화현금을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48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을 하여 얻은 리윤과 소득금,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 영역 밖으로 세금없이 내갈 수 있다.

제49조 외국투자가업은 다음과 같은 외화자금을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1. 생산용 원료, 자재 및 설비 같은 것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

2. 경영용 물자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3. 다른 나라에 설치한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의 경비자금
4. 다른 나라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5. 이밖에 따로 정한 자금

제50조 공화국 영역 밖으로 외화를 송금하려고 할 경우에는 송금신청서를 거래은행에 내야 한다.

송금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송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문건, 채권자의 대금청구서 같은 증빙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화국 영역 안에서 발행한 회사채권, 출자증권과 같은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 내갈 수 있다.

제52조 공화국의 은행이 발행하였거나 판매한 려행행표, 려행신용장 같은 것은 해당한 증명문건이 없이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5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교환증
명문건이나 세관신고없이 외화현금, 외화
유가증권, 외화지불수단을 공화국 영역 밖
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54조 귀금속(국가가 수출하는 귀금속과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귀금속은 제외)
을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가려고 할 경우
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
화국 영역 안에서 구입한 장식품을 제외한
귀금속제품은 판매자가 발급한 증명문건에
따라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55조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 영역 밖으
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60%
를 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가려
는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사이에 상
대방 화폐를 반출입할데 관한 협정이 체결
되었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외화를
반출입한다.

제 4 장 제 재

제57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업무를 중지시키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준다.

1. 승인받은 업종밖의 외국환자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얻은 영업수익금을 몰수하거나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외화결제, 외화대부, 외화양도 질서를 어겼을 경우와 국가가 정한 질서밖에서 외화현금으로 물자를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결제 또는 대부, 양도한 외화와 거래한 물자를 몰수하거나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외화를 밀매하였을 경우에는 밀매한 금액을 몰수한다.
4.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를 예금 또는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10일 안으로 몰수하여 국가에 바치며 해당 예금 또는 보관액의 50%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이밖의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 조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따라 한다.

제58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겨 국가에 외화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키고 손해액의 50%까지 벌금을 물린다.

제59조 벌금과 몰수금 지불을 거절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거래은행에 있는 기관, 기업소 돈자리에서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

제60조 기관, 기업소와 광민에게 물리는 벌금은 벌금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부과한다.

제6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과 이 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세 관 법

1993. 11. 1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세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
하여 대외무역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
바지한다.

제 2 조 세관수속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
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관
수속절차를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
록 한다.

제 3 조 국가는 세관검사방법을 개선하고 검
사수단을 현대화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짐
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한
다.

제 4 조 국가는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
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낮게 적용
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

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건과 통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봉인할 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 수 없다.

제17조 세관은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설치된 국가품질감독기관, 검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검사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은 필요한 기술감정을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세관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짐의 보관상태를 늘 점검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않은 짐에 대하여서는 세관이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우리나라 무역기관과 합의없이 국경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의 짐은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부리울 수 있다.

로 부쳐오는 손짐을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우리나라의 국경역, 무역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증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과 그와 관련한 세관료금의 납부는 그 짐을 맡아 증계수송하는 기관이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자를 증계수송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우리나라 무역항을 거쳐가는 다른 나라 배에 실여있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배의 선장이 한다. 선장은 배짐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세관이 있는 곳으로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관이 없는 곳으로 통과하거나 우리나라 해상에서 다른 나라와 물자를 주고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세관검사

제13조 세관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짐과 운수수단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짐과 운수수단은 들어오거나 내보낼 수 없
다.

제14조 세관검사는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
항공역, 국제우편국과 그밖의 지정된 곳에
서 한다. 품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별차,
배안에서도 할 수 있다. 세관은 이동세관
검사를 하거나 우리나라 영토를 통과하는
다른 나라 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요금을 받는다.

제15조 세관은 국경역, 무역항 같은 세관검
사지점에서 검사할 수 없는 짐에 대하여서
는 짐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세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짐입자는 도착지
의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신고받
은 짐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운수수단의 잠깐, 손님칸,
선원실을 비롯한 필요한 곳을 검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과정에 우리나라에 들어오

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건과 통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봉인할 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 수 없다.

제17조 세관은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설치된 국가품질감독기관, 검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검사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은 필요한 기술감정을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세관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짐의 보관상태를 늘 점검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않은 짐에 대하여서는 세관이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우리나라 무역기관과 합의없이 국경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의 짐은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부리울 수 있다.

제21조 잘못들어온 다른 나라의 짐, 국제우편물, 임자없는 짐, 남은 짐은 세관의 승인밑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세관검사를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며 세관검사에 협회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이 관할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내가려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을 뜯거나 다시 꾸리는 경우에도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짐을 나르는 기관, 짐관리자는 짐을 나르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그밖의 사고가 났을 경우 곧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편지, 인쇄물 속에 돈, 유가증권, 물건을 넣지 않으며 소포속에도 편지나 돈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기념품을 가

지고 다닐 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제27조 이사짐, 상속재산은 허가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낼 수 있다. 이사짐, 상속재산이라도 통제품은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들어오거나 내보낼 수 있다.

제28조 장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을 리용하여 물건을 들어오거나 내가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29조 무기, 탄약, 폭발물, 독약, 마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물건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제품은 들어오거나 내보낼 수 없다.

제30조 당 및 정부 대표단성원, 외교일군, 국제기구성원 그밖에 따로 정한 일군의 몸짐과 손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있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건과 통제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제 4 장 관 세

제31조 세관은 관세를 정확히 물리고 그 납부장형을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세관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문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수입물자인 경우에는 국경도착가격, 수출물자인 경우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 수출입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매가격으로 한다. 관세율은 정부원이 정한다.

제33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당시의 관세율에 따라 조선원으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하는 해당 시기의 외화환산률에 따라 한다.

제34조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나라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보

내온 선물

2.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여행자의 휴대품
3.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4.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어있는 물자
6. 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

제35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우리나라에 오는 대표단성원과 외교일군,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물자를 들여오는 경우
2.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공화국 영역에 판매하는 경우
3.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온 물자를 공화국 영역에 판매한

경우

4.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세관은 물자가 부패변질, 파손, 류설되었을 경우 정상에 따라 해당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37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무역협정에 관세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 관세율을 적용한다. 관세특혜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관세율을 적용한다. 무역협정에 관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8조 관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자에는 그와 유사한 물자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제39조 관세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세관이 발급한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은행에 붙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관이 직접 받아 은행에 넣을 수 있다.

제40조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공민의 집과 국제우편물은 관세를 붙어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

입하는 물자는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집입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제4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물 수 없는 경우
관세납부기간 연장신청문건을 납부기간이
끝나기 5일 전에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
은 관세납부기간을 10일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42조 관세를 초과하여 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관세를 문 때로부터 1년 안
에 더 바친 관세를 되돌려 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5일 안
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세관은 관세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물자를 반출한 날부터 1년 안에 관세
를 추가하여 물릴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고의적인 행위로 관세를 잘
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부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반출한 날부터 3년
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관세

를 면제받고 들어온 물자를 정해진 용도에
만 리용하여야 한다. 관세가 면제된 물자
를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관에 알리고
해당 관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를 물지
않은 물자는 팔고 살 수 없다.

제45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서는 2년
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집입자는 보세기간이 끝나기 10
일 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세
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
까지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47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세물
자를 가공, 포장, 조립하기 위하여 보세지
역 밖으로 내가려는 경우 관세와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세관에 맡겨야 한다.
세관은 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반출한 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지
않으면 세관에 맡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 수 있다.

제 5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48조 세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매일 연체료를 물린다. 관세납부통지서를 내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와 연체료에 맞먹는 물자를 관세와 연체료로 처리하거나 해당 은행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돈자리에서 관세와 연체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49조 세관법규를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과 운수수단은 억류 또는 몰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50조 세관 수속과 검사, 관세납부와 관련한 의견사항은 해당 세관과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상급세관에 신소청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상급세관은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처리받은 날부터 10일안에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 험 법

1995. 4. 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보험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제 2 조 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재해보험 같은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신용보험 같은것이 속한다.

국가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보험의 종류를 늘이며 보험사업이 자원성과 의무성의 원칙에서 옳바로 진행되도록 한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공화국령역밖에 거

주하는 조선동포도 보험사업을 할수 있다.
다른나라 보험기업의 대표부, 지사, 대리
점도 보험사업을 할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보험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
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이행하도록 한다.

제 5 조 국가는 보험사업을 장려하며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자연재해로 생긴 피해와 손해
에 대한 보험보상을 원만히 하도록 한다.

제 6 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
업, 외국인이 보험에 들리는 경우 공화국
령역에 있는 국가보험기관 또는 외국투자
보험기업이 하는 보험에 들도록 한다.

제 7 조 국가는 보험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보험기관, 국제보험기구와의 교류와 협조
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보험당사자

제 8 조 보험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이
다.

보험자에는 국가보험기관과 외국투자보험
기업이 속하며 피보험자에는 보험자와 보

험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속한다.

제 9 조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 또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금을 내줄 의무를
지며 피보험자는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의무적인 보험과 외화로 하는 보험,
재보험을 하려는 보험자는 국가보험관리기
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율을 만들어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표준조건이나
보험료율은 적용할수 없다.

제 12 조 보험자는 연간업무결산이 끝나면 재
정상대표와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만들어
국가보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 13 조 외국투자보험기업은 자기가 받은 보
험료의 30%이상을 정해진 보험기관에 재
보험하여야 한다.

제 14 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는

경우 보험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대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붙어야 한다.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자도 보험료를 물어야한다.

제16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대상에 대한 중요자료들을 보험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피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의 피해와 손해를 막기 위한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재산보험사고가 생기면 곧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험계약

제17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사이에 맺는다.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수도 있다.

제18조 보험당사자들은 인체보험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맺어야 한다. 인체보험계약을 맺는 절차와 방법은 국가보험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9조 보험당사자들은 재산보험계약을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에 따라 맺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에 없는 사항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

제20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으면 보험증서를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21조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자에게서 보험료나 보험료지불담보를 받는 때부터 생긴다.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생명보험, 어린이보험계약을 맺은자가 정해진 기간에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며 보험료를 다시 물면 그때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진다.

제22조 재산보험계약의 대상은 금액으로 계산할수 있어야 하며 보험가격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재산보험계약을 갱신하려는 보험당사자들은 보험대상의 가격을 다시 정하고 보험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산보험계약기간에 보험대상에 미치는 위험이 변동되면 보험당사자들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위험이 커진데 대하여는 넷 보험료를 받으며 위험이 줄어든데 대하여는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24조 재산보험계약기간에 보험대상의 가치가 낮아졌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자는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납은 보험기간에 해당한 몫만큼 줄여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보험계약을 맺은 피보험자는 계약된 보험대상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6조 재산보험대상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보험계약에 따르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부도 함께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계약에서 정한 위험이 커지게 되면 해당계약을 갱신하거나 취소할수 있다.

제27조 화재보험, 화재보험계약 같은것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없

다. 그러나 생명보험, 어린이보험계약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할수 있다.

제28조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관리정형을 료해할수 있으며 사고요소를 발견하면 그것을 없앨데 대한 의견을 줄수 있다.

제 4 장 보험보상

제29조 보험보상은 인체보험에서는 보험금으로, 재산보험에서는 보험보상금으로 보험자가 한다.

보험자는 보험보상을 계약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험금액은 보험보상금의 최고한계이며 보험료계산의 기초이다.

보험금액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보험보상은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할수 없다.

제31조 보험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주며 보험사고가 없이 보험계약기간이

끝나고 정해진 보험료를 다 분 피보험자에게는 반기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

제32조 보험자는 화재보험, 재해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보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
보동능력감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한다.

제33조 생명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불수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제34조 화재보험, 재해보험, 재산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없이 보험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미 받은 보험료는 보험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35조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손해감정분견과 보험증서를 첨부한 손해보상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보험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제36조 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가 생겨 피보험자가 들어나는 손해를 막기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제때에 대책을 세우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37조 재산보험가격의 일부를 보험에 든 경우 보험보상금은 보험가격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38조 재산보험대상의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곳의 해당 시기에 가격에 따라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부분손해가 생기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상하며 전부손해가 생기면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상한다.

제40조 재산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상한 보험자는 해당 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와 이익을 전부 넘겨받는다. 그러나 재산보험금액의 일부를 보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한 금액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권리와 이익만을 넘겨받는다.

제41조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의 책임이 제3자에게 있을 경우 그로부터 손해보상금을 청구할수 있는 문건을 받아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문건을 받지 못한 보험자는 손해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제42조 전쟁 또는 그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피해나 손해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는다.

제43조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 또는 보험보상을 받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피해나 손해, 자연감모, 부패변질, 녹, 마모 같은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 5 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제44조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보험관리기관이 한다.

국가보험관리기관은 보험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며 보험계약표준조건과 보험료율의 적용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5조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불린다.

1. 국가보험관리기관과 합의없이 의무적 보험, 외화보하는 보험, 재보험을 한 경우
2.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표준조건이나 보험료를 적용한 경우
3. 연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실대로 만들지 않았거나 제때에 내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보상을 하지 않거나 제때에 하지 않은 경우

제46조 이 법을 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47조 보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1995. 2. 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공증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은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민사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공증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국가는 공증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 주도록 한다.

제 3 조 국가는 공증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 4 조 국가는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부여된 민사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 5 조 공증은 국가공증기관에서 한다. 다

- 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공화국국민이 신청하는 공증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에서 한다.
- 제 6 조 국가공증기관은 도(적할시) 소재지에 둔다. 필요에 따라 시(구역), 군 소재지에도 들수 있다.
- 제 7 조 공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재판소가 한다.
- 도(적할시) 재판소는 관할지역의 공증사업을 지도한다.
- 제 8 조 이 법은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 2 장 공증대상

- 제 9 조 국가공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문서에 대하여 인증한다,
1. 신분 및 가족친척 관계와 관련한 인증
 2. 기술 및 전문가 자격, 학위학적, 명예칭호, 지적권리와 관련한 인증
 3. 소재불명자 및 사망자와의 관련한 인증

4. 재산소유권과 관련한 인증
5. 상속과 관련한 인증
6. 계약과 관련한 인증
7. 법인 및 위탁, 대리와의 관련한 인증
8. 채권채무, 피해보상과 관련한 인증
9. 상표와 관련한 인증
10. 사고, 검사와 관련한 인증
11. 기관명칭, 은행돈자리, 수표, 도장과
 관련한 인증
12. 기업의 기본규약과 관련한 인증
13. 문서의 원본, 사본, 번역본과 관련한
 인증
14. 증거보존, 재산의 공탁과 관련한 인증
15. 이밖에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에 대한 인증

제10조 국가공증기관은 중요한 개인재산, 외국투자기업의 재산과 법인을 등록한다. 등록된 재산이나 법인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제11조 국가공증기관은 빗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민사분쟁의 대상물,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금, 임자없는 물건을 공탁

받는다.

제12조 국가공증기관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소멸될수 있거나 다시 수집할수 없는 민사사건의 증거를 보존한다.

제 3장 공증관할

제13조 시(구역), 군 소재지에 있는 국가공증기관은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공증을 한다.

도 (적합시) 소재지에 있는 국가공증기관은 공화국령역과 다른 나라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공증을 한다.

제14조 공증은 신청하는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에서 한다.

한 공증대상에 대하여 여러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에서 공증할 수 있다.

제15조 건물은 건물이 있는곳, 기관기업소, 단체에 등록된 재산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 보존된 증거와 공탁한 재

산은 증거 또는 재산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에서 공증한다.

제16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의 인 증은 그의 마지막 거주지, 유언의 인 증은 유언 한 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에서 한다.

제17조 자연재해, 사고, 계약체결과 관련한 인 증은 자연재해나 사고가 있는곳 또는 계약을 체결 한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에서 한다.

제 4 장 공 증 절차와 방법

제18조 공증의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해당 국가공증기관에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하거나 공증인을 현지에 초청하여 할수 있다.

제19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증신청서와 증거문서, 국가수수료납부증을 해당 국가공증기관에 내야 한다.

공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장직위, 사는곳, 신청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신청서가 불비

할 경우 5일안으로 수정보충하게 한다.
정해진 기간에 수정보충하였을 경우에는
공중신청서를 처음 받은 날을 신청한 날로
한다.

제21조 국가공중기관은 공중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공중기관은 공중을 신청한 당사
자의 자격, 신청내용과 증거문서의 진실성,
합법성 같은것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증
인을 부르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에게 증거물을 요구하며 해당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중과
관련한 국가공중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공중기관은 공중신청내용이 정
확하고 법의 요구에 맞을 경우에는 공중문
서를 만든다.

공중문서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당사자
에게 준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중을 거부
한다.

1.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2. 공증신청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
3.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증거가 없거나 날조되었을 경우
4. 공증신청내용이 비밀에 속하는 경우
5.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그것을 포기한 경우
6.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았을 경우

제25조 공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제26조 재산의 공탁과 증거의 보존은 국가 공증기관이 직접 하거나 해당 기관에 맡겨할수 있다.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은 거래은행에, 독해물은 해당 감독기관에, 부패변질될수 있는 물건은 수매시켜 현금을 은행돈자리에 넣어 보관하며 증거는 증인심문조서, 현장 검증서, 감정서를 받아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제27조 공탁받은 재산과 보존하고있는 증거

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자에게 돌려준다.

제28조 국가공증기관은 공탁받은 재산을 임자가 정해진 기간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발급할수 있다.

집행문은 인민재판소 집행원이 집행한다.

제29조 공증문서는 조선말로 쓴다.

다른 나라 사람은 공증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쓸수 있다.

제30조 신청된 공증에 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공증원은 그에 대한 공증을 할수 없다.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정하게 공증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증원을 다른 공증원으로 바꾸어줄데 대하여 요구할수 있다. 해당 국가공증기관은 제기된 의견이 정당할 경우에는 다른 공증원으로 바꾸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한다.

제31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국가수수료와 해당 비용을 정한데 따라 붙어야 한다.

제 5 장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제32조 공증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증문서나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 국가공증기관 소재지에 있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10일안으로 심의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33조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제34조 상소를 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국가공증기관은 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공증신청내용을 다시 조사하거나 재판소의 확증자료에 근거하여 처리할수 있다.

외국투자은행법

1993. 11.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

제 1 장 외국투자은행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영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속한다. 외국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제 4 조 국가는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법과 규정에 따라

야 한다.

제 6 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환관리기관이 한다.

제 7 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제 8 조 공화국 영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는 은행명칭, 책임자의 이름과 약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율,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힌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 9 조 합병은행의 설립신청은 합병당사자가 한다. 합병당사자는 은행설립 신청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합병계약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투자가의 영업허가증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외국투자는 은행설립신청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투자가의 제정상태표, 영업허가증 사본,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은행 지점의 설립신청은 본점이 한다. 외국은행 본점은 은행설립신청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연차보고서, 제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본점의 영업허가증 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보증서, 지점의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은행은 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안에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은행설립을 신청한 자는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에 은행설립 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며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능력의 부족, 계약의무의 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된다. 이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해산승인을 받으며 해당위원회 감독밑에 청산사업이 끝나면 은행설립등록기관에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은행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 끝나기 6개월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은행은 기본규약을 고치거나 은행을 통합, 분리하고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며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바꾸려고 할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승인밑에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합병은행의 한편 출자가는 상대

편 출자가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18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등록자본금을 조선원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로, 1차 불입자본금을 등록자본금의 50% 이상 가져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은 운영자금을 조선원 8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1차 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집중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을 채무의 보증의 또는 자기부담 채무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21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예비기금을 등록자본금의 25%에 이룰 때까지 해마다 연간 결산 이익금에서 5%를 메어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보상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데만 쓴

다.

제22조 외국투자은행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적립비율은 외국투자은행이 정한다.

제 4 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23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의 외화예금
2. 외화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 지불업무, 외화수형 할인
3. 외국환자업무
4. 외화투자
5. 외화채무 및 계약외부 이행에 대한 보증
6. 외화송금
7. 수출입물자 대금결제
8.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9.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10. 신탁업무

11. 신용조사 및 상담업무

12. 기타 업무

제24조 외국투자은행은 하나의 기업에 자기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 지점에 본자리를 열고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어야 한다.

제26조 외국투자은행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간 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은행은 부가집중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상태표와 손익제산서를 연간 업무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으로, 분기 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를 다음 분기 첫달 15일 안으로 의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영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탈이출

- 수 있다.
2.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이자수입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3.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게 받으며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4. 은행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

제 5 장 제재 및 분쟁 해결

제29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문다.

1. 승인없이 책임자,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2.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3. 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준 경우

4. 정기보고 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한 경우

제30조 외국투자은행이 승인된 업종 밖의 업무를 한 경우와 승인없이 기본규약을 고쳤거나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을 늘렸거나 줄인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1조 은행설립 신청자가 영입허가를 받은 날부터 10개월 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1994. 12. 28 정무원 결정 제48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
대발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운
영 및 해산과 관련한 절차와 질서를 규제
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안에 외국
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이 포함된다.

합영은행은 공화국의 은행(가타 금융기관
포함)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화국령역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몫에 따
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은 외국투자가가 공화국의 자유경
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운영

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공화국의 자유경제부역지대에 설립운영하는 지점이다.

제 4 조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동포도 이 규정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제 5 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합영은행은 공화국령역 안이나 밖에, 외국은행은 자유경제부역지대에 지점, 출장소를 내올수 있다.

제 6 조 외국투자은행은 취득한 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판매, 양도, 상속)할수 있으며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한다.

제 7 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권리와 리익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 8 조 외국투자은행은 이 규정과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은행을 설립하고 관리운영한다.

제 9 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화관리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

산, 업종을 심의승인하며 필요한 업무규범을 만들고 그 집행을 감독통제한다.

외화관리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 업무를 승인하며 그 집행을 장악통제한다.

제 2 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제10조 공화국령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는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중앙은행지점)에 내야 한다.

제11조 합병은행설립신청서에는 합병당사자들의 기업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기업등록날자와 등록기관, 기업책임자의 직무와 이름, 합병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과 그의 불입단계와 불입액, 기간, 출자비율과 금액, 예견하는 리사장과 부리사장의 이름, 합병기간, 업무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외국은행설립신청서에는 원기업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기업등록날자와 등록기관, 기업책임자의 직무와 이름, 외국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

본금과 그의 불입단계와 불입액, 경영기간, 업무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외국은행지점설립신청서에는 본점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본점등록날자와 등록기관, 본점책임자의 직부와 이름, 외국은행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자급, 경영기간, 업무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4조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합영당사자들이 한다.

합영당사자는 합영은행설립신청서에 합영계약서, 합영은행의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약력을 밝힌 분건, 투자가의 영업허가증사본, 외국환자업무승인서사본, 최근 3년간의 제정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외국투자는 외국은행설립신청서에 외국은행의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약력을 밝힌 분건, 영업허가증사본, 외국환자업무승인서사본, 최근 3

년간의 재정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한다.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은 은행지점설립신청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허가증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한 본점의 보증서, 은행지점의 경제타산서, 지점관리성원의 이름과 약력을 밝힌 문건, 지점책임자에 대한 본점의 전권위임장, 외국환자업무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합영은행, 외국은행이 지점, 출장소를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은행설립신청서와 첨부본건을 중앙은행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와 그에 첨부되는 문건(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제외)은 조선어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에 첨부되는 문건을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합영은행의 합영계약서에는 합영당

사자들의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설립할
합영은행의 명칭, 소재지, 합영기간, 등록
자본금, 출자 비율과 방식, 기간, 은행업
무내용, 관리운영기구, 임부결산과 리의금
분배, 해산조건, 분쟁해결, 계약의 효력발
생조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 합영은행, 외국은행의 기본규약에는
은행의 명칭, 소재지, 은행의 관리운영기구
와 그 직능, 경영기간, 결산년도, 기금의
적립, 해산 및 청산, 기본규약의 수정절차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은행의 정제타산서에는 등
록자본금(외국은행지점은 운영자금)과 그
불입계획, 직원의 채용 및 양성과 관련한
비용, 단계별 수입 및 지출액, 결산리의금,
기업소득세 이밖에 필요한 타산자료를 포
함시켜야 한다.

제22조 중앙은행은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
를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에 은행설립을 승
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설립승인서를 발급한다.

제23조 외국투자은행설립을 승인받은 외국 투자은행은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은행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에 은행설립승인서사본을 첨부한 외국투자은행설립등록신청서를 내여 등록하고 은행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등록신청서에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 승인받은 업무내용, 은행 책임자, 부책임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은행직원수(그중 외국인수)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외국투자은행은 1차불입자본금(외국 은행지점은 운영자금)을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문건과 은행설립승인서사본을 첨부한 영업허가증발급신청서를 중앙은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에 내여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5조 은행설립신청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0개월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영업을 시작할수 없을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30일전에 중앙은행에 리유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입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은행등록증사본을 첨부한 세무등록신청서를 내고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무등록신청서에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은행의 등록일자, 등록번호, 업종, 영업기간, 직원수(그중 외국인수), 거래은행명칭과 돈자리번호, 은행대표자, 재정부기책임자의 이름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30일안에 중앙은행에 변경승인과 관련한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규약을 고치려는 경우
2. 은행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려는 경우
3.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늘이거나

줄이려는 경우

4. 영업장소를 옮기려는 경우
5. 업종을 늘이거나 줄이려는 경우
6. 은행의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를 바꾸려는 경우

제28조 기본규약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 이유와 내용을 밝히고 변경한 기본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외국투자은행통합(분리)승인신청서에는 통합(분리)이유, 새로 설립되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를 밝히고 통합(분리)과 관련한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 계약서, 통합(분리)당시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손실금처리계산서, 통합(분리)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외국투자은행의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약력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외국투자은행등록자본금(운영자금)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이유와 변경하려는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밝히고 등록자본금(운영자금)변경과 관련한 최고결

의기관의 결정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은행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 이유와 장소를 밝히고 위치변경과 관련한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은행업종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이유와 늘이거나 줄이려는 업종을 밝히야 한다.

제33조 외국투자은행 채입자(부채입자)변경승인신청서에는 해당한 변경이유와 새로 선출된 채입자 또는 부채입자의 이름을 밝히고 그의 약력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외국투자은행은 변경사유에 의한 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에 자본양도승인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영은행의 한편 출자가가 출자한 자본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 출자가와 합의하여야 한다.

자본양도승인신청서에는 양도리유와 양도 받는자, 양도금액을 밝히고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 자본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36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가져야 한다.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의 등록자본금은 조선원 3,0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외화, 외국은행지점의 운영자금은 조선원 8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외화이어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은행은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다음과 같이 불입하여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은 한번에 불입하거나 여러 차례로 나누어 불입할수 있다. 등록자본금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불입하려는 경우 1차 불입자본금은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안에 등록자본금의 50%이상(허용하는 업무가운데서 일부 업무를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불입하여야 한다.

2. 운영자금은 은행지점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안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정한 기간안에 불입할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불입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제39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불입자본금, 예비기금 기타 잉여금)을 채무의 보증액 또는 자기채무액의 5%이상 가져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았거나 보험에 의하여 담보를 받은 채무는 자기채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보충할 대책을 세워야 하며 자기자본금의 부족현상이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산처분을 받을수 있다.

제40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예비기금을 가져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세금을 공제한 결산이익금에서 5%를 떼어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메꾸

거나 자본금을 늘이는 데만 쓴다.

제41조 외국투자은행은 결산이익금에서 세금과 예비기금을 공제한 다음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적립비율은 외국투자은행이 정한다.

제42조 외국투자은행은 결산이익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며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이익금을 처분할수 있다.

제 4 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43조 외국투자은행(이미 설립된 합영은행 외국은행의 지점, 출장소 포함)은 외화예금, 외화대부, 외국환자, 외화투자, 보증, 외화송금, 수출입물자대금결제,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신탁, 신용조사 및 상담, 보관과 같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수 있다.

제44조 외국투자은행은 공화국령역안이나 밖의 금융기관, 공화국령역안의 외국인투

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좌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과 같은 외화예금을 받을수 있다.

외화예금대상을 늘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외국투자은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 (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공화국령역안의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형합인, 증서대부, 시좌돈자리 초과지불과 같은 외화대부를 할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하여 대출(무역기관과 금융기관에 주는 대부는 제외)할수 없으며 그것을 초과하여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대부용도를 밝힌 신청분건을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의 35%를 초과(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제외)하여 외화투자를 할수 없다.

제47조 외국투자은행은 입찰보증, 계약리행을 담보하는 보증, 채무의 보증, 화불인수보증과 같은 보증을 할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1년(기간이 찍혀있는 계약리행을 담보하는 보증, 생산자재의 수출입과 관련한 보증은 제외)을 넘을수 없다.

제48조 외국투자은행은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전문으로 하거나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와 일반은행업무를 겸하여 할수 있다.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에는 비거주자로부터 정기예금, 통지예금의 접수,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 유가증권투자와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비거주자들사이에 거래업무를 하는 외국투자은행은 거주자에게도 대부할수 있다.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와 일반은행업무를 겸하여 하는 외국투자은행은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계산자리를 따로 가져야 한다.

제49조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외국투자은행은 해마다 2만원의 승인비를 내야 한다.

제50조 외국투자은행은 증권투자신탁,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신탁과 같은 신탁업무를

할수 있다.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은 금전과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신탁계산자리를 따로 가지야 한다.

위탁받은 금전은 예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금지불 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신탁업무는 법인자격을 가진 외국투자은행만이 할수 있다.

제51조 외국투자은행은 현금과 유가증권 같은 부동산성자산을 예금액의 7%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52조 외국투자은행은 부동산을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할수 없다.

제53조 외국투자은행은 중앙은행이 정한 영업인과 영업시간에 따라 업무를 하여야 한다. 일시휴업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은행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4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업무의 일부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였던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중앙은행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제55조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

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거기에 월평균 예금 잔고의 6%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예금지불 준비금을 매일 두어야 한다.

예금지불준비금은 중앙은행과 합의하여 수형 교환결제, 금융기관들사이의 대차결제에 쓸수 있으며 쓴 자금은 제때에 메꾸어야 한다.

예금지불준비금에는 리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제56조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년도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정한 기간안에 년도업무결산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중앙은행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7조 외국투자은행은 중앙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년간업무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안으로, 분기 재정상태표와 송금환자명세표, 수출입결제명세표, 투자항목명세표를 다음분기 첫달 15일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년간업무보고서를 다음해 3월안으로, 월 예금 및 대출금 명세표를 다음달 10일안으로 중앙은행

에 내야 한다.

제58조 외국투자은행은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제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계산자리를 새로 설정한것이 있거나 계산자리기재방법 같은것을 종전과 달리한것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자유경제부역지대에 외국투자은행을 10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의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10년이 되기전에 외국투자은행을 해산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하였거나 덜어준 기업소득세액을 받는다.

2. 공화국의 은행 또는 기업소 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리자률 보다 낮은 리자률로 대부하였거나 10년이상의 장기대부를 주있을 경우에는 얻은 리자수입에 대하여 거래세를 면제한다.

3.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만을 전문으

로 하는 외국투자은행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와 일반은행업무를 겸하여 하는 외국투자은행에 대하여서는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40% 덜어준다.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통하여 받은 예금에 대하여서는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4. 은행업을 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수 있다.

제 5 장 외국투자은행의 해산

제60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

1.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2.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진 은행이 통합하는 경우
3. 지불능력의 부족으로 영업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

4. 한영쌍방의 어느 일방이 계약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은행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
6. 재판소의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제61조 외국투자은행을 해산(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해산은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해산하기 30일전에 중앙은행에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을 첨부한 해산승인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산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국투자은행 직원, 중앙은행 직원, 공인부기점종원, 변호사들로 조직된 청산위원회(청산인)가 해당 절차에 따라 청산사업을 하여야 한다.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은행설립승인서, 은행등록증, 외국환자입부승인서, 영입허가증을 해당 발납기관에 바치고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제62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산이 자기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63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중앙은행에 영업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64조 중앙은행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도에 따라 1만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1. 승인없이 은행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경우
2. 년도결산기마다 예비기금을 정한 비율대로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3. 업무검열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정기보고문건을 정한 기간안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하였을 경우

제65조 중앙은행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외

국투자은행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영업을 중지시키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비법적으로 얻은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수 있다.

1. 승인된 업종밖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기본규약을 고쳤을 경우
3. 승인없이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늘였거나 줄였을 경우
4. 예금지불준비금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

제66조 중앙은행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한 기간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설립 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6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입증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68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분쟁사건을 해결할수도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증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 무역활동을 진행한다.

제 3 조 국가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지도한다.

제 4 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

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부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제 6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 7 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

제 8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이 속한다.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 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 지대당국은 현지 집행기관이다.

제 9 조 중앙대외경제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 지대의 개발, 경제관리 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 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3.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10조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지대당국을 통하여 투자 승인 신청을 받으면, 해당 투자의 대상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준다.

제11조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

제12조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주민행정, 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 사업을 한다.
2.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인신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지대의 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4. 모든 투자신청을 접수하며 총투자액이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2천만원까지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5. 기업등록, 영입허가를 한다.
6. 투자가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7.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다.
8.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조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제공한다.
9. 이밖에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13조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투자 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

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 안에 기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 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한다.

제16조 지대당국은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기관,

기업소 대표와 외국투자가대표로 구성되며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협의, 협조한다.

제 3 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에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어올 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의 승인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과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 대리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 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지대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로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자, 고급기능공을 지대로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 대외경제부서와의 합의밑에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다.

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2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외국투

제17조 보세불자를 수리, 가공, 조립, 실험, 포장 등을 목적으로 지대밖에 임시로 내갠다가 들어오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임시로 내갠던 보세불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들어올수 없을 경우에는 담보기간이 끝나기 20일전에 해당 지대세관에 담보기간 연장신청서를 제기할수 있다.

지대세관은 담보기간을 6개월 범위안에서 더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 3 장 세관의 감독과 검사

제18조 지대로 들어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과 국제우편물 및 지대에 나르는 운수수단과 개인은 지대세관이 있는 통로로만 통과할수 있으며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대세관이 없는곳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려고 할 때에는 지대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까운 지대세관에 이동검사신청서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운수수단운영기관 또는 그 테라인은 세관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비행기, 배, 기

1.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어오는 경우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은 세관의 검사문건과 상품의 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통 화, 금 용

제30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유통화폐는 조선 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 원 또는 전환성 외화로 할 수 있다.

조선 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필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나라
와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
동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받을 수 있다. 내
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산 조선 원은 우
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33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필에 비거주자들 사이
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3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
무역지대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
증권용 거래할 수 있다.

제 6 장 담보 및 특혜

제35조 외국투자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
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매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금
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
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
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3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37조 경영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율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떨어줄 수 있다.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떨어줄 수 있다.

제38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다.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40조 외국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

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부구조 건설부분에 제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제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41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중재도를 실시한다.

제 7 장 분쟁해결

제4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1993. 11. 29 정무원 결정 제75호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가 한다.

제 4 조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 5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한다.

제 6 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지대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초청한 분진을 가지고 사증 없이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초청 기관은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출입자들의 명단을 내야 한다.

제 7 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 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가져야 한다.

제 8 조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외국인은 지대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지대당국의 출입국 사업부서에 자동차통행증 발급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한다.

제 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을 일정한 기간에 여러번 반복하려는 외국인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30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다회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가진 다른 나라 관광객은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관광하려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 대표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관광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 안의 관광봉사기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우리나라 주재 다른 나라 외교대표부, 경제무역대표부,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은 외교부에, 영사대표부 성원은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이밖의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에 제기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출국할 수 있다.

제1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하기 5일 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떠나기 5일 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중 또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자유무역항을 통하여 중계되는 무역화물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공화국 영역을 거쳐 화물자동차로 실이 나르려는 외국인은 자동차가 국경을 통과하기 5일 전에 해당지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30일로 한다.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한다.

제1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17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에 해당 발급부서에 신청하여 기간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8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은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주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분실했거나 해당 기일 안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분실한 증명문건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값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린다.

제20조 국제 테러범, 마약 중독자, 마약 밀수입자, 전염병 환자, 정신병자와 이밖에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올 수 없다.

제21조 증명문건을 위조하였거나 정해진 통

료로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빙분건을 회수하고 벌금을 물리며 그 행위가 업중할 경우에는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및거주규정

1994. 6. 14 정무원 결의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체류 및 거주는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이 규정에 따라 지대에 체류 및 거주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 체류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외국인은 지대에 단기체류하거나 장기체류할 수 있다.

단기체류는 90일까지의 체류, 장기체류는 90일 이상의 체류이다.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에 거주할 수 있다.

제 4 조 지대안의 외국인 체류 및 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이 아래부터는 출입국사업부서라 한다)가 한다.

출입국사업부서에는 체류지 출입국사업부서가 포함된다.

제 5 조 지대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도착한 다음날부터 48시간 안으로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등록신청서를 내고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거주지, 체류하려는 곳, 기간, 체류이유 같은 것을 밝히고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나 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체류등록수속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초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신하여 할 수 있다.

제 7 조 지대 안에 들어왔다가 들어온 다음 날부터 48시간 안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지대안의 무역항에 들어온 외국배 선원, 다른 나라 고위급 대표단성원, 우리나라 주재 다른 나라 대표부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제 8 조 외국인 여관, 숙소, 초대소에 숙박하려는 경우에는 숙박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 여관, 숙소, 초대소는 외국인의 숙박정형을 출입국사업부서에 그날로 알려야 한다.

제 9 조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7일 안으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체류하거나 거주할 곳, 기간, 체류 또는 거주 이유는 같은 것을 밝히고 최근 90일 안에 모자와 안

경을 벗고 찍은 사진(4×3센치미터) 4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은 17살이상 된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외국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잃어버린 다음날부터 5일 안으로 해당 이유서를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어 발급받아야 한다. 이유서에는 사진 2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과 초청기관의 기간연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어린이의 출생, 본인 또는 동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와 직업 및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안으로 해당 신청서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야 한다.

제15조 출입국사업부서는 출생, 사망, 변동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대 안의 외국인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에는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공화국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체류증, 거주등록증, 여행증, 관광증, 출입증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17조 지대 안에 체류하다가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바치고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대 안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

밖에 있는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여행하였다가 지대로 다시 오는 경우 유효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

제19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그 유효기간의 연장, 출생 및 사망등록, 직업 또는 거주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중앙제정기관이 정한다.

못쓰게 되었거나 분실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값을 내야 한다.

제20조 지대출입국사업부서는 이 규정을 이긴 외국인에게 정도에 따라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회수하며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1조 이 규정을 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

1994. 2. 21 정무원 결정 제8호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이 아래 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할 수 있다. 상주대표사무소에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4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지로 하며 그 정원수는 5명을 넘을 수 없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정원에는 책임자와

대표들이 포함된다. 통역원, 타자수, 부기원, 경리원을 비롯한 행정기술성원과 운전수, 경비원과 같은 봉사성원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에 속하지 않는다.

제 5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본 기업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 기업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불자를 주고받은 것과 같은 위임대리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기업의 대리위임장을 도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본 기업의 위임대리업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자체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다 되거리, 위탁판매를 하거나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활동을 할 수 없다.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상주대표사무소

의 활동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 7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변경, 기간연장과 같은 신청문건은 조선어와 외국어로 만들어야 한다.

제 8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 9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지대당국을 통하여 대외경제위원회(외국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는 본 기업과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책임자의 이름, 대표성원수와 대표들의 이름, 설치장소, 활동내용, 상주기관 같은 것을 밝히고 본 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기업등록증서 사본, 거래하는 은행기관이 발급한 신용확인서, 상주하려는 대표사무소 책임자, 대표성원들의 위임장, 경력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는 본 기업의 최근 제정상대표와 손약계산서, 기본규약, 이사회 의 성원명단 같은 것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외경제위원회, 중앙은행(이 아래 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은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집토 삼 의한 다음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승인기관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지대당국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3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를 내어 등록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의 내용을 밝히고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대당국은 승인된 상주대표사무소

를 등록하고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한 날이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일로 된다.

제1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체류증 또는 상주외국인증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 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는 출입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6조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해마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 전에 지대당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7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설치장소, 상주대표 성원수를 변경시키거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

고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의 위임장과 정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이상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상주대표 가운데서 어느 한 상주대표가 책임자의 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의회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다른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0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해당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1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마다 1월 안으로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연

간사업 총화자료를 내야 한다. 연간사업 총화자료는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주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상주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이유를 밝히고 상주기간 본 기업이 우리나라와의 경제거래 정형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상주대표사무소에 필요한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은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번호를 받은 다음 자동차 3자책임보험에 들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은 팔거나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분 다음 지정된 상업(무역)기관을 통해서만 팔 수 있다.

제24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필요한 건물을 세

내거나 로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건물관리기관 또는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세넨 건물, 채용한 로력의 관리 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건물양도 또는 로동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통신은 공화국의 해당 체신기관을 통하여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 국제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이 끝났거나 상주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철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철수하기 30일 전에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에 서면으로 알리고 세무 및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기관의 납세 확인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제27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거나 변경 및 등록취소 수속을 하려는 경우에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해당기관에 물어야 한다.

제28조 심사승인가관과 지대당국은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 정형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검열일군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이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공화국 영역 밖으로 추방할 수 있다.

제30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차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

자유무역항규정

1994. 4. 28 정부원 결정 제20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무역집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절서와 이용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무역항은 라진항, 선봉항, 청진항이다. 자유무역항에는 항지역과 항수역이 포함된다. 항지역에는 부두, 등대, 배수리기지, 집의 야적장, 보관창고와 구내철길, 구내길 같은 것이 있는 지역이 속하며 항수역에는 배의 입출항수로, 가박지, 정박지 같은 것이 있는 수역이 속한다.

제 3 조 경제무역활동을 하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배, 선원, 어재과 짐은 국적이거나 출발지, 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유무역항에 나들 수 있다.

제 4 조 자유무역항(이 아래부터는 항이라 한다)에 나드는 배와 짐에는 관세나 톤세, 운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5 조 항에서는 배의 취급과 짐작업, 짐보관, 배수리와 같은 경제활동을 한다. 배길안내,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의 운반, 채포장, 가르기, 섞기 같은 작업과 봉사, 배 및 설비의 수리, 항시설물 및 설비의 임대, 보관창고의 운영과 같은 사업은 항관리운영기관(이 아래부터는 항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육상출입증을 발급하거나 배의 입출항 승인을 하며 항안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 항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침몰된 배와 짐을 배 또는 짐임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업은 항사업감독기관이 한다.

항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 갱신하는 사업은 항건설기관이 한다.

제 6 조 외국투자가는 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창설하여 부두, 창고, 배수리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한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창설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항에 나드는 배, 선원, 이캐과 짐은
국정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수의
검역,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중재부역
짐은 해당검사, 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거나 검역을 한
다.

제 8 조 항출입, 항에서의 경제무역활동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한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 9 조 이 규정은 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
려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
래부터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라 한다)
와 공민,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조직(이 아래부터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체라 한다) 및 개인, 공화국 영
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항 출입

제 10 조 항 출입은 지정된 육상 출입구와 입

출항수로를 통하여야 한다. 육상출입구를 통하여 항에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항사업 감독기관이 발급한 출입증이 있어야 하며 입출항수로를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사업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출항하려는 배의 임자 또는 선장은 배의 기술자료, 신거나 부틸 짐명세서와 선원의 명단,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 배길안내지점의 도착 또는 출항예정시간을 밝힌 문건 같은 것을 항사업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11조 입항하려는 배는 배길안내지점에 도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출항하려는 배의 선장은 해당지점에서 검사, 검역을 받을 때마다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내야 한다.

제13조 배가 입출항하거나 항수역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길안내는 항기관의 배길안내원이 한다. 배가 입항할 때는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가박지 또는 부두까지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

다. 항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배길 안내지점에서부터 외박지까지 배길안내를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 배가 출항할 때는 항가박지 또는 부두에서부터 배길안내지점까지 배길안내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 일정한 지점까지만 배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길안내를 받은 배에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길안내원이 지사 않는다.

제14조 기름수송배, 가스수송배와 같은 위험물질을 실은 배는 항기관이 특별히 정한 구역에만 정박할 수 있다.

제 3 장 함의 이용

제15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 운반, 제포장, 가르기, 섞기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작업 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작업의 종류,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배의 입항예정날자, 작업을 끝내는 날자와 시간, 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밝혀야 한다. 짐실이작업인 경우에는 짐작업계약서에 짐

모으기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제16조 짐을 보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 보관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일자, 보관기관, 짐 보관과 관련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항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에는 항사용료, 기름공급료, 물공급료, 짐보관료, 짐작업료, 짐운반료 같은 것이 포함된다. 항에 보관하는 짐은 10일간 보관료를 받지 않는다.

제18조 배에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따라 한다. 부패 변질될 수 있는 짐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싣거나 부릴 수 있다.

제19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과정에 배에서 생기는 노동재해에 대한 책임은 배임자가 진다.

제20조 공화국의 해당기관, 기업소는 항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배임자 또는 짐임자

의 대리사업을 하는 대리인기관을 설치하고 항안에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기관을 통하여 항안의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제22조 항의 관리운영과 설비개조에 필요한 자금은 항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보장한다.

제23조 항기관은 항관리운영을 위한 항연합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항연합위원회에는 항기관과 항사업 감독기관, 철도운수기관, 세관, 검사기관, 검역기관, 배 및 집대리인기관, 항을 이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참가한다. 항연합위원회 책임자는 항장이다. 항연합위원회는 한달에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항안에서는 해당 항 및 해저에 대한 조사, 연구, 관측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항의 출입 및 이용질서를 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4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5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를 적용한다.

1. 항의 구조물, 시설물, 설비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해를 보상시키고 정도에 따라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6. 배가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의류하고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7. 요금을 정한 기간 안에 불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송수단과 짐을 의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8. 해당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기재 또는 배를 불수한다.

제26조 항사업감독기관은 사범검찰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사범검찰기관의 해당 분건에 의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수송수단 또는 짐을 의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류하거나 유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과 손실, 위협은 의류 또는 유치를 요구한 자가 진다.

제27조 이 규정을 이긴 행위가 업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항운영과 이용에서 제기되는 의견상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합의 해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1995. 6. 28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맞는 세관통과질서와 특혜 관세제도를 철저히 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설치된 세관통로를 통하여 들여오거나 내가는 짐, 운수 수단, 국제우편물을 관리하거나 지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상주대표 기관(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과 지대에 상주하거나 나드는 공민, 다른 나라의 공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지대세관은 국경역과 자유무역항을 비롯한 지대경계선의 통로와 지대안의 비행장과 지대안의 중요지점에 내온다.

제 4 조 지대세관은 시대의 세관통로를 통과하는 짐, 운수수단, 국제우편물과 개인의 짐에 대한 세관 수속과 접사를 지대의 실정에 맞게 간편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대세관은 보세공장, 보세창고 및 그밖의 세관관할지역에 세관원을 주재시키거나 파견하여 감독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자기 부담으로 사무장소와 검사장소를 지대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대리기관은 세관신고원을 두고 세관사업을 협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대세관은 나라의 안전과 사회모덕 생활, 주민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물건과 마약, 부기를 비롯한 금지품을 반출입하거나 밀수행위를 하는것과 같은 위법현상을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지대세관은 지대안에서 이 규정을 위반한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사를 제때에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8 조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세관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규정과 지대관계법 규정에 준한다.

제 2 장 세관 등록 및 접수

제 9 조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대리기관은 지대세관에 기업등록신청서를 내고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기업등록증(사본), 세관신고원추천서를 비롯하여 지대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대세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15일안에 세관등록을 하고 세관신고원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보세공장, 보세창고 운영기관에는 보세공장 또는 보세창고 등록증과 세관신고원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1조 세관수속은 지대세관에 등록된 세관신고원이 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세불자를 수리, 가공, 조립, 실험, 포장 등을 목적으로 지대밖에 램시로 내갔다 들어오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램시로 내갔던 보세불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들어올수 없을 경우에는 담보기간이 끝나기 20일전에 해당 지대세관에 담보기간 연장신청서를 제기할수 있다.

지대세관은 담보기간을 6개월 범위안에서 더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 3 장 세관의 감독과 검사

제18조 지대로 들어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과 국제우편물 및 지대에 나르는 운수수단과 개인은 지대세관이 있는 통로로만 통과할수 있으며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대세관이 없는곳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려고 할 때에는 지대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까운 지대세관에 이동검사신청서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운수수단운영기관 또는 그 테라인은 세관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비행기, 배, 기

차, 자동차의 도착과 떠나는 예정시간을 미리 해당 지대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0조 지대로 들어오거나 지대에서 나가는 비행기, 배, 기차, 자동차가 지대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하면 해당 운수기관 또는 그 대리인 혹은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지대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대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한 운수수단은 해당 지대세관의 승인없이 떠날수 없다.

제21조 지대로 들어오던 비행기, 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대세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내렸거나 정박하였을 경우와 비행기와 배의 안전을 위하여 짐을 부러웠거나 던졌을 경우에는 그 운수수단의 운영기관 또는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즉시 가까운 지대세관에 알려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해당 지대세관은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지대에서 수출입되는 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지대세관의 통과지점이나 보세공장, 보세창고 또는 지정된 도착지, 출하지에서 한다.

제23조 지대로 들어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이 지대밖의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국경 또는 항구세관에서는 검사하지 않으며 지대세관과 국경 또는 항구세관사이에 감독이송한다.

세관이 감독이송하는 짐은 수송도중에 그 목적지를 변경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짐을 부리우거나 운수수단에 다른 짐을 실을수 없다.

제24조 지대로 들어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을 지대와 공화국의 다른 지역사이의 도로를 통하여 화물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감독이송하는데 편리한 설비와 조건을 갖춘 자동차로 수송하여야 한다. 산적짐인 경우에는 일반화물자동차로 수송할수 있다.

제25조 다음의 짐은 검사하지 않고 감독만 한다.

1. 중계짐과 통과짐
2. 추가적인 가공이 없이 재수출하는 짐

제26조 지대세관은 지대에 들어온 원료, 자재로 생산하였거나 가공 또는 조립하여 만

든 제품을 국가가 특별히 따로 승인한것을 제외하고는 지대안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대세관의 감독통제밑에 있는 짐의 포장을 헤치거나 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대세관이 운수수단, 짐 또는 창고에 봉인한것은 해당 세관의 승인없이 뗄수없다.

제28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대에 직접 나드는 개인은 세관신고없이 휴대품(따로 부쳐오는 짐포함)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지대에 나드는 개인(운수수단의 승무원포함)은 지대세관에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대에 나드는 개인은 자체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수량의 범위에서 물품과 기념품을 가지고 다니거나 우편물로 반출입할수 있다.

이사짐과 상속재산은 그를 증명할수 있는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에 따라 제한없이 통

과시킨다.

제30조 지대에 나르는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은 다음과 같이 통과시킨다.

1.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대에 직접 나르는 개인의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은 해당 은행의 증빙분건과 세관신고없이 통과시킨다.
2.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지대에 나르는 개인의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은 해당 은행의 증빙분건 또는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에 세관이 확인한 세관신고서에 의하여 통과시킨다.
3. 지대에 직접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개인의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은 지대세관이 본인의 세관신고서를 받고 통과시킨다.

제31조 지대에서 다른 나라 또는 공화국의 다른 지역과 교류하는 우편물은 해당 우편국 또는 집입자가 지대세관에 신고하고 검

사를 받아야 한다.

우편국은 지대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짐임자에게 내주거나 지대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및 개인은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소포속에 편지, 인쇄물, 돈, 유가증권 등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료, 자재, 반제품과 국내 원료, 자재, 반제품을 혼합하여 제품을 가공 및 조립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률과 생산량을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4조 보세공장은 수입 원료, 자재, 반제품의 접수, 소비, 재고 실태와 완제품의 생산, 수출, 국내 판매, 재고실태 등을 다음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일반 수출입물자를 보관할수 없다.

보세창고관리기관은 지대세관이 승인한 짐만 받아 보관하거나 내주어야 하며 매달

5일안으로 전달 보세불자의 접수, 출고 및 재고실태를 서면으로 지대세관에 보고하고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보세창고에서는 보세불자에 대한 가공 또는 조립을 할수 없다.

보세창고에서 짐을 옮기거나 재포장 또는 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며 상품을 선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관원의 협회별에 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세창고관리기관은 불자를 보관하는 과정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파손, 민질,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불자의 수량부족과 파손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창고관리기관이 책임진다.

제 4 장 관 세

제38조 지대세관은 지대에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 특별관세율을 적용한다.

제39조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1.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어오는 물자

사를 받아야 한다.

우편국은 지대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짐임자에게 내주거나 지대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및 개인은 지대로 들어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소포속에 편지, 인쇄물, 돈, 유가증권 등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료, 자재, 반제품과 국내 원료, 자재, 반제품을 혼합하여 제품을 가공 및 조립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율과 생산량을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4조 보세공장은 수입 원료, 자재, 반제품의 접수, 소비, 재고 실태와 완제품의 생산, 수출, 국내 판매, 재고실태 등을 다음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일반 수출입물자를 보관할수 없다.

보세창고관리기관은 지대세관이 승인한 짐만 받아 보관하거나 내주어야 하며 매달

5일안으로 전달 보세불자의 접수, 출고 및 재고실태를 서면으로 지대세관에 보고하고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보세창고에서는 보세불자에 대한 가봉 또는 조립을 할수 없다.

보세창고에서 짐을 옮기거나 재포장 또는 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며 상품을 선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관원의 감독밑에 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세창고관리기관은 불자를 보관하는 과정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파손, 변질,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물자의 수량부족과 파손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창고관리기관이 책임진다.

제 4 장 관 세

제38조 지대세관은 지대에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 특혜관세률을 적용한다.

제39조 다음의 불자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1.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어오는 물자

사를 받아야 한다.

우편국은 지대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짐임자에게 내주거나 지대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및 개인은 지대로 들어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소포속에 편지, 인쇄물, 돈, 유가증권 등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료, 자재, 반제품과 국내 원료, 자재, 반제품을 혼합하여 제품을 가공 및 조립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률과 생산량을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4조 보세공장은 수입 원료, 자재, 반제품의 접수, 소비, 재고 실태와 완제품의 생산, 수출, 국내 판매, 재고실태 등을 다음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일반 수출입물자를 보관할수 없다.

보세창고관리기관은 지대세관이 승인한 짐만 받아 보관하거나 내주어야 하며 매달

5일안으로 전담 보세발자의 접수, 출고 및 재고실태를 서면으로 지대세관에 보고하고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보세창고에서는 보세물자에 대한 가공 또는 조립을 할수 없다.

보세창고에서 짐을 옮기거나 재포장 또는 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며 상품을 선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관원의 검회필에 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세창고관리기관은 물자불 보관하는 과정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파손, 변질,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물자의 수량부족과 파손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창고관리기관이 책임진다.

제 4 장 관 세

제38조 지대세관은 지대에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 특혜관세율을 적용한다.

제39조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1.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어오는 물자

2. 지대건설을 위하여 들어오는 물자
3. 지대에서 가공수출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물자
4. 지대안의 비생산기관이 자체수요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량의 범위에서 들어오는 사무용품, 사무용기구, 설비, 비품, 운수수단
5. 지대에서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물자
6. 지대에 상주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일정한 수량의 사무용품, 생활필수품
7.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자와 통과짐

제40조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한다.

1. 다른 나라로부터 지대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어오는 경우
2. 지대안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지대안에서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3.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어온 물자를 지대안에서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4.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의 휴대품과 우편물로 들어오는 물건이 자체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

제41조 지대에서 관광업, 관광업, 상업, 봉사업을 위하여 들어오는 생활필수품과 식료품에 대하여서는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간 해당 관세의 50%를 감면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30%를 감면한다.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10년안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철수할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42조 지대에서 팔기 위하여 술, 맥주, 담배와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도록 따로 정한 상품을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은 한도수량범위안에서 해당 관세의 50%를 감면하며 한도수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경우에는 초과한 수량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한다.

제43조 기관, 기업소가 면세로 들어온 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을 리용하여 지대에서 생산한 제품은 반드시 수출하여야 한다.

앞항의 제품을 국가의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대 또는 지대밖의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지대세관에 신고하고 해당 제품생산에 리용된 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물어야 한다.

해당 신고 기관, 기업소가 제품생산에 소비된 수입 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대세관이 해당 제품의 수입 가격을 참작하여 수입관세를 적용한다.

제44조 기관, 기업소가 지대밖의 공화국의 다른 지역의 무역기관으로부터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도록 따로 정한 품종을 위탁받아 수출하거나 물자를 사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물어야 한다.

앞항에 지적된 경로를 리용하여 원자재가 치보다 20%이상 증가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지대생산물과 같이 증명문건에 따라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제45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과 보세창고에서 2년
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지대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는 보세기간이 끝나
기 10일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서를 해당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지대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더 연장
하여줄수 있다.

제47조 보세물자를 수리, 가공, 조립, 실험,
포장 등을 위하여 임시로 지대밖에 나가려
는 기관, 기업소는 관세와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지대세관에 맡겨야 한다.
지대세관은 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
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해당 기관, 기
업소에 돌려준다. 그러나 반출한 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지 않으면 지대세
관은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8조 지대에서 수입물자에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국경도착가격으로 하며 수출물
자에 대하여서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한다.

개인의 휴대품과 우편물에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지대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소매가격으로 한다.

제49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당시의 관세률에 따라 조선원으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해당 시기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하는 외화환산률에 따른다.

제50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지대세관이 발급한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해당 은행에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51조 지대세관은 지대를 통하여 들어오거나 내가는 물자에 대한 세관수속과 감독관리와 관련한 세관료금을 받는다.

세관료금의 적용대상과 비율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52조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관세를 문 때로부터 1년안에 더 바친 관세를 돌려줄것을 해당 지대세관에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지대세관은 15일안에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53조 지대세관은 관세와 세관료금을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1년안에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한 관세와 세관료금을 받을수 있다.

기관, 기업소와 개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관세와 세관료금을 잘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3년안에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한 관세와 세관료금을 받을수 있다.

제 5 장 제 제 및 신 소 청 원

제54조 지대세관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 들어온 보세물자를 정해진 보세기간에 처리하지 않은데 대하여 독촉하였으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정매처리한다.

제55조 지대세관은 기관, 기업소가 이 규정을 어기고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세관등록증을 회수한다.

제56조 지대세관은 세관신고원이 이 규정을

어기고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세관신고원증을 회수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의 수출입품에 대한 세관수속을 정지시킨다.

제57조 지대세관은 기관, 기업소와 개인이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 또는 세관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일 해당 관세 또는 세관료금의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받는다.

제58조 이 규정을 어기고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물자와 운수수단에 대하여서는 벌금을 물리거나 억류 또는 몰수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59조 세관수속과 검사, 관세 및 세관료금의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그에 대하여 해당 지대세관에 제기할수 있다.

지대세관은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에 협의의 방법으로 정확히 해결해주어야 한다.

지대세관의 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

우에는 처분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상급세관기관에 신소청원을 제정할수 있으며 상급세관기관은 그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60조 신고청원에 대한 세관기관의 처리결과에 다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처리받은 날부터 10일안에 해당 제 관소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짐임자대리업무규정

1995. 7. 13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다른 나라의 짐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려는 짐임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다른 나라의 중계짐수송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항과 항공역, 지대밖의 자유무역항에 다른 나라 짐임자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짐임자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고 다른 나라 짐임자대리업무(이 아래부터는 대리업무라 한다.)를 할수 있다.

대리업무에는 짐임자의 위탁에 따라 중계하는 짐의 접수, 발송, 작업 및 보관수속, 세관수속, 검사 및 검역 수속, 비용청산, 사고처리, 수송조직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제 3 조 대리업무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

과 지도는 정부원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제 4 조 점입자대리기관을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점입자대리기관설립신청서를 자유경제부역지대를 관할하는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 또는 지대밖의 자유부역항이 있는 도행정경제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원대외경제기관(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기관의 이름과 점입자대리기관의 이름, 소재지, 설립근거, 대리업무내용 같은것을 밝히고 대리업무를 하여줄 데 대한 다른 나라 점입자의 의향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심사승인기관은 점입자대리기관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토하고 점입자대리기관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점입자대리기관설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점입자대리기관설립승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 6 조 점입자대리기관은 지대당국 또는 지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짐임자대리업무규정

1995. 7. 13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다른 나라의 짐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려는 짐임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다른 나라의 중계짐수송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항과 항공역, 지대밖의 자유무역항에 다른 나라 짐임자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짐임자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고 다른 나라 짐임자대리업무(이 아래부터는 대리업무라 한다.)를 할수 있다.

대리업무에는 짐임자의 위탁에 따라 중계하는 짐의 접수, 발송, 작업 및 보관수속, 세관수속, 검사 및 검역 수속, 비용청산, 사고처리, 수송조직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제 3 조 대리업무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

과 지도는 정부원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제 4 조 짐입자대리기관을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짐입자대리기관설립신청서를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관할하는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 또는 지대밖의 자유무역항이 있는 도행정경제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원대외경제기관(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기관의 이름과 짐입자대리기관의 이름, 소재지, 설립근거, 대리업무내용 같은것을 밝히고 대리업무를 하여줄 데 대한 다른 나라 짐입자의 의향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심사승인기관은 짐입자대리기관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토하고 짐입자대리기관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짐입자대리기관설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짐입자대리기관설립승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 6 조 짐입자대리기관은 지대당국 또는 지

대밖의 자유무역항이 있는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여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짐임자대리기관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짐임자대리기관의 이름과 소재지, 책임자이름, 인원수 같은것을 밝히고 짐임자대리기관설립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대당국 또는 도행정경제위원회는 짐임자대리기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날부터 10일안으로 등록하고 짐임자대리기관등록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 8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국경통과중계지점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들수 있다. 지사, 출장소의 설립신청, 심사승인, 등록절차는 짐임자대리기관 설립신청, 심사승인, 등록절차와 같다.

제 9 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다른 나라 짐임자와 대리업무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리업무계약에는 계약당사자의 이름, 계약날자, 대리업무의 내용, 다른 나라 짐임자의 임무, 짐임자대리기관의 임무, 중계

집수송연계 방법, 비용과 청산방법, 물건송달과 통신연계 방법, 사고처리와 제재 및 분쟁해결, 계약리행기간,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대리업무계약은 지대당국(지대밖의 설립된 집임자대리기관의 대리업무계약은 정부원대외경제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집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을 해당 수송수단에 실어보내려고 할 경우 짐싣기 5일전까지 배짐증면 또는 운송장을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집임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11조 집임자대리기관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 집수송기관과 해당한 짐작업계약, 짐보관계약, 집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의뢰서 또는 신고서는 해당 기관과 합의하고 계약으로 대치할수 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1. 짐작업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작업의 종류, 포장의 종류, 계량 중량, 수송수단의 이름, 도착예정날자, 작업을

시작하는 날자와 시간, 작업을 끝내는 날자와 시간, 작업비, 짐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밖의 필요한 내용

2. 짐보관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날자, 보관기간, 보관비, 짐의 보관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밖의 필요한 내용

3. 짐수송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종류, 개당 중량, 개당 용적, 짐보내는 지점, 짐 도착지점, 경유지점, 짐보내는 사람과 짐받을 사람, 수송수단별 종류와 요구수량, 수송기간, 수송비, 짐수송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2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을 기차로 실어보내려는 경우 수송이 시작되기 전달 20일까지 월짐차요구서를 철도운수기관에, 중계짐을 비행기로 실어보내려는 경우에는 중계짐반출입신고서를 항공역에 내야 한다.

제13조 다른 나라 짐임자는 중계짐을 자기 자동차로 실어나르려는 경우 직접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국경통과 5일전에 국경통

과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4조 공화국영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짐,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짐은 중계집으로 수송할수 없다.

제15조 짐입자대리기관은 중계집이 중계지점에 도착하였을 경우 수송기관으로부터 수송분건을 넘겨받아 수송수단에 짐실은 상태를 확인한 다음 짐보관기관에 짐을 넘겨주고 짐보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6조 짐입자대리기관은 보관된 중계집을 다른 나라 짐입자에게 보내려는 경우 짐보관증과 세관의 경유를 받은 출고의뢰서를 짐보관기관에 내고 짐을 넘겨받아야 한다.

제17조 짐입자대리기관은 다른 나라에 중계집수송을 위한 짐실이 작업이 끝나는 차제로 배집증권 또는 운송장과 같은 필요한 분건을 수송기관으로부터 받아 다른나라 짐입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8조 중계집을 실거나 무널 때의 수량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접수, 짐량한 수량에 준한다.

제19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 곧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사고난 중계짐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과 함께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21조 중계짐수송문건에 지적된 수량보다 남는 짐은 다른 나라 짐임자와 합의한 다음 세관의 승인밑에 짐임자대리기관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다른 나라 짐임자의 요구에 따라 중계짐의 검사 및 검역을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받을수 있다.

중계짐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은 그 짐을 싣거나 부리우는 장소에서 한다.

검사 및 검역 기관은 중계짐의 검사 및 검역이 끝났을 경우 해당한 확인문건을 발급 해주어야 한다.

제23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의 검사 및 검역 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곧 짐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중계점 수송과 취급 과정에 생긴 비용에 대한 청산은 계약에 따라 해당기관과 짐임자대리기관사이에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은 해당 기관과 비용청산을 한 다음 종합계산서를 만들어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25조 중계점의 취급과 관련한 요금기준, 작업량기준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26조 중계점의 취급과 관련한 요금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화에 의한 조선원의 환산은 해당 시기 국제시세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이 정한 비율에 따른다.

제27조 다른 나라 짐임자는 중계점의 취급과 관련한 요금을 대리업무계약에 따라 짐임자대리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28조 대리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하여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심의해결 한다.

제29조 이 규정을 이긴 기관, 기업소와 다른 나라 짐임자는 이긴 행위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거나 법적책임을 진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 양도및저당규정

1995. 8. 30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건물의 양도 및 저당 질서를 세워 지대안의 기업활동조건과 외국인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건물의 양도에는 건물의 임대,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이 포함되며 건물의 저당에는 건물소유권의 저당이 포함된다.

양도 및 저당 건물에는 살림집, 공공건물, 생산건물과 그 부속건물이 포함된다.

건물이 양도, 저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리용권도 함께 양도, 저당된다.

제 3 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과 리용권을 가질수 있으

며 건물의 소유권과 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건물을 지당할수 있다.

제 4 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는 기업창설승인문건 또는 투자승인문건에 밝힌대로 투자와 건설을 하였을 경우에만 건물을 양도할수 있다.

제 5 조 이 규정은 건물의 양도 및 지당과 관련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 6 조 이 규정은 건물을 양도하거나 지당하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에게 적용된다.

제 7 조 건물의 양도 및 지당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의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래부터는 건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 8 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소유권과 리용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제 2 장 건물의 임대차

제 9 조 건물의 임대는 건물의 사용료를 받고 그 리용권을 넘겨주는 행위이다.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줄수 있다.

건물임대자는 임대하려는 건물의 위치, 용도, 평면도, 면적과 같은 자료를 건물임차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제 10 조 건물을 임대차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의 임대자와 임차자의 이름, 소재지 또는 거주지, 건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기간, 용도,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지불기일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 11 조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건물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건물관리

과 계약조건에 맞게 리행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정한 기일과 계약조건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사이에 합의한 다음 지대당국에 알려야 한다.

제15조 계약당사자는 주문자의 계약리행담보를 위하여 선불금을 세울수 있다.

가공자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문자는 선불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할수 있다.

주문자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선불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상회할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은 주문자에게 반환한다.

제16조 보증기간안에 가공, 조립 제품의 질적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공자가 수리해주거나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17조 계약리행기간에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의무의 리행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해당 사유의 내용과 범위를 즉시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용정형을 늘 살펴야 하며 건물임차자의 요구에 따라 자기의 비용으로 건물을 제때에 보수해주어야 한다.

건물을 대보수하는 경우에는 건물임차자에게 보수기간에 생활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 해주어야 한다.

건물임차자의 잘못으로 지출된 건물의 보수비용은 건물의 임차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건물임차자는 건물의 보수대상과 보수내용을 건물임대자에게 알리고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건물을 보수하였거나 건물에 생기는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을 경우에는 거기에든 비용을 건물임대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제17조 건물의 임차자는 임차한 건물에 장식을 하거나 건물을 개조하며 건물의 명칭과 용도를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 건물임대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건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건물을 임대차하였을 경우에는 건물

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의 임대료를 주고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소유의 건물임대료는 국가가 적제정기관이 정한 임대료기준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며 이밖에 소유의 건물임대료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건물의 임대료를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한 임대료를 볼 때까지 매일 물지 않은 건물임대료의 0.1%에 해당한 연체료를 상대방에 붙여야 한다.

제19조 건물의 임대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건물의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임대료를 물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기관 또는 건물관리기관에 임대료지불을 공탁할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임대료는 문것으로 인정하며 임대료의 보관과 지불에 드는 비용은 임대료에서 지출된다.

제20조 건물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 없어진다.

용정형을 늘 살펴야 하며 건물임차자의 요구에 따라 자기의 비용으로 건물을 제때에 보수해주어야 한다.

건물을 대보수하는 경우에는 건물임차자에게 보수기간에 생활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 해주어야 한다.

건물임차자의 잘못으로 지출된 건물의 보수비용은 건물의 임차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건물임차자는 건물의 보수대상과 보수내용을 건물임대자에게 알리고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건물을 보수하였거나 건물에 생기는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을 경우에는 거기에 든 비용을 건물임대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제17조 건물의 임차자는 임차한 건물에 장식을 하거나 건물을 개조하며 건물의 명칭과 용도를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 건물임대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건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건물을 임대차하였을 경우에는 건물

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의 임대료를 주고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소유의 건물임대료는 국가가 경제정기관이 정한 임대료기준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며 이밖에 소유의 건물임대료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건물의 임대료를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한 임대료를 불 때까지 매일 물지 않은 건물임대료의 0.1%에 해당한 연체료를 상대방에 붙어야 한다.

제19조 건물의 임대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건물의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임대료를 물수 없는 경우에는 공중기관 또는 건물관리기관에 임대료지불을 공탁할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임대료는 문것으로 인정하며 임대료의 보관과 지불에 드는 비용은 임대료에서 지출된다.

제20조 건물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건물의 임대차가간이 끝났거나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 없어진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수 있다.

1. 건물임대자의 승인없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건물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2. 건물의 임대료를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
3. 임대하여준 건물을 제때에 보수하여주지 않을 경우
4.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
5. 이밖에 임대차계약에 정한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

제21조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전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한다.

제22조 건물의 임차자는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건물을 원상대로 복구하여 임대자에게 넘겨준 다음 건물관리기관에 건물

임대차의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건물의 매매 및 교환

제23조 건물의 매매는 건물의 값을 주고받는 다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받는 행위이며 건물의 교환은 건물과 건물을 서로 바꾸는 행위이다.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판매하거나 다른 건물과 교환할수 있다.

매매 및 교환 건물에는 임대하여준 건물, 건설하고있거나 앞으로 건설하게 될 건물도 포함된다.

제24조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거래조건에서 건물임차자, 건물공동이용자, 건물관리기관, 건물지당권자의 순위로 우선구매권을 가진다. 이 경우 건물판매자는 우선구매권자에게 건물의 판매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건물의 매매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한다.

입찰의 방법으로도 건물을 매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해당 건물값의 0.2%

에 해당하는 리행보증금을 세워야 한다.

제26조 건물을 매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 소재지 또는 거주지, 건물의 이름 및 위치, 가격, 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 리행담보조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건물의 예약매매인 경우에는 건설기간, 건설위치, 설계보장조건 같은것을 더 밝혀야 한다.

건물의 매매계약서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건물예약매매의 구매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안에 계약대상건설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선불금을 판매자의 거래은행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제28조 건물매매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건물관리기관에 건물매매신청서를 내야 한다. 건물매매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매매계약서사본, 토지리용권증서사본, 구매자의 투자 또는 기업창설 승인서, 거주 확인서, 구매자의 신용확인서를, 건물의

예약 매매인 경우에는 건설허가증서, 선불
금지불확인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매매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
거나 부결하는 통지불 신청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건물매매계약은 건물매매가 승인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1조 건물을 예약매매한 경우 판매자는
계약대상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부터 10
일안에 건물의 완공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그 건물을 넘겨
받아야 한다.

제32조 임대하여준 건물을 매매한 경우 판매
자는 임차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
다. 이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에 정한 당사
자들의 권리와 의무도 판매자로부터 구매
자에게 넘어간다.

제33조 건물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건물과 건물의 값을 주고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소유의 건물값은 국가가격제
정기관이 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

들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며 이밖에 소유의 건물값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 건물을 매매하였을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건물관리기관에 해당 건물의 취득 및 삭제 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건물의 취득 및 삭제 등록신청서에는 건물 매매승인서, 매매계약서, 건물소유권증서, 토지이용권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의 예약매매인 경우에는 건설보고서, 준공검사서, 설계도면과 같은 문건을, 임대건물의 매매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의 취득 및 삭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건물판매자에게는 건물삭제등록을, 구매자에게는 건물취득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취득자에게는 건물소유권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36조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다른 건물과

교환할수 있다.

교환하는 건물의 가격차액은 화폐 또는 다른 물건이나 채무로 청산할수 있다.

건물의 교환절차는 건물의 매매절차와 같다.

제 4 장 건물의 증여 및 상속

제37조 건물의 증여 및 상속은 건물의 값을 받지 않고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이다.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제38조 임대하여준 건물 또는 저당한 건물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에는 건물의 임대차 또는 저당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임대차계약이나 저당계약에서 지닌 건물을 증여하는자 또는 상속하는자의 권리와 의무도 건물을 증여받는자 또는 상속받는자에게 넘어간다.

제39조 건물을 증여하는자와 증여받는자는 건물증여서를 만들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임대하여준 건물 또는 저당한 건물의 증여서는 건물임대차계약 또는 건물저당계약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제40조 건물을 상속받는자는 상속하는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안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상속수속을 끝내야 한다.

6개월안에 상속수속을 끝내지 않은 건물은 건물관리기관의 소유로 된다.

건물을 상속받으려는자는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상속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건물을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건물의 증여 또는 상속등록신청서를 건물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건물의 증여 또는 상속등록신청서에는 해당 내용을 밝히고 건물소유권증서, 토지이용권증서, 공증을 받은 건물증여서 또는 상속확인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의 증여 또는 상속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등록을 하며 증여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자에게 건물소유권증서를 새로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 5 장 건물의 저당

제43조 건물의 저당은 건물을 채무의 담보로 세우는 행위이다.

건물의 소유자는 금융기관에 건물을 저당할수 있다.

제44조 공동소유의 건물을 저당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하여준 건물을 저당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임대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5조 은행대부를 받아 구입한 건물은 대부한 은행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저당할수 있다.

제46조 건물의 저당가격은 저당자와 저당권자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47조 저당한 건물은 덧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저당총액은 건물가격을 넘을수 없다.

제48조 건물을 저당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의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건물저당계약서에는 건물의 명칭, 저당자

의 주소, 건물의 면적, 수량, 저당채무액, 저당기간, 리자, 건물의 가격, 보험관계, 처분방식과 같은 조건을 밝혀야 한다. 건물저당계약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건물의 저당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건물의 저당등록신청서를 건물관리기관을 내야 한다.

건물의 저당등록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건물의 저당계약서, 토지리용권증서, 건물소유권증서, 신청자의 신분확인문건, 저당자의 재정상태검증보고서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저당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건물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물저당계약과 저당권은 건물저당등록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51조 건물저당기간이 끝났거나 건물저당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저당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건물의 저당자는 저당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저당건물의 가치가 떨어져 저당채무를 담보할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떨어진 가치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3조 저당권자는 저당자가 책임질수 없는 원인으로 저당건물의 가치가 떨어졌거나 소멸된 경우 저당자가 받은 보험보상금 또는 손해보상금에서 저당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제54조 저당자는 저당한 건물을 저당권자의 승인밑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 판매, 교환, 증여할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을 넘겨받는 자에게 건물이 저당잡혀있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5조 저당권자는 저당자가 저당기간안에 저당채무를 리행하지 못하였거나 저당자가 사망한 다음 상속자가 없을 경우 저당한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다.

저당건물의 처분절차는 건물의 양도절차와 같다.

제56조 저당건물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은 처분비용의 지출, 세금의 납부, 저당채무,

이밖의 채무순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저당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57조 건물의 저당권은 저당자가 채무를 갚았거나 저당건물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소멸된다.

저당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된 날부터 10일안으로 건물관리기관에 건물저당권의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58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의 양도 및 저당 사업과 관련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9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의 양도 및 저당,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해당한 건물에 나들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60조 건물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건물의 양도 및 저당등록을 미루거나 해주지 않을수 있다.

1. 건물의 양도 및 저당 등록신청문건이 불비할 경우

2. 건물의 양도 및 지당조건이 법규범에 맞지 않을 경우
3. 건물의 양도 및 지당과 관련한 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양도받는자 또는 지당권자의 신용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
4. 건물 양도 또는 지당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평한 경우

제61조 건물관리기관의 승인없이 건물을 판매하였거나 건물의 용도를 변경시켰을 경우에는 건물의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건물 가격의 2~10%, 건물의 이름, 외형을 변경시켰거나 건물을 붓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해당 건물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린다.

건물의 양도, 지당 등록 및 등록취소수속을 정한 기간안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건물값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린다.

제62조 이 규정을 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63조 이 규정을 이기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웃기관에 신소
청원을 할수 있다.

웃기관은 접수한 신소청원을 30일안에 처
리하여야 한다.

제64조 건물의 양도 및 저당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문제
는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1996. 2. 14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가공무역을 발전시켜 생산을 정상화하고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며 외화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가공무역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수입하여 가공, 조립한 다음 그것을 수출하는 무역이나,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넘겨받아 외국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가공, 조립하여주고 가공비를 받는 샅가공,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일부를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가공, 조립하는 위탁가공도 가공무역에 포함된다.

제 3 조 이 규정은 가공무역을 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안의 공장, 기업소에 적용한다.

지대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 외국인투자 기업들사이에도 이 규정에 따라 가공거래를 할수 있다.

제 4 조 가공무역은 세계시장의 수요와 지대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의 가공능력을 잘 타산하여야 한다.

제 5 조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한다.

제 2 장 가공무역대상의 심사승인

제 6 조 가공무역은 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자자동화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건재공업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수 있다.

제 7 조 공장, 기업소에서 가공무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공무역승인신청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가공무역계약은 가공무역을 하려는 지대안의 공장,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가

공자라 한다.)와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주문자라 한다.) 사이에 맺는다.

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소재
지, 품명, 규격, 수량, 포장 및 상표 조건,
검사 기준과 방법, 보장기간 및 제공지점,
가공, 조립 제품의 보증기간, 가공비, 부
대비용과 그 지불방법, 지불기간, 지불화
폐, 결제은행과 돈자리, 위험부담범위와
한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 9 조 가공무역승인신청서에는 신청자명,
가공무역상대편 당사자명, 소재지, 수입하
거나 주문자가 제공할 원료, 반제품, 부분
품명, 가공자가 가공, 조립할 제품명, 수
량, 가공능력, 보장기간, 가공비와 그 지
불방법 같은 내용을 밝히고 가공무역계약
서사본 또는 수출입계약서사본, 경제기술
타산자료, 가공비계산기초자료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경제기술타산자료에는 공장, 기업소
가 현재 가지고있는 로력 및 기술장비의
효과적리용, 기술의 갱신대책, 가공무역제
품의 합리적인 선정, 외화수지한형, 외화

수입과 같은 경제적효과성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지대당국은 가공무역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검토하고 가공무역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가공무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가공무역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2조 가공자는 가공무역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가공무역계약기간과 같다.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거나 가공무역허가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10일안으로 취소등록을 하고 가공무역허가증을 바쳐야 한다.

제 3 장 가공무역계약의 리행

제14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주문자가 가공자에게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가공자가 주문자에게 넘겨주는 가공, 조립 제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

과 계약조건에 맞게 리행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정한 기일과 계약조건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사이에 합의한 다음 지대당국에 알려야 한다.

제15조 계약당사자는 주문자의 계약리행담보를 위하여 선불금을 세울수 있다.

가공자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문자는 선불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할수 있다.

주문자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선불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상회할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은 주문자에게 반환한다.

제16조 보증기간안에 가공, 조립 제품의 질적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공자가 수리해주거나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17조 계약리행기간에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의부의 리행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해당한 사유의 내용과 범위를 즉시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할수 있다.

제18조 계약리행을 리유없이 지연시키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위약금을 물거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위약금의 기준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즉시 늘어나는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늘어나는 손해를 미리 막기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수 없다.

제20조 계약에 정한 가공비, 계약과 관련한 비용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한 리자를 청구할수 있다.

제21조 주문자가 가공, 조립 제품을 넘겨받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넘도록 넘겨받지 않을 경우 가공자는 그것을 판매처분할수 있다.

판매처분하여 얻은 금액은 가공비, 보관관

리미 같은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문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22조 주문자는 가공자가 가공, 조립 제품을 계약조건대로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공, 조립 제품의 접수를 거절할수 있으며 포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포장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생기는 손해와 추가비용은 가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한다.

제23조 가공자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기간안에 주문자가 제공한 원료와 반제품, 부분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과정에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한 기간안에 교환 또는 보충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4조 주문자가 제공한 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줄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공자는 비밀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4 정 가공무역을 위한 경영활동

제25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포장재, 기계설비, 경영

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을수 있다.

제26조 가공무역을 위하여 들어오는 물자에는 관세를 붙이지 않는다.

제27조 가공자는 주문제품의 가공, 조립을 위하여 주문자의 기술적방조를 받을수 있다. 이 경우 가공자는 지대당국의 승인말에 해당 절차에 따라 필요한 외국기업의 기술자를 초빙하거나 자기 기술자, 노동자를 기술전습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할수 있다.

제28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에 필요한 일부 원료, 연료, 반제품, 포장재와 로력, 자금, 동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을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지대당국은 가공자가 낸 소요량을 검토하고 해당 기관과의 연계말에 계획에 맞물려 주어야 한다.

제29조 가공자는 가공, 조립 제품의 지표별 생산 및 보장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질, 납기와 같은 계약조건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30조 가공자는 외국기업과의 관계밑에 사장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가공무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31조 가공자는 주문자와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이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에 제품의 부분 가공을 위탁할수 있다.

제32조 가공자는 원료와 반제품, 부분품의 수송과 제품의 가공, 보관 과정에 대한 위험담보를 세워야 한다.

계약에 따라 가공자가 보험에 들어야 할 경우에는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보험기업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3조 가공자는 주문자의 기술적요구대로 창고시설을 갖추고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가공, 조립 제품의 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34조 가공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외결제를 하는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열고 대외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가공자가 빈 외화는 해당 비규범에 따라 국가에 납부할것은 납부하고 나머지

를 가지고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부분품, 경영용물자, 기계설비의 수입, 무역상담, 기술교류, 연구 및 실습 비용으로 쓸수 있다.

제36조 가공자는 번 외화를 승인된 용도밖의 대상에 유용하여 쓰거나 국외에 예금할수 없다.

제37조 가공자는 가공무역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무역은행 또는 외국투자은행에서 단기 또는 중기 대부를 받아 쓸수 있다.

제38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제품생산에 쓸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가공, 조립제품을 가공무역과 관련이 없는 대상에 돌려쓸수 없다.

제39조 가공자는 주문자로부터 경영용물자, 생산용기계설비, 운수수단 같은 것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지대당국에 알려야 한다.

제40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을 하는 과정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 5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1조 가공무역계약을 리행하지 않아 국가

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가공무역을 중지시키거나 가공무역허가증을 회수할수 있다.

제42조 이 규정을 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000원~1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 규정을 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43조 가공무역계약러행과 관련한 의견상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기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하거나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할수도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및등록규정

1996. 3. 28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인 조각, 등록, 리용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증표이며 공식적인 의사를 인증하는 기본 수단이다.

제 3 조 공인조각을 승인하는 사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하며 공인을 등록하는 사업은 라진-선봉시안전국(이 아래부터는 사회안전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 4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부 공인도 이 규정에 따라 조각, 등록한다.

제 5 조 공인의 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로 정한다.

공인의 직경 또는 길이는 38밀리미터를 초
과할수 없다.

제 6 조 공인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표식에는 인민
들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흐리게 하거나 나
라들사이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
는 내용을 넣을수 없다.

제 7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공인의 둘
레에 조각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표식은 공인의 중심에 조각한다.

제 8 조 공인에 조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조선어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외국어로 된 명칭을 더 포함
시켜 표기할수 있다.

제 9 조 공인에 조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기업등록기관에 등록된 명칭과 같
아야 한다.

제 10 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승인

을 받아야 조각할수 있다.

제11조 공인을 조각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인조각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공인조각신청서에는 해당한 신청내용을 밝히고 공인도안과 도안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대당국은 공인조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은 도장방에서 조각하거나 자체로 조각할수 있다.

공인의 재료는 금속이나 수지, 나무, 고무 같은 것으로 할수 있다.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인을 조각한 날부터 7일안으로 사회안전기관에 공인등록신청서를 내여 등록하여야 한다.

공인등록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공인조각승인서사본, 도장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등록은 공인등록부에 한다.

공인등록부에는 등록번호, 등록기관명, 소재지, 등록날자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공

인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도장표를 붙인다.

제16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책임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쓸수 있다.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입원, 외국출장과 같은 일로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공인을 쓸수 있다.

제17조 공인은 공적인 문건에만 찍는다.

공적인 문건에는 비준문건, 통계문건, 증명문건, 확인문건, 계약문건, 합의문건, 신청문건, 청구문건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인이 찍혀진 문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9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책임자의 위임에 의하여 기요부서(기요일군)가 보관관리하며 기요부서(기요일군)가 없을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자가 직접 보관관리한다.

제20조 공인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려줄수 없다.

제21조 공인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사회안전기관에 알리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판, 봉합도장,

증명도장, 확인도장은 기업책임자의 승인
밑에 조각하고 리용할수 있다.

명판, 봉함도장, 증명도장, 확인도장은 사
회안전기관에 등록하지 않는다.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록을 취소
하였을 경우 기업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5
일안으로 공인을 사회안전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000원~1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제25조 공인 조각 및 등록, 리용과 관련하
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신소와 청원을 접수한 해당 기관은 신소와
청원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개발및 경영규정

1996. 4. 30 정부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절차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공업지구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현대적인 기업체로 이루어진 구역이 포함되며 공업지구개발에는 외국투자가에게 일정한 기간 토지를 개발용지로 임대하여주고 그가 공업지구의 토지정리, 하부구조(상하수도, 난방, 전기, 도로, 통신), 기본건축물(생산건물, 공공건물, 보조건물, 부속건물)을 건설하게 하는 종합개발과 하부구조만을 종합적으로 건설하게 하는 부문개발이 포함된다.

제 3 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그것을 정

영할수 있다.

상업구역, 상업용주택구역, 관광 및 봉사 구역, 비행장, 항만, 고속도로의 건설 및 경영도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제 4 조 이 규정은 지대안의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 기업(이 아래부터는 개발업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5 조 개발업자의 개발 및 경영 활동과 그가 투자한 재산 및 얻은 리윤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개발업자는 공화국의 법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6 조 공업지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지도밑에 자유경제무역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한다.

제 2 장 공업지구개발

제 7 조 공업지구개발에 참가하려는 개발업자는 대상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과 투자합의를 한 다음 지대당

국에 공업지구개발계획을 내야 한다.
공업지구개발계획은 지대와 관련한 국토건설총계획과 산업 및 부문별 건설총계획에 맞게 세워야 한다.

제 8 조 지대당국은 공업지구개발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계획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정, 보충,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제 9 조 공업지구개발계획을 심사승인받은 개발업자는 토지임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지대당국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0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설계안을 만들어 지대건설감독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개발업자가 제기한 공업지구개발설계합의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고 합의해주거나 공업지구개발설계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발업자에게 수정, 보충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11조 공업지구개발은 외국측 투자가가 단독으로 하거나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할수 있다. 이 경우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개발구역안의 농업용토지를 개발용으로 이전하는것과 관련한 비용, 살림집, 공공건물, 기타 부착물을 철거 또는 이설하는것과 관련한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용지를 임차한 날부터 12개월안으로 개발에 착공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업지구개발을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 공화국측 투자가는 토지를 투자몫으로 출자할수 있다.

토지를 투자몫으로 출자하려는 공화국측 투자가는 해당한 법적수속을 거쳐 지대당국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에 여러 외국투자자를 인입할수 있다.

공업지구개발에 인입시킬 외국투자가는 개

우에는 개발업자가 계속 관리운영하거나
개발업자와 지대당국이 공동으로 관리운영
할수 있다.

제23조 개발한 공업지구의 토지, 건물, 기
타 부착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를 통하여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공업
지구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발업자가 단독
으로 하거나 개발업자와 지대당국이 공동
으로 할수 있다.

제24조 개발업자는 개발한 공업지구를 제3
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체로 경영할수 있
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경영방법은 개발업자
가 정한다.

제25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안의 행정관할
권을 가지지 못한다.

공화국의 해당기관은 개발업자가 관리운영
하는 공업지구안에 필요한 행정기관을 설
치할수 있다.

제26조 공업지구안의 체신시설은 지대당국
이 관리운영한다.

하였을 경우 그것을 지대당국에 이관하고
해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7조 지대당국은 공업지구개발계획의 실
현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8조 토지를 임차한 날부터 정한 기일안
에 정당한 리유없이 공업지구개발에 착공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토지임대료의 1%
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며 2년이 지나도 착
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박탈
한다.

제29조 공업지구개발을 지대와 관련한 국토
건설총계획, 산업 및 부문별 건설총계획,
공업지구개발계획과 어긋나게 하는 경우에
는 정도에 따라 그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몰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1만~
5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제30조 개발업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
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신고와 청원을 하거나 소송을 제
기할수 있다.

제31조 공업지구개발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를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를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문제
는 공화국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제3국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1996. 4. 30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광고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광고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고 광고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광고에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개광고, 안내광고, 주문광고, 알림광고, 모집광고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 3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있는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광고주라 한다.)는 지대에서 광고활동을 할수 있다.

제 4 조 광고는 광고주가 직접 할수 있으며 광고기업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광고기업(이 아래부터는 광고업자라 한다.)에는 광고판, 광고탑, 전기광고물, 전자광

고판, 봉사간판과 같은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출판물이나 방송보도수단에 의한 광고업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제 5 조 광고와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한다.

제 6 조 광고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지대당국에 광고기업창설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판물이나 방송보도수단에 의한 광고업은 기업을 따로 창설하지 않고 출판보도기관이 겸하여 한다.

제 7 조 광고의 내용은 건전하고 진실하며 찬절한것이여야 한다.

제 8 조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광고, 퇴폐적인 광고, 허황한 광고,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는 광고, 남의 기업이나 상품을 헐뜯는것과 같은 광고는 할수 없다.

제 9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력사유적 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같은곳에는 광고물의 설치 또는 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0조 광고주는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 지대당국에 광고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신청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또는 출판보도기관명, 광고명, 광고 및 광고물의 형식, 규격, 수량과 광고물의 설치 또는 제시 장소, 광고물보존기간, 광고를 낼 출판물명, 출판부수 및 광고내용에 대한 보도 날짜, 시간, 회수와 같은 내용들을 밝히고 광고물이 설치 또는 제시 장소와 관련한 합의문건, 이밖에 필요한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대당국은 광고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검토확인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 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광고주와

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관 사이에 광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

광고계약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또는 출판보도기관명, 광고명, 광고 및 광고물의 형식, 규격, 수량과 광고물의 설치 또는 제시 장소,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또는 제시 기간, 광고내용에 대한 보도 날짜, 시간, 회수와 광고를 낼 출판물명,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광고승인과 관련한 문건,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설계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광고주는 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광고를 하였을 경우 광고비를 지불하며, 건물, 시설물, 부지에 광고물을 설치 또는 제시하였을 경우 그 관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광고비와 사용료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광고물은 문화적이어야 하며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제작,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대당국은 광고물이 파손되어 도시미화에 손상을 주는 경우 광고주에게 그것을 고치도록 요구할수 있다.

제15조 광고물은 지대당국의 허가없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전에 해체 또는 이설할수 없으며 그 내용을 고칠수 없다.

제16조 광고주는 광고물의 보존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 광고물을 철수하고 그 장소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광고물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끝나기 7일전에 지대당국에 광고물보존기간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광고물의 제작, 설치를 수정 또는 중지시키거나 5,000원~1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19조 광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신고와 청원을 할수 있다. 신고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와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 또는 중재 기관에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1993. 12. 30 정무원 결정 제80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의 로동생활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 운영에 필요한 로력의 알선과 채용, 로동보수의 지불, 로동생활 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로동과 관련한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로동법규에 준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우리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을 관리인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고 할

정우에는 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이 받아들인 로력은 자연재해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하지 않는다.

제 6 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로동보수액은 그의 로동직종과 기술기능수준, 로동생산성에 따라 정한다. 로동보수에는 로임·가급급·장려급·상급이 속한다.

제 7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데 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 8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공민인 종업원들이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로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로동계약에는 종업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

과 질지표, 로동시간과 휴식, 로동보수와 보험후생, 로동보호와 로동조건, 로동규율, 상벌, 사직 조항 같은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로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로동계약 문건을 기업소재지 로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이 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동행정기관이 한다.

제 2 장 로력의 채용·해고

제11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로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로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업종별·기능별 로력수·채용기간, 로력비, 로동생활보장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로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로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로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 로력알선기관은 해당 기능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3조 우리나라 기업소를 모체로 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로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로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로력을 받아야 한다. 로력채용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로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로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업동맹조직,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

1.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광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3.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로

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4.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로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

제16조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직을 제기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2.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1.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은 경우
2.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여성 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

제18조 외국투자기업은 이 규정 제15조 1, 2, 3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제16조

2, 3에 따라 사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일한 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일한 연한이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분의 보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며 1년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월 로임의과 일한 해수에 따라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시키려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기업소재지 로력알선기관에 명단을 내야 한다.

제 3장 기능공의 양성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그들에게 기술기능습수를 사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기능공양성을 위한 양성소 또는 양성반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남국은 외국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기술

인재 양성은 종업원재직일군 양성, 학교졸업생들의 취업전 양성의 형태로 한다.

제 4 장 로동시간과 휴식

제23조 종업원들의 로동일수는 주 6일, 로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로동시간을 아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분에서는 연간 로동시간 범위에서는 로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로동을 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고 시간외 로동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의 법에 따라 해당한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 휴가와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 안으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해마다 해당한

종업원에게 관혼상제를 위한 1~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왕복 여행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 5 장 로동보수

제26조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월 로임기준은 2백 20원(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1백 6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의 로임기준은 높이 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정한 로임기준에 따라 직종, 직제별 로임기준, 로임지불 형태와 방법, 가급급, 장려급, 상급기준을 자체로 정한다.

제27조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 숙련정도와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 따라 로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은 휴가 및 보충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로동보수를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로동보수는 휴가받기전 3개월 동안의 로동보수 총액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로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휴가기간의 로동보수액 계산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된다.

제29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제30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로동시간의 연장작업, 밤일을 한 종업원에게 로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밤일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사이에 일한 것이 포함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명절날과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로동시간의 연장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로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1백%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상급기금을 세우고 작업동맹 조직과 협의하여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모범적인 종업원에게 상급을 줄 수 있다.

제33조 외국투자기업은 로임, 가급금, 장려금을 주는 날자를 정하고 달마다 그 날에 내주어야 한다. 상급은 평가기간 다음 날에 주어야 한다. 로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전에 사직하였거나 퇴직, 해고시킨 경우에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 6 장 로동보호

제34조 외국투자기업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고 그를 개선 완비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고열, 가스, 먼지를 막고 채광, 조명, 통풍과 같은 산업위생 조건을 보장하여 종업원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안전기술교육을 준 다음에 일을 시켜야 한다.

로동안전기술교육 기간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1~2주일로 한다.

제36조 외국투자기업은 여성 종업원들을 위한 로동보호 위생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임신 6개월이 넘는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탁아소, 유치원을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내주는 로동보호물자의 기준은 공화국의 해당 로동법규에 준하여 외국투자기업이 정한다.

제38조 외국투자기업은 작업도중 종업원이 사망되었거나 부상, 중독과 같은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로동보호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관계기관의 사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회보험·사회보장

제39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 공

민인 종업원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에는 보조금·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속한다.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보조금과 연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투자기업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보조금 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해당 사회보험보조금을 받아 모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정휴양소에 가고 오는데 드는 여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 문건에 의하여 먼저 내주고 후에 청산받아야 한다. 사회보장에 의한 연금·보조금은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어 수속한데 따라 사회보장연금지불기관에서 달마다 정한 날에 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0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연금은 공화국의 노동법규에 따라 계산

한다.

제41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보험기금은 종업원에게서 받아들이는 사회보험료로 적립된다.

제42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양소, 휴양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정양소, 휴양소의 운영비는 사회보험기금에서 낸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를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는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세우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들이 문화기술수준의 향상과 균중문화체육사업, 후생시설 운영 같은 데 쓴다. 문화후생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직업동맹조직이 한다.

제 8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5조 로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이 규정을 이기고 우리나라 로비를 채용 또는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46조 로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로동안전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기간을 정해주어 시정하도록 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47조 벌금적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적용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돌려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 벌금을 돌려줄 것을 제기받은 상급기관은 그것을 제기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 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

1995. 12. 4일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화폐자금 조성, 분배, 리용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 절차와 방법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부기계산은 경영활동과정에 재정상태의 변동과 경영활동의 결과를 화폐적으로 계산하고 기록하며 정리하는 경영계산이다.

제 3 조 부기계산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 4 조 부기문건의 글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부기문건의 글을 외국어로 표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이 있어야 한다.

부기문건에는 부기계산장부와 부기결산서, 전표가 포함된다.

제 5 조 부기계산은 부기계산장부와 전표에

하여야 한다.

부기계산장부와 전표의 양식은 중앙재정기관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제 6 조 부기계산은 복식기입으로 한다.

복식기입은 경영거래를 부기계산자리에 올릴 때 두개의 계산자리에 서로 맞세워 다 같이 올리는 방법이다.

제 7 조 부기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화로 장영계산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교환 및 결제 시세에 따라 계산된 조선원을 곱쓰기 하여야 한다.

제 8 조 부기문건은 부기계산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게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부기문건은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20년, 영구 보존한다.

제 10 조 이 규정은 공화국령역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포함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기업에도 이 규

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은 기업의 재정부기부서가 맡아하며 그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다.

제 2 장 부기계산원칙과 부기계산자리 및 부기계산방법

제12조 부기계산원칙과 부기계산자리 및 부기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는것은 경영계산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부기계산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부기계산자리를 옳게 정하며 부기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결과를 사실대로 진실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2. 부기계산 수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3. 재정상태와 관련한 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별하고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4. 부기계산년도안에서 부기계산방법을 번
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부기계산자리는 재산, 채무, 자본의
증감과 수입, 지출을 계산하는 수단이다.

제15조 부기계산자리의 순위설정과 계산자
리번호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부기계산자리에는 재정상태표계산자리(재
산계산자리, 채무계산자리, 자본계산자리)
와 손익계산표계산자리(수입계산자리, 지
출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재산, 채무, 자본 계산자리는 재정상태표
에 반영하며 수입, 지출 계산자리는 손익
계산표에 반영한다.

제16조 부기계산자리의 기입은 계산자리의
항목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계산자리의 기입은 재산의 증가와
잔고를 차방에, 재산의 감소를 대방에
한다.
2. 채무 및 자본 계산자리의 기입은 채무
및 자본의 증가와 잔고를 대방에, 채무
및 자본의 감소를 차방에 한다.

3. 수입계산자리의 기입은 수입의 증가와 잔고를 년도초로부터 결산기말까지 루계액으로 대방에 한다.
4. 지출계산자리의 기입은 지출의 증가와 잔고를 년도초로부터 결산기말까지의 루계액으로 차방에 한다.

제17조 재산의 계산은 류동재산, 고정재산, 투자재산, 연상재산으로 갈라한다.

류동재산에는 구입 및 저장, 생산 및 판매, 결제 단계에 있는 재산이 포함되며 고정재산에는 유형의 고정재산과 무형의 고정재산이 포함된다.

투자재산에는 1년안에 회수할수 없는 유가증권, 채권, 전불비용 같은것이 포함되며 연상재산에는 창설비, 조업비, 사채발행비, 개발비, 시험 및 연구비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18조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의 계산방법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하며 감가상각금은 달마다 계산하여 원가 또는 류통비에 넣는다.

제19조 재산의 구입가격은 취득가격 또는

취득가격에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류동재산가운데서 물자재산가격은 취득가
격으로만 계산하며 물자구입경비는 따로
계산한다.

고정재산가격은 취득가격에 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20조 류동재산가운데서 물자재산의 소비
가격은 취득가격 또는 평균가격으로 한다.

제21조 채무의 계산은 1년까지의 단기채무
와 1년이 넘는 장기채무로 갈라한다.

단기채무에는 단기대부금, 단기수형채무,
구입채무, 내줄 로임, 납부할 세금, 납부
할 사회보험료, 전수금, 재산보험보상금,
기타 채무 같은것이 포함되며 장기채무에
는 장기대부금, 사채, 장기수형채무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22조 자본의 계산은 자본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자본금은 현물재산, 화폐재산을 투
자할 때마다 계산한다.
2. 현물재산의 투자가치는 해당 시기 국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합병기업의 예비기금은 등록자본금의 일정한 몫이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일정한 비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4. 기업의 기금은 합병기업인 경우 리사회가 결정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합작기업인 경우 공동협의회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다.
5. 당해년도 리윤은 류동고일람표의 재산총액에서 채무 및 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6. 처리하지 못한 리윤은 당해년도 리윤에서 분배처분된 리윤을 공제한 나머지 리윤으로 계산한다.

제23조 수입의 계산은 제품판매수입과 건설물 인도수입, 기타 수입으로 갈라 한다. 수입은 제품판매금액이 입금되었거나 받아야 할 금액이 포함된다.

제24조 제품판매수입은 판매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주문판매인 경우에는 제품을 주문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출하한것만 판매수

입으로 계산한다.

2. 위탁판매인 경우에는 제품을 위탁받은 자가 판매실현한것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3. 견본판매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데 따라 출하한것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4. 예약판매인 경우에는 받은 예약금가운데서 예약상품을 인도한것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5. 할부판매인 경우에는 자금회수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이 되었을 때에만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

제25조 제품판매수입은 제품별 판매량에 제품별 실지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할부판매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26조 건설불인도수입은 공사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건설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완공된 건설불을 당사자에게 인도한것만 건설수입으로 한다.

2.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의 진행정도에 따라 건설수입으로 한다.

제27조 기타 수입은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
이 이루어지는 수입으로 계산한다.

제28조 지출의 계산은 판매원가, 건설원가,
기타 지출로 갈라 한다.

판매원가는 기초원가와 생산원가(실적원
가)를 합하고 기말원가를 공제하는 방법으
로 계산하며 건설원가는 건설공사완공원가
또는 건설공사진행원가로 계산한다.

원가항목과 항목별 비용지출계산방법은 중
양재정기관이 정한다.

기타 지출은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이루
어지는 지출을 계산한다.

제 3 장 부기결산

제29조 부기결산은 결산기간의 재정상태와
경영활동의 재정적결과를 확정하는 종합적
인 재정총화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기간의 경영활동과
재정상태를 분석총화하고 기업의 재정관리
를 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0조 부기결산은 월, 분기, 년도별로 하여야 한다.

월부기결산을 할 경우에는 종합계산자리부동고일람표를, 분기 및 년도 부기결산을 할 경우에는 부기결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31조 부기결산서는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본표로 만들며 그를 분석하는 부표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재산면과 채무 및 자본 면으로 갈라 종합하고 대조하는 균형표이다.

손익계산표는 기업의 일정한 기간 경영활동결과를 수입과 지출 항목별로 갈라 종합하고 대조하여 손익을 확정하는 표이다.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를 분석하는 부표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데 따라 만들어야 한다.

제32조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는 종합계산자리원장의 부기계산자리잔고를 그대로 올리는 방법과 가감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작성한다.

제33조 결산리윤은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

표에 각각 계산하며 그 리운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34조 부기결산서는 기업책임자와 재정부기책임자가 련명수표하여 부기검증사무소의 부기검증을 받은 다음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부기결산서는 정한기간(분기부기결산서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연간부기결산서는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 안에 해당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제 4 장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

제36조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부기계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7조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부기계산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3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5,000원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외국인투자기업명칭제정규정

1996. 2. 14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제정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에는 공화국
령역안에 창설되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명칭이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 대리점 (이 아래부터는 지사, 상주
대표 사무소라 한다.)의 명칭도 이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3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제정과 관련
한 사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통일적
인 장악과 지도밑에 해당 도행정경제위원
회,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시행정경제
위원회 (이 아래부터는 기업등록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기업등록기관은 외국인투
자기업명칭의 심사 및 등록과 기업명칭리
용의 감독, 기업명칭전용권의 보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제 4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하나의 명칭만을
가질수 있다.

하나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두가지이상의 서
로 다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
록기관의 승인을 받아 두개의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두개의 기업으로는 되지 않는다.

제 5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자의 이름이나 지명 같은것으로 된
상호
2. 영업의 중심내용
3. 기업의 형태
4. 채무에 대한 기업의 책임한계

제 6 조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은 지
사,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는 기업의 명
칭을 앞에 붙이고 그 뒤에 자기 상호를 붙
여 정한다.

제 7 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
무소의 명칭은 조선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을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조선

이로 된 명칭과 같아야 한다.

제 8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명칭을 가질수 없다.

1. 국가 및 사회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흐리게 할수 있는 명칭
2. 다른 기업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돈될수 있는 명칭
3. 수자로 된 명칭
4. 대중을 기만하거나 대중에게 이해를 잘 못 줄수 있는 명칭
5. 다른 나라 이름이나 다른 나라 지역의 이름으로 된 명칭
6. 정치 및 군사 기관이나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된 명칭
7. 취소등록을 한지 1년이 못되는 기업의 명칭

제 9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에 《조선》이라는 글자 또는 두 나라이름의 첫 글자를 붙이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인투자기업,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화국령역안에서 전용권을 가진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도장, 은행돈자리, 간판, 우편물 같은데 사용하는 명칭은 등록된 명칭과 같아야 한다.

상점, 식당과 같은 봉사기관의 간판에는 명칭을 간략할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때로부터 1년안에는 변경시킬수 없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명칭을 기업의 재산과 함께 다른 기업에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명칭은 하나의 기업에만 양도할수 있으며 기업의 명칭을 양도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양도한 명칭을 쓸수 없다.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명칭에 대한 전용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기업등록기관에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15조 이 규정을 이기고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명칭, 다른 기업의 명칭으로 기업활동을 하거나 승인없이 기업의 명칭을 변경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법소득의 몰수, 벌금, 영입중지, 기업등록중회수와 같은 처벌을 적용하며 이진 행위가 업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제정과 관련한 사업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의 웃기관에 신고와 청원을 할수 있다. 신고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규정

1996. 2. 14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질서를 세우고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등록이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 대리점(이 아래부터는 지사,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도 이 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제 3 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등록(이 아래부터는 기업등록이라 한다.)은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기업등록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제 4 조 기업등록기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 기업,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합법적인 활동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기업등록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금지한다.

제 5 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무소는 기업등록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6 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등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제 7 조 이 규정은 기업등록기관과 기업을 등록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에 적용한다.

제 8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지사, 상주대표사무소는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기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은 공화국의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할수 있다.

제 9 조 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

업등록신청서를 내어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기업창설승인서 또는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 기업의 기본규약, 투자확인서 또는 투자담보증(지사, 상주대표사무소는 경영활동과정에 진 채무에 대하여 본사가 책임진다는 담보증), 건물입사증, 도장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신청서를 검토 확인하고 기업을 등록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을 결정한 날이 기업등록일로 된다.

제11조 기업등록은 기업등록부에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부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기업의 책임자, 기업의 형태, 투자가, 등록 자본, 경영활동 내용과 범위, 존속기간, 지사의 기구정원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

터 7일안으로 기업등록증 또는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기업등록증,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에는 등록일자, 등록번호, 기업 또는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인원수, 소재지, 영업내용, 존속기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기업등록증은 공화국의 법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법적증서이다.

기업등록증,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의 내용은 바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14조 기업등록증,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안으로 기업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며 기업등록증,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을 잃어버린 날부터 30일안으로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등록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기업등록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등록내용이 변경되었거나 기위

을 해산하는 경우와 지사, 상주대표사무소를 철수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취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내용의 준수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기업등록기관이 한다.

제18조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벌금, 비법소득의 몰수, 영업중지, 기업등록중의 회수와 같은 처벌을 주며 어긴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1. 정한 기간안에 기업 및 지사,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2. 등록된 경영활동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 경영활동을 하는 행위
3. 기업등록중,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을 위조하는 행위
4. 재산과 자금을 도피시키거나 이전시키는 행위

5. 채무상환을 제때에 하지 않는 행위
6. 기발, 표식, 회장을 승인없이 사용하는 행위

제19조 기업등록을 정한 기간안에 해주지 않거나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20조 기업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의 웃기관에 산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산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보호법

1986. 4. 9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 채택

제 1 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 1 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2 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인다.

제 3 조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

게 나라의 환경을 꾸리기 위하여 환경보호 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며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 4 조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은 공해를 미리 막으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게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을 진행하도록 저도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불결기술적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 5 조 환경을 보호관리하는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 6 조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 과학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 7 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제 8 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9 조 이 법은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제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절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에 따른다.

제 2 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10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지어주며 후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요구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둔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12조 국토관리기관과 자연보호과학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며 필요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안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태로 보존하고 철저히 보호

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주변, 호수가와 강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때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16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르는 날짐승과 길짐승은 잡을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만 있거나 리로운 야생동물과 수중생물

은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없이 작거나 뜯을수 없다.

모든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못쓰게 만들거나 희귀한 식물을 바꾸 캐어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도시관리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건물 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동이용장소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 복지면적을 늘여야 한다.

도시안과 그 주변에는 환경조성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심을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정상적으로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을 계기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와 마을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짓는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환경을 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환경오염방지

제19조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국가의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20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스, 먼지잡이장치와 건물과 시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가시기 위한 공기려과장치를 갖추며 로와 탱크, 배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해당 공장, 기업소와 주민구역사이에 위생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스, 연기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료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

지를 일으킬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불전기
제는 운행할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
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가동할수 없다.

사회안전기관과 통운감독기관, 지방정권기
관은 주요거리와 필요한 지역에 현대적인
배기가스측정수단을 갖추고 불전기제의 가
스, 연기 배출상태를 검증하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배출되
는 가스, 먼지, 연기가 특수한 기상조건
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켜 사람 또는
짐승에게 해를 줄수 있을 때에는 그 배출
량을 줄이기 불전기제의 운행을 조절하거
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기상현상을 해당 기관
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나무
앞과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 도로주
변에서 불태우지 말고 정해진곳에 모아 처
리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환경을 보호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물을 제때에 실어
내야 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오염을 막
기 위한 침전지와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
오수와 여러가지 버릴물을 정화하며 그것
을 회수,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
다.

제25조 도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
하며 먹는물을 잘 려과소독하여 공급하여
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지을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
을 칠수 없다.

제26조 모든 배들은 공화국령해, 경제수역
과 항만, 포구, 갑문, 강하천, 호수, 저수
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있을 때 기름
과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

공사를 할 때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배운영기관은 배에다 분수액 따르는 오염방지설비 또는 오수, 오물 저장용기를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환경보호시설을 갖춘 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오수와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의 오수와 오물을 실이 내며 바다불과 강물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제29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와 여러가지 버릴물의 침전지, 정화장과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 강하천, 호수, 저수지와 먹은불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곳에 정하여야 한다.

박토장, 버리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 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나 리용한 뒤에는 흙을 덮고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국가적으로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수 없다.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한다.

제31조 농업지도기관과 농약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농약이 공기중에 날리거나 강하천, 호수, 저수지, 바다에 흘러들지 않게 하며 땅속에 농약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 때에는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성 기체, 먼지, 버릴물, 폐설물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려과시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 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주위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

하여 오염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33조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관리, 사용 및 폐기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선감독기관 또는 사회안전기관의 방사성 물질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오염된 물고기, 과일을 비롯한 식품과 집짐승먹이는 수입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식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주는 설비와 기술은 수입하거나 생산에 도입할수 없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며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수 없다.

제37조 지방정권기관과 국토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밖으로 내가며 화물수송 도로와 철길은 주민구역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어야 한다.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은 생활환경이 좋은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수 없으며 공해막이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수 없다.

제 4 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제38조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환경보호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과 감독사업을

강화한다.

제39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정부원이 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하여 정부원에 비상실환경보호위원회를 둔다.

제40조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사업은 국토관리기관과 부문별 환경보호감독기관들인 위생방역기관, 방사선감독기관 및 해당 권한 있는 기관이 한다.

제4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및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감독기관과 환경보호측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제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해당 중앙기관과 국토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은 환경의 손상과 오염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년차별계획을 세워

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3조 국토계획기관과 해당 설계심사기관은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기상수문조건과 지형조건, 해양조건 같은것을 따져보고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정하며 보건기관, 기상수문기관 및 해당 전문기관과 합의한 기술과제와 설계에 대해서만 심사비준하여야 한다.

제44조 준공검사기관과 준공검사에 참가하는 기관은 공해막이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본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정무원은 국가적인 공해감시체계를 세우고 공해감시 측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환경변화상태에 대한 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생활오수와 여러가지 버릴물, 공업폐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6조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발전시켜야 한다.

제 5 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제47조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국민의 재산에 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8조 환경보호질서위반으로 손해를 본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은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49조 환경보호질서를 이겨 국토와 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환경보호감독기관이 해당한 손실을 보상시킨다.

제50조 항감독기관과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다른 나라의 배 또는 사람이 우리 나라의 영토와 경제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켰을 때에는 해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하며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51조 환경보호감독기관은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진행하는 대상건설, 공장의 운영과
륜전기재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건
물, 시설물을 철수시킬수 있으며 위법행위
를 하는데 쓴 물자, 생산품을 회수한다.
손상, 파괴, 오염된 환경은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

제52조 나라의 환경을 심히 손상, 파괴, 오
염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
소, 단체의 일군과 책임있는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민사소송법

1994. 5. 2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옹기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 3 조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제 4 조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 5 조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사이에 제기되는 민사상 권리, 이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한다.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 2 장 일 반 규 정

제 7 조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
제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 8 조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
사자나 이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
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제 9 조 민사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
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통역인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해석인을 부
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
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 10 조 민사사건의 재판심리는 공개한다.
국가 또는 국민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
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재판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
고는 공개한다.

제11조 소송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제12조 재판소는 민사재판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민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수 없다.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수 없다.

제14조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5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6조 소송당사자는 이 법 제13~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소에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수 있다.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를 시작한 다음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신청할수 있다.

제17조 재판소는 이 법 제13~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 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꾼다.
2.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18조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사건은 2개월, 제2심과 비상상소심, 재심, 판사회의 사건은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송기간은 년, 월, 일로 정하며 그

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소송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날의 24시까지로 하며 월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소송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날, 그런 날이 없을 때에는 그날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끝나는것으로 본다. 소송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명절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요동일이 지나면 끝난다.

제20조 소송장, 상소장을 비롯한 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안에 낸것으로 인정한다.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가 그 기간을 늘어 줄수 있다.

제21조 소송비용에는 국가수수료와 사건수속비용이 속한다.

제22조 재판준비 또는 재판심리에서는 조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든다.

제 3장 소 송 당 사 자

제23조 소송당사자로는 독립적인 정비예산

이나 독립채산체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될수 있다. 소송당사자로 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송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송당사자는 재판심리에 참가하여 자기의 주장을 설명할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을 하거나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할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고 그것을 조사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증거조사에 참가할수 있다.

제25조 원고는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범위를 변경할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서로 화해할수 있다.

제26조 소송당사자는 소송이 제기된 다음 거주지(소재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제27조 재판소는 원고로 될수 없는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있는 소송당사자로 바

할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격있는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인입할수 있다.

제28조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할수 있다. 공동 원고나 피고는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 원고나 피고에게 맡길수 있다.

제29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는 그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이 법 제6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참가할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데 참가할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포기, 승인, 변경하거나 소송 당사자와 화해할수 없으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

을 제기할수 없다.

제31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하여 제3자에 넘어갔거나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상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소송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은 소송행위를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다. 미성인과 행위능력이 없는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33조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재판정에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한 재판심리조서는 위임장을 대신한다.

제34조 소송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청구를 포기, 승인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하며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을데 대한 소송행위를 맡기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임장에

밝히야 한다.

제35조 소송대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행위능력이 없는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될수 없다.

제 4 장 증 거

제36조 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감정결과, 검증결과 같은것이 될수 있다. 재판소는 민사사건의 취급처리를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제37조 소송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며 그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재판소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다른 증거를 더 내게 할수 있다.

제38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제39조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전까지 내야 한다.

제40조 소송당사자가 내놓았거나 재판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사실심리에서 객관적으로 검토 확인되어야 판단과 해결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

제41조 재판소는 관할지역밖에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것을 해당 재판소에 의뢰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의뢰서에 지적된 기간안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보내야 한다.

제42조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의있는 사실을 알고있는자가 될수 있다.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해당 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제43조 증인은 알고있는 사실을 직접 써낼수 있으며 진술내용이 잘못기록된 경우 그에 대하여 고쳐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4조 증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여야 한다.

제45조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소환장에 지적된 곳으로 제때에 와야 한다.

제4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판

소에서 요구하는 증거문서나 증거물을 제 때에 내야 한다. 증거문서원본을 낼수 없을 경우에는 사본을 낼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밝히는데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으로 감정을 맡길수 있다. 감정을 맡기는 판정서에는 감정할 대상과 내용, 기간을 밝히며 감정 기관 또는 감정인과 그의 의무를 지적한다.

제48조 감정은 전문감정기관에 맡긴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국가적자격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자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49조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כל 재판소에 요구할수 있으며 다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판사의 승인밑에 감정인은 소송당사자와 증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볼수 있으며 현장검증에 참가할수 있다.

제50조 감정인은 맡은 감정을 정확히 하고 감정서를 재판소에 내며 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1조 재판소는 감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정으로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52조 소송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전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같은것을 증거로 보존하여줄것을 재판소에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조서를 만든다.

제 5 장 재 판 관 할

제53조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분쟁사건
2. 리혼사건
3.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사건
4. 민사상 권리와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사건

5. 이밖에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사건

제54조 민사사건의 재판은 인민재판소에서 한다. 그러나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제55조 민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거주지가 서로 다른 여러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재판은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56조 다음과 같은 사건의 재판은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개별적공민을 상대로 하는 재산청구사건
2.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사건
3.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협을 준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4. 1살이 되지 못한 어린이를 가졌거나 여

러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가 제기하는 사건

5. 교화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6.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제57조 법인과 그 산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법률행위지 또는 계약리행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58조 부동산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은 그 재산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59조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짐수송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은 짐이 닿아야 할곳이나 짐이 닿은곳 또는 짐을 부친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60조 소송당사자가 맞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3자가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이미 심리를 시작한 재판소에서 한다.

제61조 재판소는 이 법 제55~59조를 어기고 제기한 사건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재판 심리를 시작하였거나 다른 재판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다른 재판소에 넘길 수 없다.

제62조 인민재판소는 자기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다른 재판소에 보내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도(직할시)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사건을 다른 도(직할시)안의 재판소에 보내려는 경우에는 중앙재판소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소송의 제기

제6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사상 권리, 이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와 사회, 공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4조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재판소에 소송장을 내야 한다.

제65조 소송은 당사자가 낸 소송장을 재판소가 접수한 날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소송장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낸 날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인정한다. 소송장 이외의 소송문건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낸 경우에도 소송장을 보냈을 때와 같이 인정한다.

제66조 소송장에는 재판소의 명칭, 소송당사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장직위, 주소,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해당 증거를 써넣는다.

제67조 소송장에는 다음과 같은것을 붙인다.

1. 피고의 수에 해당하는 소송장의 사본
2.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공증기관의 인증문건
3. 재산을 갈라줄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
4.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5.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
6. 국가수수료납부증

제68조 다음과 같은 사건은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1.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사건

2.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3.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보상청구사건
4. 검사가 제기하는 사건

제69조 피고는 제기된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맞소송은 재판심리를 시작하기전까지 이 법 제64조, 제66~67조의 절차에 따라 제기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맞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70조 재판소는 원고가 낸 소송장을 검토하고 이 법 제66~67조에 규정된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어 불비한 점을 고치게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불비한 점을 고친 경우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처음 받은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송장의 불비한 점을 정해진 기간안에 고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장을 돌려보낸다.

제71조 재판소는 제기된 소송의 내용에 이 법 제86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거부한다.

제72조 소송당사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접수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거부한데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5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73조 재판소는 자기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합치거나 갈라 재판할수 있다.

제 7 장 재 판 준 비

제74조 민사사건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준비를 한다.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제75조 판사는 원고가 낸 소송장의 사본을 5일안으로 피고에게 보내주며 그에게 소송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답변서를 내게 한다. 답변서는 받은날부터 5일안으로 그 사본을 원고에게 보낸다.

제76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의 취급처리와 관련한 수속상 문제를 해결한다.

제77조 판사는 재판준비를 위하여 소송당사자를 만날수 있다.

제78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감정을 맡기며 현지조사를 할수 있다. 그러나 증인을 맞대어놓고 사실사정을 확증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79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장검증을 할수 있다. 현장검증에는 소송당사자와 소송관계자를 참가시킬수 있으며 2명의 랍회인을 세운다.

제80조 판사는 증거물을 수집하였거나 현장검증을 하였을 경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검증한 차례로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 록화테이프 같은것을 첨부할수 있다.

제81조 판사는 사건을 받은 때부터 판결을 내릴 때까지의 어느 단계에서나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기의 결심에 따라 판정으로 피고의 재산을 담보처분할수 있다. 담보처분은 해당 재산이 없이는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재산을 담보처분할데 대한 판정의 집

행은 해당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제82조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것을 판정으로 해제 또는 취소 한다.

제83조 판사는 재판준비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제기되면 판정으로 재판준비를 중지한다.

1.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소송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적절차에 따라 취급되고있는 사건이 처리되기전에는 해당 사건을 해결할수 없는 경우
4. 소송행위를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4조 재판소는 이 법 제83조 제1~2호의 경우에 재판준비를 중지한 때부터, 제3~4호의 경우에 재판준비를 중지한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3개월안으로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재판준비를 계속할데 대한 판정을 하고 그 준비를 계속한다.

운 증거를 수집하는것같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판정으로 재판 심리를 비룬다.

제103조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원고에게 주장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하게 한다.

제104조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묻고 사실 심리순서를 정한다.

제105조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리는 재판장, 인민참심원, 검사의 차례로 하며 그것이 끝나면 소송당사자에게 서로 질문하게 한다. 감정인은 재판장의 승인밑에 소송당사자에게 질문할수 있다.

제106조 증인에 대한 심리는 순서에 따라 1명씩 재판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불립없는가, 소송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말하게 한다.

제107조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하여줄것을 요구한 소송당사자

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며 그 다음 상대방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한다. 다른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질문할수 있다. 재판소는 이미 심리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리하거나 증인을 맞대어 놓고 심리할수 있다.

제108조 재판소는 미성인을 증인으로 심리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 또는 교원 그밖의 보호자를 략회시켜야 한다.

제109조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 참가한 증인을 심리하고 다음번 재판심리에 부르지 않을수 있다.

제110조 증인은 재판심리가 끝나기전에 정해진 장소를 떠날수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소송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심리한 증인을 재판심리가 끝나기전에도 보낼수 있다.

제111조 재판소는 이 법 제41조, 제52조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증인을 심리한 경우 사실심리에서 그 조서를 읽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12조 재판소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

우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묻고 증인에 대한 심리를 그만둘수 있다.

제113조 감정인에 대한 심리는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 다음 물이보는 방법으로 한다.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인에게 물이볼수 있다.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정서를 읽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4조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감정을 할 필요가 제기되거나 이미 한 감정을 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판심리를 머루고 판정으로 감정을 맡긴다.

제115조 증거물과 증거문서에 대한 심리는 그것을 재판정에 내놓고 해당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6조 재판장은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의 위임에 의하여 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만들며 그것은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

제117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

83조, 제85~86조에 지적된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심리하고 해당 판정을 한다.

제118조 재판소는 리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제, 상대방당사자의 부양문제 또는 재산을 가르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제119조 재판소는 소송비용과 그 부담문제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120조 재판장은 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에게 더 보충하여 물어보게 한다.

제121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소송당사자, 인민참심원, 검사에게 사실심리를 끝마치는데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인민참심원들과 합의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린다.

제122조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난다음 소송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검사에게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게 한다. 소송당사자가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실

심리를 다시 한다.

제123조 재판장은 재판심리가 끝나면 그에 대하여 소송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판결을 채택하기 위하여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로 간다.

제124조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날부터 3일 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심리조서를 만든다.

1.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명칭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징형
5.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7. 소송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소송당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10. 검사의 의견

제125조 소송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심리조서 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서를 볼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에 고철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은 경우에는 판정으로 재판심리조서를 고치게 하며 부당한 경우에는 이유를 붙인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 9 장 판결, 판정

제126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공화국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채택한다. 판결의 채택에는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127조 재판소는 판결을 채택할 경우에 다음의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1. 원고의 청구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2. 피고의 답변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3. 어느 법규범을 적용하며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4.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처리
를 어떻게 할 것인가

5.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가

제128조 판결의 채택은 재판소성원들이 다
수가결의 방법으로 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만참심원은 의
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제129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다.

1. 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2. 청구를 거부하는 판결

제130조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증거문서,
증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주지 말아
야 할 것을 기록에 붙이거나 몰수하고 그
밖의 것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증
거물을 임자에게 돌려줄 경우에는 근거문
건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131조 재판소는 소송비용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승인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거부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부담시킨다.
2. 이 법 제68조에 규정된 사건의 청구가 승인된 경우에는 국가수수료를 피고에게 물릴수 있다.

제132조 판결은 재판심리가 끝나는 날에 내린다.

제133조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다.

1.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명칭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과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4.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5. 원고의 청구사실과 피고의 답변
6. 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증거
7. 판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8. 청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
9.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정형
10. 소송비용의 부담

11. 판결, 판정의 집행방법과 상소, 항의
절차

제134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5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위법행위
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해당한 제재를 가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정
으로 해결한다.

1. 사건을 이송하거나 소송당사자를 바꾸
는 경우
2. 판사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재판
준비단계에서 사건처리를 끝맺는 경우
3. 재판심리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4. 소송관계자의 신청을 해결하는 경우
5. 재판심리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
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

제137조 판정의 채택은 판결의 채택절차에
따른다. 재판심리절차와 관련된 간단한 문
제를 처리하는 판정은 재판심리조서에 적
어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138조 제1심재판소는 이미 내린 판결, 판
576

정을 취소할수 없다. 그러나 이 법 제136조 제4호에 해당하는 판정과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내린 확정된 판결, 판정은 고칠수 있다.

제139조 소송당사자 또는 검사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상소, 항의를 할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수 없다.

제140조 상소,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다.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안으로 소송당사자와 검사에게 준다.

제141조 상소, 항의를 하려는 소송당사자 또는 검사는 상소장이나 항의서를 판결, 판정을 내린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상소장, 항의서에는 상소, 항의의 리유와 요구를 적어야 하며 제1심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밝힐수 있다. 상소장에는 국가수수료납부증을 붙인다.

제142조 제1심재판소는 상소, 항의 기간이 지나면 상소장, 항의서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한급 높은 재판소에 보내야 한다.

제143조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한급 높은 검찰소 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4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소송당사자는 제2심재판이 시작되기전까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5조 판결은 다음과 같은 때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가 없이 그 기간이 지난 때
2. 상소, 항의가 있었으나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한 때
3. 상소, 항의 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때

제10장 제2심재판

제146조 제2심재판에서는 상소, 항의 자료와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제147조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제2심재판에는 소송당사자와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나 검사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재판심리날자는 제2심재판을 시작하기 3일전까지 검사와 소송당사자에게 알린다.

제148조 제2심재판은 판사가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다음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49조 제2심재판소와 검사는 제1심재판기록과 제출된 상소, 항의 자료에 기초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물어볼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는 할수 없다.

제150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정, 판결이 옳게 내려졌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상소, 항의를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151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이나 조사를 더 할 필요없을 정도로 사실사정을 명백히 밝혀놓고도 판결, 판정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칠수 있다.

제152조 제2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여 제1심재판소의 재판준비단계 또는 재판심리단계에 보낸다.

1. 재판소구성에서 법을 이긴 경우
2.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3. 재판심리에서 증거를 조사검토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였을 경우
4.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를 보장하여주지 않았거나 소송당사자로 될수 없는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제153조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86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154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지적하는 판정을 따로 할수

재판소가 한다. 제2심재판에는 소송당사자와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나 검사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재판심리날자는 제2심재판을 시작하기 3일전까지 검사와 소송당사자에게 알린다.

제148조 제2심재판은 판사가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다음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49조 제2심재판소와 검사는 제1심재판기록과 제출된 상소, 항의 자료에 기초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물어볼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는 할수 없다.

제150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정, 판결이 옳게 내려졌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상소, 항의를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151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이나 조사를 더 할 필요없을 정도로 사실사정을 명백히 밝혀놓고도 판결, 판정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칠수 있다.

제152조 제2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여 제1심재판소의 재판준비단계 또는 재판심리단계에 보낸다.

1. 재판소구성에서 법을 이긴 경우
2.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3. 재판심리에서 증거를 조사검토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였을 경우
4.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를 보장하여주지 않았거나 소송당사자로 될수 없는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제153조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86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154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지적하는 판정을 따로 할수

있다.

제155조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 할수 없다.

제11장 비상상소

제156조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비상
상소의 절차로 한다.

제157조 비상상소는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
다는것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경우 언제든
지 할수 있다.

제158조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159조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기록을 요
구하며 그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
을 정지시킬수 있다.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제160조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
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안에서 처

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사건기록에서 비상상소제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건을 붙여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내며 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해당 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161조 소송당사자와 사건해결에 리해 관계가 있는자는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비상상소를 제기하여줄것을 신청할수 있다.

제162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회에서 심리해결한다.

제163조 중앙재판소 판사회회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판사회회는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판정은 참가한 성원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판사회회의 집행은 중앙재판소 소장이 한다.

제164조 중앙재판소 판사회회의에는 중앙검찰

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165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비상상소사건은 관정으로 해결한다.

제166조 중앙재판소는 확정된 판결, 관정이 비상상소에 의하여 변경, 취소된 경우 집행한 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장 재 심

제167조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 확정된 판결, 관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다.

1. 판결, 관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다는것이 확증된 경우
2. 판결, 관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이

재판을 끝낸 다음에 알려진 경우

3. 소송당사자 또는 재판소성원이 사건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
4. 이미 취소된 판결, 판정이나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에 근거하여 판결,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

제168조 제심은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169조 재판소와 검찰소는 필요한 경우 제심의 제기를 신청할수 있다. 제심의 제기신청은 한급높은 재판소와 검찰소에 한다.

제170조 소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제심을 제기하여줄것을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신청할수 있다. 제심제기신청은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안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71조 제심제기신청을 받은 재판소 또는 검찰소는 1개월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리유가 정당할 경우 해당한 의견을 붙여 중앙재판소 또는 중앙검찰소에 보내며

부당할 경우에는 판정 또는 결정으로 거부한다.

제172조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재심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를 3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173조 재심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재심제기사유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찰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74조 재심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재판소에 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사건을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한다.

제13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175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결,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원의 요구

에 응해야 한다.

제176조 재산창구에 대한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 판정을 내린 재판소의 판사는 자기의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 집행문발급에 대한 신청은 판결,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안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원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그것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7조 집행원은 집행행위를 할 경우 의무자를 참가시켜야 한다. 의무자는 집행할 재산에 대하여 지적할수 있다.

제17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한다. 해당 은행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집행하고 그 정형을 집행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9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 집행을 중지시킬수 있다.

1. 빚을 물어야 할 자에게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
2.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3.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할수 없는 경우
제180조 집행원은 집행이 끝난다음 해당 절차에 따라 집행한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주며 집행조서를 판사에게 주어야 한다.

제181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사건을 가각한다.

1. 집행분발급의 기초로 된 판결, 판정이 취소된 경우
2. 정해진 기간이 지난후 집행을 신청하였을 경우
3.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집행에 대한 신청을 포기하였을 경우

제182조 집행원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는 재판소는 15일안으로 신청자를 참가시키고 그것을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1996. 7. 15 정부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실서를 세우며 중계무역업자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중계무역은 이 나라의 것을 가져다 저 나라에 넘기고 저 나라의 것을 가져다 이 나라에 넘기는 무역이다.

제 3 조 공화국의 무역회사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안에서 중계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회사들도 지대안에 지사를 설치하거나 대리인을 두고 중계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지대에서 중계무역활동을 하려는 공화국의 무역회사와 다른 나라 회사의 지사, 대리인은 지대세관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4 조 지대에서 합법적인 중계무역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무역회사와 다른 나라 회사의 지사, 대리인(이 아래부터는 중계무역업자라 한다.)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중계무역업자는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5 조 지대중계무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한다.

제 6 조 이 규정은 중계무역업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중계무역품의 반출입

제 7 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수출입허가, 가격승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제 8 조 반출입하는 중계무역품의 출하지, 수량, 원산지, 상표조건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 9 조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동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계무역품은 반입할 수 없다.

제 10 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중계무역품을 반출입하려고 할 경우

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이 아래부터는 지대세관이라 한다.)에 반출입신고서를 내야 한다.

제12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신고는 중계무역업자의 세관신고원이 하여야 한다.

제13조 중계무역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중계무역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한다.

제 3장 중계무역품의 보관 및 가공

제14조 중계무역품은 창고, 야적장과 같은 일정한 보관시설을 갖춘 장소에만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 중계무역품의 보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특별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중계무역품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보관기간연장신청서를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지대세관은 보관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중계무역품의 보관료는 짐임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중계무역품은 제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의 선별, 포장, 조립과 같은 가공을 할 수 있다.

제19조 중계무역품을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가공대상, 가공내용, 가공자 및 가공장소, 가공기간 같은 것을 밝힌 신고서를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제20조 중계무역품의 가공은 중계무역업자가 하거나 지대안의 기업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 중계무역품은 공화국령역안의 무역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품명, 수량, 넘겨주는 시기 같은 것을 밝힌 신고서를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제22조 중계무역품은 지대안에서 일정한 수량을 견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일정한 수량의 견본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중계무역품반출신고서에 령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독통제

제23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 보관 및 가공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대세관이 한다.

제24조 지대세관의 감독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입이 금지된 중계무역품이 들어오지 않는가를 감독한다.
2. 반입되었던 중계무역품의 품종과 수량이 정확히 반출되는가를 감독한다.
3. 중계무역품을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보관하고 있는가를 감독한다.
4. 중계무역품을 지대세관에 신고한 내용에 맞게 가공하고 움직이는가를 감독한다.

제2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00~1,500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중계무역품을 몰수한다.

1. 지대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있는 불자를 들여오는 경우

2. 중계무역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3. 중계무역품을 소매(건본판매는 제외)하는 경우
4. 지대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계무역품을 가공하는 경우

제26조 중계무역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고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

1996. 7. 15 정부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청부건설에 대한 제도와 절차를 세우며 청부건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 공화국 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건설주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의 건설대상에 대한 설계를 주문하거나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제 3 조 주문받아하는 설계, 위탁받아하는 건설(이 아래부터는 청부건설이라 한다.)은 공화국의 설계기업소 또는 건설기업소가 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도 청부건설을 할 수 있다.

제 4 조 건설대상에는 건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는 대상과 건설물을 개축, 이개축,

중축, 복구, 개건, 확장하는 대상이 포함된다.

제 5 조 대상설계를 주문받는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설계사업소라 한다.), 대상건설을 위탁받는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시공주라 한다.)는 주문설계 또는 청부건설을 할 수 있는 기술기능로력과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 시공주는 독자적인 경영단위로 활동하며 자체로 채산을 맞추어야 한다.

제 7 조 청부건설과 관련한 물자의 가격과 운임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

제 8 조 건설대상에 대한 설계의 주문, 청부건설, 건설로력과 건설자재, 건설기계의 보장과 같은 필요한 봉사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자대당국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제 9 조 청부건설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감독통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에는 중앙건설감독기관과 자대건설감독기관이 포함된다.

제 10 조 이 규정은 건설주와 설계사업소, 시

공주를 비롯한 청부건설과 관련한 기관, 기업소에 적용한다.

제 2 장 건설대상의 주문설계

제11조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는 건설명시서에 근거하여 만든다.

건설주는 대상건설을 위한 설계를 주문하거나 만들기전에 건설명시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건설명시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를 지대건설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에는 건설주명, 국적, 건설대상명, 건설위치, 건설부지면적, 물과 전기 및 열의 소요량, 불자의 수송량, 건설대상의 규모와 능력을 밝히고 토지이용증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건설총투자액이 2,000만원이상의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는 중앙건설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명시서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없이 고칠 수 없다.

제14조 건설주와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설계를 자체로 하거나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 설계사업소에 주문할 수 있다.

대상건설의 설계에는 과제설계(형성설계)와 기술설계(기본설계)가 포함된다.

제15조 건설대상의 설계를 주문하려는 건설주 또는 시공주는 설계사업소와 주문설계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문설계계약서에는 주문자명, 국적, 건설대상명, 건설위치, 건설대상의 능력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및 준공 년도, 설계단계, 건설물의 구조 및 형식, 설계 변동과 증지, 설계비의 지불, 설계문건의 부수, 설계문건의 양도날자,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해결과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건설명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설계사업소는 계약된 건설대상의 설계 가운데서 건설측량지질조사, 비규격설비설계와 같은 일부 대상의 설계를 다른 설계사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대상의 주문

설계계약에 맞게 위탁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7조 건설대상에 대한 주문설계의 일부 내용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고칠 수 있다.

제18조 불가피한 사정으로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를 중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 다음 건설대상에 대한 주문설계계약의 리행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설계사업소는 다른 설계사업소에 위탁한 건설대상의 위탁설계를 종합하여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는 주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과제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총투자규모가 2,000만원아래 건설대상의 과제 설계에 대한 협의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이, 건설총투자규모가 2,000만원이상 건설대상의 과제설계에 대한 협의는 중앙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21조 건설대상의 설계비는 설계문건을 넘겨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설계비는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3 장 대상건설

제22조 건설대상에 대한 청부건설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공주명, 소재지, 건설능력과 같은 내용을 밝힌 청부건설업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제23조 지대당국은 청부건설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부받은 대상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허가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25조 건설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건설허가신청서를 지대건설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건설허가신청서에는 신청자명, 국적, 건설대상명과 능력, 건설위치, 건설총투자액, 건설 착공년도와 준공년도를 밝히고 기업창설승인서나 투자승인서 또는 거주확인서, 건설명세서, 건설대상의 설계문건 같은 것

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건설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에 검토하고 건설허가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건설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건설허가증을 발급한다.

건설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대상은 착공할 수 없다.

제27조 건설주는 건설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측량을 지대건설감독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 건설주는 건설대상의 설계에 근거하여 건설총투자액을 결정한 다음 대상건설을 주문하여야 한다.

제29조 시공주는 대상건설과 관련한 수문지질, 기상기후 자료와 건설작업량, 물자수송량, 공사조건과 같은 자료불요해하여야 한다.

제30조 청부건설은 건설주와 시공주사이에 대상건설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한다.

청부건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1. 건설 대상명과 능력
2. 건설총투자액 또는 공사작업량단가
3. 건설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단계별 완공
시기 포함)
4. 건설자금의 지불 시기 및 방법
5. 건설공사의 변경, 중지와 그 처리방법
6. 보장 또는 대여할 건설자재, 건설기계,
설비, 비품의 명세, 인도 시기, 방법
7. 건설물의 질보증 기간과 방법
8.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9. 건설부지안에 있는 건물과 시설물의 철
거 및 이설 비용과 그 부담관계
10.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
11.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31조 건설주는 청부건설계약을 맺은 다음
건설명세서, 건설대상의 설계문건, 건설허
가문건, 토지리용증같은것을 시공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32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일부를 다른
시공주에게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우 건설주와 합의하고 청부건설계약에 맞
게 하청부건설계약을 맺어야 하다.

제33조 시공주는 건설주가 보장하지 못하는 건설자재와 대상설비, 비품을 자체로 또는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수입하거나 지대당국을 통하여 해결하며 대상설비의 조립을 다른 나라 기업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34조 대상건설은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한다.

제35조 건설주는 직접 또는 지대당국의 알선을 받아 건설감독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주에게 선정된 건설감독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건설감독원은 청부건설계약서와 설계문건의 범위안에서 건설주를 대신하여 대상건설을 감독하며 그에 대하여 건설주 앞에 책임진다.

제37조 시공주는 건설현장대리인을 정하고 건설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건설현장대리인은 대상건설에 대한 시공지도와 기술관리를 맡아한다.

제38조 건설주는 시공주에게 대상건설완공을 담보하는 담보금과 공사원성보증인을 제출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설계문건과 청부건설계약서의 요구에 맞게 대상건설을 완공하여야 한다.

제40조 건설주는 청부건설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안에 건설총투자액의 30%에 해당하는 선불금을 시공주에게 주어야 한다.

제41조 선불금은 청부건설대상의 자재와 설비, 로동보수, 임대료, 동력비, 수송비, 가설비와 이밖에 건설주가 인정하는 항목에만 써야 한다.

제42조 시공주는 건설현장총계획도에 근거하여 건설현장을 전개하며 건설장을 외부와 차단하고 지대의 환경보호대책과 건설장주변에 있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3조 설계문건과 공사현장상태가 차이나거나 설계문건에 오차가 있을 경우와 예견하지 않은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설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4조 건설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를 일시 또는 완전히 중지시키고 차후대책을 시공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시공주의 책임으로 대상건설을 정한 기간안에 완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착공기일이 지났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건설대상을 설계대로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 시공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한 공사기간에 대상건설을 완성할 수 없을 경우 그에 대하여 건설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시공주는 건설주의 책임으로 건설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임계 되는 손해가 늘어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건설공사를 일시 또는 완전히 중지하고 건설주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47조 시공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건설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1. 건설감독원의 시공지도에 따라 시공하였을 경우와 건설주 또는 건설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공방법과 건설자재, 대상설비로 시공하였을 경우
2. 건설감독원이 검사 또는 시험한 건설자재로 시공하였을 경우

3. 건설주 또는 건설감독원의 책임에 의하여 건설이 진행되었을 경우

제48조 시공이 끝난 공정은 건설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시공주는 시공이 끝난 공정에 쓰인 자금을 건설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주는 시공주가 청구하는 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0조 건설주는 시공주의 책임으로 대상건설을 완공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완성보증인에게 건설을 완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대상건설을 완전히 중지하는 통지가 있을 경우 청부건설계약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설물, 건설자재와 대상설비, 비품은 건설주와 시공주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2조 시공주는 종업원과 건설물, 대상건설에 쓰이는 설비 및 물자의 안전과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4 장 건설물의 준공 및 인도

제53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청부건설이 끝

났을 경우 종합적인 검사를 하고 대상건설의 완공통지서를 건설주에게 보내야 한다.

제54조 건설주는 대상건설의 완공통지서를 받은 다음 준공검사성원으로 건축, 생산기술공정, 전기, 체신, 난방, 상하수도과 같은 전문부문의 검사성원을 지대당국에 의뢰할 수 있다.

지대당국은 건설주의 의뢰에 따라 해당 전문부문의 일꾼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55조 건설주는 건설대상에 대한 준공검사를 끝낸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건설물을 넘겨받은 다음 그 결과를 지대건설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대건설감독기관은 완공된 건설물의 기술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6조 건설주는 건설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청부건설자금을 청산하여야 한다.

제57조 건설주는 공사의 일부 대상이 완공되었거나 완공되기전이라도 시공주와 협의하고 그것을 리용할 수 있다.

제58조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질보증기간은 건설주와 시공주가 협의하여

늘일 수 있다.

대상설비의 질보증기간은 대상설비제작자가 정한데 따른다.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는 국가 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당사자가 보수하거나 보상한다.

제59조 건설주는 완성된 건설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0일안에 지대당국에 건설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0조 전문청부건설기업이 아닌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시공주는 청부받은 건설대상이 없을 경우 지대안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건설감독 및 분쟁해결

제61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시공주와 건설주가 건설부문의 법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며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2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1,000~1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변상, 몰수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

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63조 청부건설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광을 통한 친선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인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관광객이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서 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관광객은 정한 질서에 따라 지대밖의 공화국령역 안에서도 관광을 할 수 있다.

관광에는 여행을 통한 구경, 인식, 휴양, 연구, 오락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3 조 관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관광협정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여행을 조직하는

회사(이 아래부터는 지대 관광여행사라 한다.)와 다른 나라의 관광회사, 기관, 기업체, 단체 및 개인 사이에 맺은 관광계약에 따라 한다.

제 4 조 관광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 밑에 국적, 민족, 장전, 신앙에 관계없이 나라와 지역, 개인들 사이에 서로 리해하고 협력, 교류하는 원칙에서 한다.

제 5 조 관광객의 지대출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여행승인문건에 따라 한다.

관광여행승인문건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지대관광관리기관이라 한다.)이나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관광증 또는 관광여행증과 같은 증빙문건이 포함된다.

제 6 조 관광객의 신변안전은 법적으로 담보된다. 관광객은 관광여행봉사, 생활봉사, 의료봉사와 같은 필요한 봉사를 보장받는다.

제 7 조 국가관광지도기관과 지대관광관리기관은 국제적인 관광추세에 맞게 다른 나라와 세계 및 지역적 협조기구, 국제기구들과 관광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8 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투자가는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지대에서 관광지와 관광대상을 개발하거나 관광봉사업을 할 수 있다.

제 9 조 지대관광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는 국가관광지도기관의 지도밑에 지대관광관리기관이 한다.

제 2 장 관광여행

제 10 조 관광여행은 단체별로 하거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11 조 관광객은 체류지의 관광회사 또는 관광을 직접 조직하는 해당 나라의 기관, 기업체, 단체를 통하여 지대관광여행사에 관광여행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광여행신청문건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별, 국적, 거주지, 직장, 직위, 려권 종류 및 번호, 관광기간, 관광지, 관광증을 받을 장소(나라 또는 대표부의 이

름)와 같은 내용을 밝히야 하다.

제12조 지대관광여행사는 관광여행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하다.

관광여행동의를 서면이나 모사전신, 인쇄전신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관광객이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으로 관광여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관광여행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대관광여행사는 24시간안으로 관광여행을 맞물려야 한다.

제14조 지대관광관리기관과 지대관광여행사, 지대관광봉사기업(려관, 식당, 운수, 참관대상, 상점, 유희오락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광객은 지대의 개발, 투자, 기업창설 및 운영, 과학기술교류 및 경제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해당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과 협의하거나 그와 관련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제16조 관광객은 관광여행기간에 공화국의

법과 규정, 사회질서를 지키고 주민들의
례의도덕과 생활풍습 같은 것을 존중하여
야 하며 관광여행을 그 어떤 불순한 목적
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관광객은 관광대상, 관광자원을 못
쓰게 만들거나 관광환경을 오염시키는 행
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3장 관광 봉사 및 요금

제18조 지대관광봉사기업은 지대관광여행사
또는 관광객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봉
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대관광여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
은 관광봉사 시설과 설비를 관광수요에 맞
게 꾸리고 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관광객은 관광봉사를 계약대로 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제20조 지대관광여행사는 관광객이 배낭식
천막 또는 숙박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가지
고 오는 경우 그에게 숙박용지를 보장해주
어야 한다.

제21조 지대관광여행사는 관광박의 목적으

로 지대에 왔던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가 관광을 신청하는 경우 관광봉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2조 생명이 위급한 관광객이 생겼을 경우에는 필요한 구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치료에 든 비용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관광료금은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정하며 관광객이 입국하기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첫 안내지점에서 지불할 수도 있다.

제24조 지대관광여행사는 지대관광봉사기업과 봉사계약을 맺었을 경우 계약에 따라 해당 봉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4 장 관광관리

제25조 관광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관광관리기관, 지대관광여행사, 지대관광봉사기업이 한다.

제26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지대관광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행, 대외관광시장의 조사 및 확대, 대외관광선전, 관광봉사활동에

대한 조절 및 감독, 관광여행의 승인, 관광봉사일군의 양성, 관광업에 대한 합의, 이밖에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제27조 지대관광여행사는 관광객의 접수와 안내, 봉사맞물림과 같은 관광봉사조직을 하며 관광봉사정형을 종합하여 분기 1차씩 지대관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8조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가지 관광봉사를 하며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수입정형, 봉사시설리용정형과 같은 자료를 달마다 1차씩 지대관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9조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지대안에서 전문으로 관광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지대안에서 관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과 미리 합의한 다음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관광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지대안의 관광지과 관광대상을 개발하거나 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대관광여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의 관광봉사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검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5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3조 지대관광여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계약조건대로 관광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 위약금 또는 손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제3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손해보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우거나 500~1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업종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35조 관광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

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하는 절차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1996. 7. 15 정부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 투자와 관련한 수속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가(조선동포 포함)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의 일군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 3 조 대리인은 외국투자가의 투자와 관련한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 기업창설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문건의 작성, 기업창설수속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4 조 대리인으로는 대외경제 및 외국투자와 관련한 학위, 학적 소유자와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서 3년이상 일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일군이 될 수 있다.

제 5 조 대리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위임한자(이 아래부터는 본인이라 한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리인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한다.

제 7 조 이 규정은 대리인과 본인, 대리인활동과 관련한 기관, 기업소에 적용한다.

제 8 조 대리인이 되려는 일군은 관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는 일군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업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9 조 대리인은 관계기관과 합의한 다음 외국투자가와 위임대리계약을 맺어야 한다. 위임대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이름, 계약날자, 대리권의 범위와 내용, 대리기간,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연계방법, 대리비와 그 지불방법, 제재 및 분쟁해결,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 10 조 외국투자가는 위임대리계약을 맺었을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발급해주어

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소속 기관 또는 기업소명, 대리인의 업무와 권한, 대리권의 범위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대리인은 저대당국에 대리인등록신청서를 내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리인등록신청서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직장, 직위, 대리권의 범위, 대리기간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위임대리계약서사본, 위임장사본, 해당 기관의 합의문건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저대당국은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의 기업창설심사승인대상에 대한 대리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5일안에 의견을 달아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2조 대리인등록신청서는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대리인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은 대리인등록의 승인 및 부결 정형을 3일안으로 저대당국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대리인등록은 대리인등록부에 하여야 한다.

지대당국은 대리인을 등록하였을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인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대리인등록을 승인 받은 대리인은 지대당국에 대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대리계약은 대리인을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결과와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책임진다.

제16조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며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제17조 본인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수행한 대리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대리인과 민사거래행위를 한 제3자 앞에 책임진다.

제18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자신이 직접 하거나 투자 및 기업창설을 방조하는 전문봉사 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0조 대리권은 위임대리계약서에 밝힌 대리기간이 끝났을 경우, 위임대리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이밖에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효력을 잃는다.

제21조 대리인의 대리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대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지대당국에 대리기간연장신청서를 내야 한다.

대리기간연장신청서에는 대리권의 연장기간과 그 근거를 밝히고 그것을 증명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대리비는 위임대리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 이 규정을 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대리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대리인증서를 회수할 수 있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24조 외국투자가대리인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투자가대리인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판 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외국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1996. 7. 15 정부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화폐자금 조성 운용과 관련한 업무활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확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부기계산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포함된다.

제 3 조 부기결산년도는 해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제 4 조 부기문건의 글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부기문건의 글을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인다.

제 5 조 부기계산은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
부표에 대한 계산은 단식기입방법으로 한다.

제 6 조 부기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부기계산을 외화로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

당 거래가 일어난 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환산 및 결제시세로 환산한 조선원을
접쓰기 한다.

제 7 조 부기문건은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20년, 영구 보존한다.

제 8 조 외국투자은행의 부기계산에 대한 통
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은행이 한다.

제 2 장 부기문건작성 및 부기계산 원칙

제 9 조 부기문건을 잘 만들고 부기계산을
바로하는 것은 은행업무계산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계산원칙, 부기계산자
리, 부기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여
야 한다.

제 10 조 부기문건에는 부기계산장부(전자계
산가의 기억테프, 기억원판 포함), 재정상
태표, 손익계산표, 전표가 포함된다.

제 11 조 재정상태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만들어야 한다.

1. 재산, 채무, 자본은 일정한 구분, 배열,
분류, 평가기준에 따라 써넣어야 한다.

2. 재산, 채무, 자본은 총액으로 올리며 재산항목과 채무, 자본 항목을 상쇄하지 말아야 한다.
3. 은행의 재무내용을 분석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재정상태표에 따로 밝혀야 한다.
4. 재산의 합계액은 채무, 자본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손익계산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만들어야 한다.

1. 비용과 수입은 실지 이루어진 지출 및 수입에 따라 계산하며 그것이 이루어진 기간에 정확히 나누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비용과 수입은 총액으로 올리며 비용항목과 수입항목을 상쇄하지 말아야 한다.
3. 비용과 수입은 그 원천에 따라 분류하며 련관되는 비용항목과 수입항목은 손익계산표에 맞대어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부기계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업무결과를 사실대로 계산하여야 한다.

2. 부기계산 수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3. 재정상태와 관련한 거래와 손익과 관련한 거래를 구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부기계산방법을 마음대로 변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 3장 부기계산자리와 그 계산방법

제14조 부기계산자리는 재산, 채무, 자본의 증감과 비용, 수입을 계산하는 자리이다.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계산자리를 바로 정하고 재산, 채무, 자본의 변동과 비용, 수입의 증감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15조 부기계산자리에는 재정상태표계산자리항목, 손익계산표계산자리항목이 포함된다. 재정상태표 및 손익계산표 계산자리항목의 배열순위와 계산자리번호는 중앙은행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제16조 재정상태표계산자리항목에는 재산, 채무, 자본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재정상태표 차방에는 재산계산자리가, 대방에는 채무 및 자본금 계산자리가 놓인다.

제17조 재산의 계산은 류동재산, 고정재산, 연상재산으로 갈라 한다.

류동재산에는 현금과 그밖에 1년안에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재산이, 고정재산에는 1년이상 리용하거나 소유하는 재산이, 연상재산에는 손익계산상 일시 재산으로 계산하였다가 다음 결산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재산이 포함된다.

제18조 재산계산자리에는 현금, 예치금, 최단기 대부, 할인수정, 유가증권, 대부금, 외국환자, 기타재산, 저불승낙담보,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제19조 현금계산자리에는 현금 및 그와 같은 재산의 총감을 처리한다.

현금을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0조 예치금계산자리에는 본점 또는 중앙은행기관에 대한 시좌예치금의 수입, 지출 거래를 처리한다.

시좌예치금을 예입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시좌예치금을 찾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1조 최단기대부계산자리에는 은행, 그밖의 금융기업에 단기대부를 하거나 회수하는 거래를 처리한다.

최단기대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최단기대부계산자리에는 일정한 거치기간안의 단기대부만 처리한다.

제22조 할인수형계산자리에는 수형의 할인 및 수형대금의 수입거래를 처리한다.

수형을 할인하였을 경우에는 수형액면금액으로 차방에, 수형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3조 유가증권계산자리에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국채, 지방채, 사채, 외국증권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유가증권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입원가에 의하여 차방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

방에 생긴다.

제24조 대부금계산자리에는 자금의 대출 및 회수 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수형대부, 증서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 지불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자금을 대출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5조 외국환자계산자리에는 외국과의 환자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채무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사는 외국환자, 파는 외국환자, 외국타점에치, 애입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외국환자계산자리에는 매는 거래를 일으켰을 경우 차방에, 넣는 거래를 일으켰을 경우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 또는 대방에 생긴다.

제26조 기타재산계산자리에는 환자결제에치금, 전불비용, 미수수익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제27조 지불승낙담보계산자리에는 제3자를 위하여 한 채무의 보증 또는 그 해제거래

를 처리한다.

채무를 보증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보증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지불승낙담보계산자리의 거래액은 보증금액으로 한다.

제28조 고정재산의 계산은 영업용 동산, 부동산, 저당잡은 동산, 부동산으로 갈라 한다.

제29조 영업용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에는 영업용 건물, 좁기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영업용 건물, 좁기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부대비용을 포함한 원가로 차방에, 그것을 처리하였거나 감가상각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30조 저당잡은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에는 적당권을 설정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담보물로 소유하고 있던 동산, 부동산을 처리하는 거래를 계산한다.

동산, 부동산을 담보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그것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31조 연상계산계산자리에는 창립비를 계산한다.

제32조 채무에는 고정채무, 류동채무가 포함된다.

고정채무에는 지불기한이 1년이상의 채무가, 류동채무에는 지불기한이 1년아래의 채무가 속한다.

채무의 지불기한은 재정상태표를 작성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33조 채무계산자리에는 예금, 최단기차입금, 차용금, 외국환자, 기타채무, 담보금 및 준비금, 지불승낙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제34조 예금계산자리에는 예금의 접수, 지불 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시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에금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예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예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35조 최단기차입금계산자리에는 담보없는 최단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 거래를 처리

한다.

최단기차입금을 차입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36조 차용금계산자리에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거나 그것을 상환하는 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재할인수형, 차입금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37조 기타채무계산자리에는 미결제환자에 입, 미불세금, 미불비용, 미리 받은 리익, 차입유가증권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제38조 지불승낙계산자리에는 거래자에 대한 지불보증거래를 처리한다.

지불보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액으로 대방에, 보증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39조 자본금계산자리에는 자본금의 증감을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불입자본금,

예비기금, 압의의 적립금과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자본금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줄었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40조 산탁업무에 대한 부기계산은 일반은행 업무계산과 구별하여 계산자리를 따로 가지고 하여야 한다.

제41조 손익계산표계산자리에는 수입과 비용을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수입계산자리와 비용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손익계산표계산자리에는 년도초부터 결산기말까지의 루계액으로 수입을 차방에, 비용을 대방에 기입한다.

수입과 비용의 차액은 차방 또는 대방에 생긴다.

제42조 수입계산자리에는 자금운용수입계산자리, 봉사기레수입계산자리, 기타업무수입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제43조 자금운용수입계산자리에는 대출금리자, 유가증권리자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대출금리자산자리에는 수형대부, 증서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지불 및 최단기대부와 같은 대출금의 수입리자를 계산한다. 유가증권리자산자리에는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생기는 리자를 계산한다.

제44조 봉사거래수입자산자리에는 환자수입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사채수탁수수료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환자수입수수료계산자리에는 송금환자, 대금청구수수료를, 자금결제수수료계산자리에는 수형의 발행, 돈자리환치 수수료와 같은 수수료를, 사채수탁수수료계산자리에는 사채수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계산한다.

제45조 기타업무수입자산자리에는 외국환자매매리익, 유가증권매매리익, 동산, 부동산 처분리익, 준비금해제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외국환자매매리익계산자리에는 외국환자를 매매할 경우 매매리익과 결산기말에 재고를 평가하여 생기는 평가리익을, 유가증권매매리익계산자리에는 유가증권을 매매할 경우 구입가격이상의 판매액과 재고유

가중권의 평가리익을 계산한다.

동산, 부동산 처분리익계산자리에는 동산, 부동산을 매배하였을 경우 구입가격이상의 판매액을, 준비금해제계산자리에는 손실준비금, 퇴직보수준비금과 같은 준비금을 해제하였을 경우 그 해제액을 계산한다.

제46조 비용계산자리에는 자금조성비용, 봉사거래비용, 영업비용, 기타 업무비용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제47조 자금조성비용계산자리에는 예금리자, 최단기차입금리자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예금리자계산자리에는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에금과 같은 예금에 대한 지불리자를, 최단기차입금리자계산자리에는 외부로부터 차입한 최단기차입금에 대한 지불리자를 계산한다.

제48조 봉사거래비용계산자리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는 봉사거래와 관련하여 지불하는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계산한다.

제49조 영업비용계산자리에는 인건비, 불건비, 세금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

한다.

인건비계산자리에는 은행직원의 로동보수를, 물건비계산자리에는 은행건물유지비, 경영용 설비, 비품비를, 세금계산자리에는 기업소득세, 지방세와 같은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한다.

제50조 기타업무비용계산자리에는 외국환자매매손실액, 유가증권매매손실액, 손실준비금편입액, 동산, 부동산 처분손실액, 준비금편입액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외국환자매매손실액계산자리에는 외국환자매매에서 생기는 매매손실액과 결산기말 평가에 의한 손실액을, 유가증권매매손실액계산자리에는 유가증권을 매매할 경우 구입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아져 생긴 매매손실액과 재고유가증권의 평가손실액을 계산한다.

동산, 부동산 처분손실액계산자리에는 동산,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생기는 손실액을, 준비금편입액계산자리에는 결산기에 손실준비금, 퇴직보수준비금과 같은 준

비금을 해당 준비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제 4 장 부기결산

제51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의 재정상태와 업무활동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부기결산을 하여야 한다.

부기결산은 월, 분기, 년도별로 한다.

년도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부기결산에서는 결산정리계산자리를 설정하고 재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재평가하며 받지 못한 리자, 기일이 되지 않은 리약과 같은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고 장부가격을 실제가격과 일치시켜야 한다.

제53조 결산정리계산자리에는 건물, 증기의 감가상각, 유가증권, 외국환자평가손실액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제54조 고정재산은 실제가격으로 평가하여 장부가격을 일치시켜야 한다.

제55조 유가증권의 평가는 결산일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시가가 원가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며 그 차액은 유가증권상각계산자리에서 손실 또는 이익으로 처리한다.

제56조 대부금은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만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상환기에 회수되지 않은 대부금과 담보가 없거나 시가가 대부금액보다 낮아진 담보물은 손실로 처리한다.

제57조 외국환자는 결산당일의 환자시세로 평가한다.

환자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외화채권, 채무의 차액이 채권초과인 경우 이익으로, 채무초과인 경우 손실로 처리하며 환자시세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반대로 처리한다.

제58조 미불비용, 미수수익은 따로 산출하여 손익계산에 가감하여야 한다.

미불비용에는 지불하지 않은 정기에금의 리자를, 미수수익에는 받아들이지 못한 사채의 리자를 기본으로 계산한다.

제59조 기일이 되지 않은 리익 및 전불비용은 해당 결산기의 손익계산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가일이 되지 않은 리익에는 가일이 되지 않은 할인료, 대부금리자를, 전불비용에는 이미 지불되었으나 다음 결산기에 속하는 비용을 계산한다.

제60조 부기결산에서는 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준비금에는 손실준비금, 퇴직보수준비금이 포함된다.

제61조 손실준비금은 일시적 성질을 가지지 않은 채권, 그밖의 대부금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의 합계액에서 제할인수형, 가수금 가운데서 대출금의 회수분 같은 것을 공제한 채권을 대상으로 적립한다.

제62조 퇴직보수준비금의 한도는 영업년도 말현재의 제직종업원에게 계산지불할 것으로 예정하는 퇴직보수액으로 한다.

제63조 재산을 감가상각하고 제평가하며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였을 경우에는 부기결산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부기결산보고서에는 제정상태표, 손익계산표, 그에 따르는 부표가 포함된다.

제64조 제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는 종합계

산자리원장(계산자리카드)의 부기계산자리잔고를 그대로 올리거나 종합계산자리잔고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만든다.

제65조 결산리익금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산리익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리익금으로 리익금처분명세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66조 외국투자은행은 공화국령역안에 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결산기마다 지점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를 본점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와 합쳐 본지점 종합재정상태표, 종합손익계산표를 만들어야 한다.

제67조 부기결산서는 외국투자은행 책임자, 재정부기책임자가 련명수표하여 분기부기결산서는 다음분기 첫달 15일안으로, 연간부기결산서는 다음해 2월안으로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연간부기결산서에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

제68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부기계산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9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부
기계산과 관련한 자료를 외국투자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이 규정을 이기었을 경우에는 정도
에 따라 5,000~1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이
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진다.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과 결산 문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부기검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과 결산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확정하는 사업이다.

부기 계산, 결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의논하는 상담봉사와 그것을 살피고 의견을 주는 검사도 부기검증에 포함된다.

제 3 조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다른 나라 무역회사의 지사, 대리인은 부기 계산과 결산 문건의 부기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부기검증은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적법성, 비밀담보의 원칙에서 한다.

제 5 조 부기검증과 관련한 합법적인 활동은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제 6 조 부기검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
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다.

제 2 장 부기검증사무소와 부기검증원

제 7 조 부기검증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에 대한 검증을 하는 조
직이다.

제 8 조 부기검증사무소는 부기검증원자격을
가진 부기검증원들로 구성된다.

부기검증사무소에는 3~10명의 부기검증원
을 둔다.

제 9 조 부기검증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는 시, 군에 조직하거나 지구별로 조직
할 수 있다.

제 10 조 부기검증사무소창설을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
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관등
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부기검증사무소의 명칭, 장소, 성
원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원자격을 받은 공화국국민이 될 수 있다.

제12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될 수 있다.
부기검증원자격은 부기검증원자격시험위원회가 준다.

제13조 부기부문의 학위, 학직 소유자와 명예칭호를 받은 일군, 3급이상의 급수를 가진 부기부문의 교원, 연구사, 경제사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부기검증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 3장 부기검증 대상, 절차와 방법

제14조 부기검증은 부기계산문건(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계산서, 리윤 및 분배 계산서,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산서, 관리비계산서, 송금환자계산서와 같은 계산문건), 투자문 및 투자실적과 관련한 문건, 로임계산문건, 세금계산문건, 원금의 상환과 리자계산자불 문건, 이밖의 부기계산문건에 대하여 한다.

기업의 해산과 파산, 병합, 분리,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건의 정확성을 확정
하는 사업도 부기검증대상에 포함된다.

제15조 상담봉사는 부기 계산, 결산 문건의
작성, 부기일군의 양성사업과 같은 제기되
는 문제에 대하여 한다.

제16조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
과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이 의뢰하는
대상에 대하여 한다.

제17조 부기검증은 부기검증원이 한다.

부기검증원은 자기가 한 부기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8조 부기검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부기검증사무소에 부기검증의뢰서를 내야
한다.

부기검증의뢰서에는 기업명, 부기검증대상,
부기검증날자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9조 부기검증사무소는 부기검증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한
부기검증원을 지적하여야 한다.

제20조 부기검증은 의뢰에 따라 정기적인
검증과 비정기적인 검증으로 갈라한다.

제21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과 관련한 현
자확인을 할 수 있으며 부기계산문건을 열
람료해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검증에 필요한 조
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22조 부기검증원은 투자액, 재산가액, 재
산평가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제23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이 끝났을 경
우 부기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기검증보고서에는 부기 계산과 결산 내
용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부당하며 의견상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부기검증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요
구에 따라 부기 계산과 결산, 부기문건의
작성과 같은 것을 방조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료를 내야 한다.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료금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26조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료
금은 부기검증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비로 지출할 수 있다.

부기검증사무소는 분기제정부기결산서를 다음분기 첫달 20일까지, 연간제정부기결산서를 다음해 2월 15일까지 중앙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7조 부기검증보고서는 부기검증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영구 보존한다.

제 4 장 제 제 및 분쟁해결

제28조 이 규정을 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부기검증원자격을 박탈하거나 500~2,000원의 벌금을 불리며 이긴 행위가 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29조 부기검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부기검증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류통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화폐류통체계와 질서를 세우고 화폐류통을 원활히 보장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의 류통화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권(이 아래부터는 조선원이라 한다.)이다.

제 3 조 지대안에서는 외화현금(외화와 바꾼 돈표 포함)을 류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 또는 외화교환소(외화교환대리소 포함)에서 조선원 현금과 바꾸어 써야 한다.

제 4 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 공화국 국민(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의 화폐류통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제 5 조 지대안의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통일

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은행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에는 중앙은행과 지대중앙은행지점이 포함된다.

제 6 조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있는 기관, 기업소사이의 정제거래에 따르는 무한금거래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외화로 할 수 있다.

제 7 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지대안에서 정제거래를 하는 경우 외화현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기관, 기업소는 기업을 하여 취득하였거나 필요이상 가지고 있는 조선원현금을 제때에 지대거래은행기관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 9 조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환자은행은 조선원현금을 중앙은행이 정한 한도안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제 10 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조선원을 다른 나라에 내갈 수 없다.

제 11 조 중앙은행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공정리자률과 금융기관의 예금지불준비금의 적립비율을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대안에서 조선원현금에 대한 류통을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 공화국국민이 지대에 가지고 들어가거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조선원현금과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으로 송금하는 조선원의 한도는 중앙은행이 정한다.

제13조 조선원과 외화의 교환비율(이 아래부터는 환률이라 한다.)은 지대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지대외화관리기관은 외화에 의한 수요와 공급을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환률을 변동시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지대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률은 지대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지대외화관리기관은 지대안에 외화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화조정기구는 조선원현금, 외화현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봉사기구이다.

제16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외화현금을 조선원현금과 바꾸었을 경우 외화교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교환한 조선원현금은 외화교환증에 밝힌 교환액범위 안에서 다시 외화현금과 바꿀 수 있다.

제17조 개인이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으로 받은 외화는 조선원현금으로 내주거나 일정한 한도안에서 외화현금으로 내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곳으로 송금해 주거나 예금으로 받아들인다.

제18조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지대밖에 있는 공화국령역안의 기관, 기업소사이 경제거래와 관련한 무현금거래에 따르는 외화와 조선원과의 환율은 해당 거래당시의 지대 환율을 적용한다.

제19조 조선원을 경영수입으로 하는 기관, 기업소는 빈 조선원을 외화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원을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조선원을 버는 데 지출된 수입 상품 및 원자재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금액과 얻은 리윤의 70%까지로 한다.

제20조 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판매하여 빈 외화의 일정한 액을 외화로 전환시키는 준

비금으로 거래 은행돈자리에 늘 남겨 놓아야 한다.

지대안의 외국환자은행은 은행돈자리에 남겨놓은 준비금을 원천으로 기관, 기업소가 번 조선원을 외화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준비금의 범위는 외국환자은행이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21조 예금한 외화현금은 예금액범위안에서 다시 외화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으로 받아 예금한 외화는 그 범위안에서 다시 외화로 전환할 수 있다.

제22조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은 조선원현금과 교환한 외화현금의 40%를 지대중앙은행지점에 의무적으로 맡겨두어야 한다.

제23조 지대중앙은행지점은 외화와 교환한 조선원현금을 다시 외화현금으로 바꾸어 주는데 필요한 외화교환준비금을 늘 보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외화교환준비금의 보유한도는 지대안에서 이루어진 외화교환액의 40%로 한다.

제24조 외화교환준비금은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쓸 수 없다.

중앙은행은 외화교환준비금의 보유정형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은 월현금(조선원, 외화)수불정형을 다음달 5일안으로 지대중앙은행지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이 규정을 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1,000~5,000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거래되는 조선원현금과 외화현금을 몰수하며 이간 행위가 업종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국경검역규정

1996. 6. 18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전염병과 해로운 벌레, 잡풀, 독성물질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다른 나라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들어오거나 지대에서 다른 나라에 나가는 여행자와 짐, 수송수단에 대한 국경검역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제 3 조 지대에서의 국경검역은 국경출입지점에 있는 국경검역기관이 한다.

국경출입지점에는 지대안의 국경철도역과 국경건늬길, 자유무역항, 항공역이, 국경검역기관에는 국경위생검역기관, 국경수의 검역기관, 국경식물검역기관이 포함된다.

제 4 조 국경위생검역은 여행자와 의약품(독약, 마약, 극약 포함), 혈액과 혈장, 인체 병원성미생물균주, 사람이 먹을 수 있게

가공한 식료품(고기, 알과 같은 동물성식료품은 제외), 전염병발생지역에서 들어오는 물품, 시체를 넣은 관, 그것을 실은 수송수단(이 아래부터는 국경위생검역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다.

제 5 조 국경수의검역은 동물, 그 부산물 및 가공품(국경위생검역대상은 제외), 알과 정액, 동물성배자, 수의약품(수의용 독약, 마약, 극약, 생물약품 포함), 수의병원성미생물관주, 동물성집송막이, 사양관리도구, 깔개, 그것을 실은 수송수단(이 아래부터는 국경수의검역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다.

제 6 조 국경식물검역은 식물과 그 표본, 씨앗, 알곡, 납세, 과일, 감자, 목화, 잎담배와 판담배, 약초, 반가공한 식물성제품, 농작물의 부산물과 그 가공품(국경위생검역대상은 제외), 목재, 토양과 그 표본, 식물성집송막이, 식물병원성미생물관주, 그것을 실은 수송수단(이 아래부터는 국경식물검역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다.

제 7 조 국경검역기관은 필요한 경우 쌀, 밀

가루, 고기, 물고기를 비롯한 식료품과 그 원자재, 식료품의 포장재와 같은 검역대상에 대하여 공동검역을 할 수 있다.

제 8 조 국경검역은 검역대상이 려행자인 경우에는 국경출입지점에 도착한 즉시, 기차, 자동차, 비행기인 경우에는 국경출입지점에 머무르는 시간에, 배인 경우에는 해가 뜬 다음부터 지기전까지의 사이에 한다.

제 9 조 다른 나라 배는 1지점에 도착한 즉시 검역 신호기를 띄우거나 검역신호등을 켜야 한다.

검역신호기나 검역신호등은 국경위생검역이 끝난 다음 내리우거나 꺼야 한다.

제 10 조 국경검역은 검역문건소지정형을 확인하거나 검역문건의 내용과 검역대상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한개의 국경검역대상을 놓고 여러 국경검역기관이 공동으로 검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역대상을 맡은 국경검역기관이 통일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국경검역기

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1조 국경검역을 위한 시료채취대상과 분석에 필요한량은 해당 중앙검역기관이 정한다.

중앙검역기관에는 중앙위생검역기관과 중앙수의 검역기관, 중앙식물검역기관이 포함된다.

제12조 중계점, 통과점의 국경검역은 외형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해로운 벌레가 있거나 역한 냄새가 나는 경우와 포장이 터졌거나 산적점인 경우, 짐임자나 수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형검사밖의 국경검역을 할 수 있다.

제13조 국경검역은 짐임자나 수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탑회실에서만 할 수 있다.

제14조 짐임자나 수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경검역기관이 요구하는 필요한 검역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검역조건에는 봉인을 뜯거나 포장을 해치며 시료를 뜨는 것과 같은 조건이 포함된다.

제15조 국경검역기관은 국경검역과정에 전

염병환자나 그 접촉자, 전염병의심자, 전염병에 걸린 동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방역기관과의 연계밑에 격리시키며 병균이나 해로운 벌레 및 잡풀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독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시켜야 한다.

전염병전파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와 함께 태워버리거나 매몰하며 그것을 실었던 수송수단은 소독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경검역기관은 국경검역이 끝나는 차제로 해당한 검역증을 발급하거나 검역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제17조 국경출입지점에서 치료, 소독과 같은 검역처리를 받았을 경우에는 검역비를 물어야 한다.

검역비의 기준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1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100~1,000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국경출입지점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19조 국경검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검역기관에 신고와 청

원을 할 수 있다.

산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경계통행검사규정

1996. 7. 15 정부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계 통행검사질서를 세우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대에서 나가려는 공화국의 공민과 외국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지대경계통행자라 한다.)는 지대경계통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통행검사소(이 아래부터는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제 4 조 지대경계통행자는 려권 또는 려행증, 관광증, 출입증(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통행자는 자동차통행증)과 같은 증명문건을 가지고 있어야 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출국수속표를 따로 씌우지 않는다.

제 5 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경계통행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다.

지대밖의 공화국영역을 거쳐오는 정부대표단, 공화국주제 다른 나라 대사(지대변장에 있는 병사, 도, 시, 군급 부책임자이상 포함)와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성원의 지대경계통행검사수속은 안내원과 같은 동행자가 대신하여 할 수 있다.

제 6 조 지대출입은 지대출입통로로만 하여야 한다.

지대출입통로에는 철도로 두만강-하산, 청화-학송, 후창-방진, 도로로 후창, 하여평, 하회, 원정이며 지대안의 비행장, 리진항, 선봉항, 그밖의 따로 정한 통로가 포함된다.

제 7 조 지대출입통로밖의 경계지점으로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지대경계통행검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출입국사업기관과 지대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제 9 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열차, 자동차, 비행기, 배와 지대경계통행자에 대하여 한다.

제10조 지대경계통행자는 다음과 같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1. 지대경계통행검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지대경계통행과 관련한 증명문건의 내용을 마음대로 고치지 말아야 한다.
3. 지대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4. 국가 및 군사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가지고 지대에서 나가거나 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

제11조 지대경계통행검사를 받고 있는 통행자는 지대경계통행검사가 끝나기 전에 검사장소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열차의 검사는 정해진 철도역과 열차머무름장소에서 한다. 지대경계에 있는 철도역은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열차의 편성과 도착시간을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3조 항공역은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에 비행기가 뜨거나 내리기전에 비행기 형과 항로, 국적, 승조원과 려객수를 알려야 한다.

제14조 항안에 있는 대리기관과 항감독기관은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에 배가 입출항하기전에 배 이름과 국적, 선원과 려객수를 알려야 한다.

제15조 항으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의 검사는 1지점검사만 한다.

비정상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입항검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 항에 머물러 있는 배의 선원은 항구역안에 수속없이 자유로이 상륙할 수 있다. 항에 머물러 있는 배의 선원이 항구역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은 지대경계통행자들이 지대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 국가 및 군사비밀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 그것을 압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규정을 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00~1,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몰수, 지대경계통행을 금지시키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자동차 등록 및 기술검사를 잘하여 자동차사고를 미리 막고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동차에는 승용차, 반짐승용차, 배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 특수차 같은 것이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지게차, 굴착기, 불도젤, 트랙도르, 탱크식자동차, 랭동차, 구급차, 방송차 같은 것이 속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지대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자동차소유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자동차등록사업은 지대 사회안전기관(이 아래부터는 자동차등록기관이라 한

다.)이 한다.

제 5 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 등록과 기술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조 자동차소유자는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리용하려는 경우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에는 처음등록과 변경등록이 포함된다.

변경등록에는 이관등록, 구조고침등록, 등록취소 같은 것이 속한다.

제 7 조 자동차소유자는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리용하려는 경우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처음검사, 정기검사, 자동차의 모양과 구조고침검사, 임시검사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8 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기술검사를 받으려고 할 경우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서를 자동차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차종, 자동차번호, 자동차이름, 자동차의형, 용도, 제작년도.

차탈번호, 발동기번호, 자동차색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자동차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자동차 배정 또는 구입 문건, 이밖의 필요한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기술검사 증서를 발급해주고 자동차번호를 밝힌 번호판을 팔아주며 자동차기술검사에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및 기술검사 증서에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자동차번호판의 규격과 자동차번호판을 다는 위치, 자동차기술검사 절차와 방법은 자동차등록기관이 정한다.

제11조 자동차를 폐기하거나 자동차의 모양과 구조를 변경하며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모양과 구조의 변경, 양도한 날부터 3일안으로 변경 등록을 하고 자동차등록증서와 자동차번호판을 바쳐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등록수수료를, 자동차의 기술검사를 받을 경우 기술검사료를 붙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수수료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하며 자동차기술검사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13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소유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1.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모양과 구조를 변경시킨 다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리용하는 행위
3.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 문건을 사실과 맞지 않게 만들어 내는 행위
4. 정한 기간안에 자동차 등록 또는 기술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5. 등록된 자동차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다른 번호판을 달고 자동차를 리용하는 행위
6. 고장난 차 또는 환경보호한계기준보다 매기가스를 더 내보내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행위

제1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위반조서를 받거나 500~1,000원의 벌금, 30~90일의 운행중지, 자동차몰수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벌금을 받을 경우에는 령수증을 떼주고 그 부분을 남겨 놓아야 한다.

제15조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고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록)

외국인투자 관련 서식

-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설치신청서
- 기업창설신청서
-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
- 기업세무등록신청서
- 외국인세무등록신청서
- 재산등록(재등록)신청서
-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증(다회), 자동차
통행증 발급신청서
- 자유경제무역지대 사증, 여행증 발급신청서
- 자유경제무역지대 채류증, 거주등록증 발
급신청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 발급신청서
- 입/출국수속표
- 세관신고서
- 로력채용계약서
- 로력채용신청서
- 토지리용신청서
- 토지임대차계약서
- 토지재임대신청서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설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문건
DOCUMENTS TO BE ATTACHED TO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RESIDENT REPRESENT-
ATIVE OFFICE OF FOREIGN COMPANY

1. 외국인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기업등록증서사본 3부
3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enterprise issued by the body concerned in domicile of foreign company
2. 거래은행이 발급한 신용확인문건 3부
3 copies of credit reference issued by the bank with which it keeps an account
3. 상주대표사무소 책임자와 대표들에 대한 해당 외국기업의 위임장 3부
3 copies of the letter of accreditation issued to the person in charge and other representatives by the foreign company concerned
4. 상주대표사무소 책임자와 대표들의 리락문건 3부
3 copies of curricula vitae of the person in charge and other representatives

To : _____ 앞

기업형태 _____
Type of business

기업창설신청서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COMPANY

1. 기업의 명칭 _____
Name of company

주소 _____
Address
 2. 당사자들의 이름 조선측 _____
Name of parties DPRK side

상대측 _____
Foreign side
 3. 대상추진동기 _____
Motivation for the current project
 4. 계약일자 년 월 일 조업예정일자 년 월 일 경영기간 년
Date of contract Estimated date of inauguration Period of operation
 5. 총투자액 _____ 등록자본 _____
Total amount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투자비율 조선측 _____
Proportion of DPRK side
investment 상대측 _____
Foreign side

투자단계와 기간 _____
Phasing and period of investment
 6. 업종과 경영범위
Pursuit and scope of operation
-

합영, 합작, 기업창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문건
**DOCUMENTS TO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A JOINT VENTURE**

1. 기업의 기본규약 3부
3 copies of the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2. 계약서 사본 3부
3 copies of the contract
3. 경제기술타산서 8부
8 copies of the feasibility study report
4. 상대방의 신용확인자료
Credit reference of the foreign side

합작기업, 합영기업의 경제기술타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DETAILS TO BE INCLUDED IN THE
FEASIBILITY STUDY REPORT OF
A JOINT VENTURE**

1. 기업의 명칭, 주소
Name and address of company
2. 당사자들의 이름
Name of parties
3. 조직목적과 기술경제적유효성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technical and economic effectiveness
4. 업종과 경영범위
Pursuit and scope of company
5. 경영기간
Period of operation

6. 조업예정날자

Estimated date of inauguration

7. 투자관계(조선측, 상대측)

Details of investment (JPRK side and the foreign side)

- 1) 총투자액(설비비, 건물비, 미품비, 조업 및 생산준비비, 유통자금 기타 계)

Total amount of investment (equipment cost, building cost, furniture cost, inauguration and production preparation cost, circulation capital and so on.)

- 2) 등록자본, 투자비율

Registered capital and proportion of investment

- 3) 투자방식

Mode of investment

- 4) 원물투자내용(기계설비, 미품 또는 자재명, 규격 및 용량,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생산한 나라이름, 해결방도)

Contents of investment by equipment (machinery and equipments, furniture or materials, specification and capacity, unit, quantity, unit price, sum total, name of manufacturer country, ways of obtainment)

8. 건설과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ed to construction

- 1) 연건평, 부지면적, 총건설투자액

Floor space, site area, total amount of investment

- 2) 대상별 연건평, 건설투자액, 주요공사항, 건설기간, 건설방식(자체건설 또는 위탁건설)

Floor space by projects, construction cost, major construction works, period of construction, mode of construction (self or contracted construction)

- 3) 건설대상의 위치와 선택근거, 인접과의 관계

Location of project and reason for it and relation with surroundings

- 4) 기존건물·시설물의 철거비용

Removal cost of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e

9. 생산 및 생산물처리와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ed to production and disposal of products

- 1) 지표별 연간생산량과 수출비율
Annual amount of products by indices and ratio of export
- 2) 국제시장형편과 국내수요, 수출(판매)가능성
Situation of international market and domestic demand, export (sale) possibility
- 3) 외화수지균형
Balance of foreign exchange
- 4) 폐설물의 리용 및 처리
Usage and disposal of garbage

10. 소요조건

Details of demand

- 1) 건설용 주요 원료, 연료, 자재소요량(지표, 규격, 단위, 소비기준, 연간
소요량, 보장대책)
Required amount of major raw materials, fuel and materials for construction
(indices, specification, unit, standard consumption rate, annual demand,
ways of supply)
- 2) 생산용 주요 원료, 연료, 자재의 소요량(지표, 규격, 단위, 소비기준,
연간소요량, 보장대책)
Required amount of major raw materials, fuel and materials for production
(indices, specification, unit, standard consumption rate, annual demand,
ways of supply)
- 3) 동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과 보장대책
Required amount of power, water, gas and steam and ways of supply
- 4) 수송소요량과 보장대책
Transport demand and ways of meeting it
- 5) 관리기구정원, 종업원, 기술자, 기능공의 보장대책
Ways of how to supply managerial staff, employees, experts and skilled
workers

11.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Forecast on profitability by phase

- 1) 지표별 예정수입
Estimated income by indices
- 2) 항목별 원가
Cost by category
- 3) 전산리윤
Taxable income
- 4) 세금공제방목과 기타 공제액
Tax and other deductions
- 5) 리윤분배
Dividend
- 6) 투자보상기간
Period of repayment of investment

12. 기술적분석자료
Technical data of analysis

- 1) 기본생산기술공정과 기술경제적지표
Main production process and technical and economic indices
- 2) 받아들이는 새 기술(특허권, 상표권을 비롯한 공업소유권과 기습미전, 저작권)의 내용, 그 평가가격과 실용가치
Newly introduced technology(industrial property right including patent, trade mark, utility model and copyright) and their contents, their assessed price and practical value)

13. 환경보호, 노동안전, 위생과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labour security and hygiene

14. 이밖에 필요한 내용
Others

15. 종합적분석
General evaluation

To : _____ 앞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1. 기업의 명칭 _____
Name of company

주소 _____
Address

2. 투자자의 이름 _____
Name of investor

주소 _____
Address

3. 외국인기업책임자의 이름 _____
Name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국적 _____ 전직무 _____
Nationality Former job

4. 업종, 생산품종과 규모 _____
Pursuit, type of product & scale of production

5. 총투자액 _____ 등록자본 _____
Total amount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투자형식 _____ 투자단계와 기간 _____
Mode of investment Phasing and period of investment

6. 거래은행 _____
Bank with which it keeps an account

7. 주요생산기술공정자료 _____
Details relating to major production process

4. 투자자의 소재국 해당 기관이 발급한 투자허가에 대한 증명문건 3부
3 copies of the document of approval of investment issued by the body concerned in the domicile of the investor
5.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저작권설명서 3부
3 copies of the descrip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know-how and copyrights to be invested
6. 거래은행이 발급한 투자자의 자본신용확인서 3부
3 copies of credit reference of the investor issued by the bank of his account

첨부분건 3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The form of the document No. 3 is as below

No.	기계설비 및 자재명	용도	규격 및 능력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생산공장 및 회사이름	수입허여는 나라이름	원산지
No.	Description of equipment and materials	Use	Specification & capacity	Unit	Quantity	Unit price	Sum total	Name of Manufacturer factory	Name of export country	Country of origin

기계설비명세에는 알림책을 첨부하여야 한다.

The list of machinery and equipments shall be accompanied by the catalogue

첨부분건 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 document No. 5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저작권의 명칭과 소유자명
Titl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know-how, copyright and name of owners
2.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Technical information like technical literature, drawings and operation manuals
3. 평가가액과 그 계상근거
Assessed price and explanation of how to reach it
4. 실용가치
Practical price
5. 공업소유권, 저작권의 유효기간과 증서사본
Period of validity and copies of the certificate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copyrights

외국인기업의 경제기술타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THE FEASIBILITY STUDY REPORT OF THE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기업의 명칭, 주소, 위치
Name, address and location of company
2.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기간
Total amount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and period of investment
3. 생산계획 및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ed to production plan and sale of products
4. 주요 생산장설비의 기술적 우월성 분석자료
Analysis of technical advantage of major production equipment
5. 건설과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ed to construction
6. 주요 원자재, 동력, 용수, 소요량과 보장조건
Required amount of raw materials, power and water and ways of supply
7. 종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력양성계획
Plan of employment and technical training
8.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Forecast on profitability by phase
 - 항목별 수입액
income by indices
 - 항목별 원가
cost by indices
 - 계산리윤
profit
 - 세금 및 기타 공제액
tax and other deductions
 - 순리윤
net profit
 - 투자보상기간
period of repayment of investment
9. 환경보호와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10. 이밖에 필요한 자료
Others

To : _____ 앞

기업세무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TAX REGISTRATION

기업명칭 _____
Name of company

주소 _____
Address

당사자기관 _____
Parties of company

조선측 _____
DPRK side

상대측 _____
Foreign side

기업등록일자 _____ 기업등록번호 _____
Date of registration of company Reference number of registration

경영기간 _____
Period of operation

종업원총수 _____ 그중 외국인 수 _____
Number of employees Number of expatriates

기업형태 _____ 업종 _____
Type of management pursuit

부지면적 _____
Site area

거래은행명칭 _____ 돈자리번호 _____
Name of the bank with which the company opened an account Reference number of account

등록자금 Registered capital

No	구분 Description	계 Sum total	조선측 DPRK side	상대측 Foreign side
1	설비, 비품 Equipment, furniture			
2	건물 Building			
3	유동자금 Circulating capital			
4	기타 Others			
5	합계 Grand total			

※ 기업등록증사본과 세무등록증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할것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company and the receipt for the tax registration fee shall be attached.

신청기업명, 공인 Name of the applicant body, confirmed seal

기업책임자, 인 The person in charge of company Signature

재정부기책임자, 인 The chief accountant Signature

년 월 일
Date : year month day

To : _____ 일

외국인세무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TAX REGISTRATION OF
FOREIGN NATIONAL

이름 _____
Name

국적 _____
Nationality

주소 _____
Address

리권번호 _____
Passport number

제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일자 _____
Date of issue of the certificate of stay or residence

제류 또는 거주기간 _____
Period of stay or residence

소득형태 _____
Type of income

신청자의 이름, _____ 인
Name of applicant Signature

Date : 년 월 일
 year month day

To : _____ 앞

재산등록 (재등록) 신청서
APPLICATION FOR (RE-) REGISTRATION OF PROPERTY

재산소유자의 이름 _____ 국적 _____ 민족별 _____
Name of owner of property Nationality Race

주 소 _____
Address

직 장, 직 위 _____
Occupation, position

재 산 명 _____
Description of property

단위 _____ 수량 _____ 건평, 톤수 _____
Unit Quantity Floor space, tonnage

처 음 값 _____ 대보수비 _____
Original price Overhauling cost

내 용 년 한 _____ 사용한 년한 _____
Design life-span Years of the past use

건 설 (제 작) 년 도 _____
Year of construction (manufacture)

평 가 한 가 격 _____
Assessed price

평가등록한 날자 _____
Date of registration of assessed price

※ 공증기관의 공증문건을 첨부할것
Attestation of the notary's office shall be attached.

Quantity

신청자의 이름, 인 _____
Name of applicant Signature

년 월 일
year month day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증(다회),
자동차통행증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ENTRY (MULTI-ENTRY) PERMIT &
PASS OF VEHICLE TO THE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DPR OF KORA**

이름 Name		외국분 이름 Name in native language			
성별 Sex		년 Date of birth	월	일	사 진 3X4cm Photo
현재국적 Present nationality		민족명 Race			
거주지 Place of residence					
직장직위 Occupation and position					
도착, 출발일자 Date of arrival & departure		출입 및 여행기간 Period of entry & travel			
통과지점 Boundary checkpoint					
출입 및 여행리유 Reason for entry & travel					
수 위 인 지 Revenue stamp	신청자 이름 Name of applicant		수 표 Signature		
			년 year	월 month	일 day

자동차관제
Details of vehicle

운전수이름 Name of driver				민족별 Nationality		
차형 Type of vehicle		차색갈 Color of vehicle		차번호 Plate number	제작번호 Serial number of production	
통행목적 Purpose of travel						
실은 짐 또는 실을 짐 이름 Description of freight loaded or to be loaded		규격 Size		수량 Quantity		
통행기간 Period of travel						
<p>특기란 Note</p>						
수입인자 Revenue stamp						

**자유경제무역지대 사증, 여행증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VISA, TRAVEL
CERTIFICATE TO THE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DPR OF KOREA

이름 Name		남녀 Sex		년월일 Date of birth		사진 2매 2Photos 3X4cm
국적 Nationality		민족명 Race				(사증발급 인 경우에 만 한함 (for visa only)
직업 Occupation and position						
대표단 이름 Name of delegation		체류, 거주지 Place of stay, residence				
비자종류, 번호 Type & number of passport		국경통과지점 Boundary checkpoint				
여행목적지 Place of destination		사증, 여행기간 Period of visa, travel				
신청 이유 Reason for application						
휴대품명 Description of personal articles						
동반자 Accompanist	이름 Name		남녀 Sex		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직업 Present occupation		본인과의 관계 Relation with the applicant			
수입인지 Revenue stamp	신청자 이름 Name of applicant		수표 Signature			
	Date :		년 year	월 month	일 day	

**자유경제무역지대 체류증,
거주등록증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STAY
OR RESIDENCE IN THE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DPR OF KOREA

이름 Name	외국문 이름 Name in native language			사 진 Photo 3×4cm
남녀별 Sex	난 날 Date of birth			
현재국적 Present nationality		민족별 Race		
사는 곳 Place of residence				
직장 직위 Occupation and position				
려권종류, 번호 Type and number of passport		입국날자 Date of entry	체류, 거주기간 Period of stay, residence	
체류, 거주할 곳 Place of stay, residence				
체류, 거주 려유 Reason of stay, residence				
신청자 이름 Name of applicant			수 표 Signature	
수 입 인 지 Revenue stamp	신청기관 Applicant body			
	년 월 일 Date : year month day			

동 반 자 Accompanist							
관 계 Relation	이 름 Name	남녀별 Sex	산 날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인종별 Race	현 직 Present occupation	연동사항 Note of change
유효기간 Period of validity							
			년 year	월 month	일까지 day		
			년 year	월 month	일까지 day		
			년 year	월 month	일까지 day		
			년 year	월 month	일까지 day		
			년 year	월 month	일까지 day		
특 기 관 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ISSUE OF TOURIST
CARD, DPR OF KOREA

이 름 Name in full				사 진 Photo 3X4cm
성 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민족별 Race				
현재국적 Present nationality				
현재사는곳 Present address				
현재직장 및 직위 Present occupation and position				
여권종류 및 번호 Type, number of passport				
관광기간 Period of tourism	19	년	월	일부터 Day
	From	Year	Month	
	19	년	월	일까지 Day
	To	Year	Month	
관광지 Place of tourism				
수입인지 Revenue stamp	신청자 이름 Name of applicant	수 표 Signature		
	Date :	년	월	일
		Year	Month	Day

입 / 출 국 수 속 표
ENTRY / EXIT CARD

통 행 검 사 소
IMMIGRATION CONTROL OFFICE

이름 _____ 남 / 녀
Name in full _____ Sex M / F

날날 _____ 민족
Date of birth _____ Nationality _____

국적 _____ 려권종류와 번호
Citizenship _____ Passport Type D/S/O No. _____

작장직위, 거주지
Office and position, address _____

대표단이름, 목적지 _____ 동반자
Name of delegation _____ Accompanied by _____
Destination

체류지 _____ 체류기간
Staying place _____ Staying period _____

날자 _____ 수표
Date _____ Signature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세관

세 관 신 고 서

이 름

국 적

여행번호

출발지

도 착 지

여행목적

손에 든 짐

짝

따로부친 짐

짝, 다른 사람의 위탁 짐

짝

주의사항

1. 무기, 탄약, 폭발물, 독약, 마약, 무전기 및 그 부속, 식물 및 그 종자, 쌍안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규정에 따라 처리받아야 한다.
2. 신발, 건본, 귀금속 및 그 제품, 문화유물, 가공하지 않은 축산물, 개인필수품(사진기, 손목시계, 목욕기, 텔레비전수상기등)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휴대품과 함께 1, 2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 신고서의《휴대품목록》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국내외의 화폐는 (화폐평생)란에 밝혀야 한다.
4. 부정확하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5.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 나가는 여행자는 이 세관보고서를 보관 하였다가 출국지점 세관에 다시 바쳐야 한다.

신고인수표

신고날자

년

월

일

(뒤)

후 대 품 목 록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화 폐 명 세

화 폐 명	금 액	화 폐 명	금 액

검사기록

세관원

(검인)

로력채용계약서

CONTRACT FOR EMPLOYMENT OF LABOUR

1. 기업명 Name of Enterprise			
소재지 Set			
2. 기업에 필요한 로력수 Number of Employees needed by enterprise	명 (그중 여자	명)	
관리 로력수 managerial staff	Persons (Female)	
직종별 로력수 labourers by job classifications	명 (그중 여자 명) (그중 기능공 명)		
	Persons (Female, Skilled)	
	명 (그중 여자 명) (그중 기능공 명)		
	Persons (Female, Skilled)	
	명 (그중 여자 명) (그중 기능공 명)		
	Persons (Female, Skilled)	
3. 로력채용기간 Period of Employment of Labour	년 월 일부터		
	From		
	년 월 일까지		
	To		
4. 단계별 채용기간 Period of Employment by phases			
1단계 1st phase	년 월 일부터	로력수 명	
	From	Number of Persons	
	년 월 일까지	labourers	
	To		
2단계 2nd phase	년 월 일부터	로력수 명	
	From	Number of Persons	
	년 월 일까지	labourers	
	To		
5. 교육 및 양성 내용 (노동안전기술교육, 직업기술교육, 기능공양성) Education and Training (Labour safety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skill training)			

6. 해고조건 Terms of Dismissal

7. 종업원로임(로임, 추가보수) Labour Remuneration (Salary and additional benefits)

로임액

Salaries

로임기준

Salary standard

8. 노동생활조건

Working Conditions

1) 노동시간, 휴식

Working hours and rest

2) 노동보호위생시설, 노동보호물자공급

Labour protection and hygienic facilities, supply of labour protection materials

3) 문화후생시설, 사회보험 및 어린이보육교양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social insurance, nurs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4) 이밖에 필요한 노동생활조건

Others necessary conditions

9. 계약의 변경, 취소

Amendment and/or

cancellation of contract

10. 그밖의 내용

Other provisions

기업을 대표하여

For enterprise

수표

Signature

로력알선기관을 대표하여

For Labour Service Agency

수표

Signature

소재지

Seat

전화번호

Tel

소재지

Seat

전화번호

Tel

년

Y

월

M

일

D

To _____ 앞 기업형태
Type of enterprise _____

로력채용신청서

APPLICATION FOR EMPLOYMENT OF LABOUR

1. 기업명

Name of enterprise _____

소재지
Seat

2. 조업예정일자

Expected date of inauguration

년 월 일 경영기간
Y M D Period of Operation

3. 업종, 생산품종과 규모

Line of business, products and volume of production _____

4. 종업원수

Number of employees

명 (그중 관리기구정원수 명)
Persons (Managerial staff Persons)
(그중 직종별 외국인수 명)
(Number of foreign staff by job classifications Persons)

5. 채용할 직종별 로력수

Number of labourers to be employed by job classifications

단계별 Phase	기간 Period	직종별 Job classification	로력수 Number of employees	기능관계 Skill level	비고 Remarks

6. 기능공양성

Skilled worker training _____

7. 이밖의 로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labour employment

우와같이 로력채용을 신청합니다.

We hereby apply for labour employment as described above.

기업명
Name of enterprise

공인
Official seal

년 월 일
Y M D

To

앞

토지리채용신청서 APPLICATION FOR USE OF LAND

1. 이름 _____ 2. 성별 _____ 3. 년날 _____
Name Sex Date of birth
4. 국적 _____ 5. 기업명 _____ 6. 기업의대표 _____
Nationality Name of enterprise Representative of enterprise
7. 기업소재지 _____
Seat of enterprise
8. 토지위치 (도, 시, 군, 리,) _____ 9. 면적 _____
Location of land (province, city, county, ri) Area
10. 용도 _____
Use
11. 건설총투자액 _____ 12. 투자기간 _____ 13. 임대료 _____
Total investment of construction Period of investment Rent
14. 건설완공기일 _____ 15. 지불회차 및 지불방식 _____
Completion date Currency and mode of payment
16. 임차기간 _____ 부터 _____ 까지 _____
Period of lease From To
17. 투자승인 및 자금담보확인 _____
Investment approval and financial guarantee
18. 거래은행 및 돈자리번호 _____
Name of the bank and account number

우와같이 토지리채용을 신청합니다.

We hereby apply for use of land as describe above.

수입인지 Revenue stamp

기관명 (신청자)
Name of enterprise (applicant)
수표
Signature

년 월 일
Y M D

토지임대차계약서
CONTRACT FOR LEASE OF LAND

1. 토지의 위치 (도, 시, 군, 리)
Location of land (province, city, county, ri)
2. 등록번호 3. 면적 4. 임대기간
Registration No. Area Period of lease
5. 임대차목적
Purpose of lease
6. 용도
Use
7. 이용범위
Scope of usage
8. 총투자액
Total investment
- | | | |
|----------------------------|----|--------------|
| 1단계투자액 | 까지 | 천원 |
| Investment in 1st phase By | | Thousand won |
| 2단계투자액 | 까지 | 천원 |
| Investment in 2nd phase By | | Thousand won |
| 3단계투자액 | 까지 | 천원 |
| Investment in 3rd phase By | | Thousand won |
9. 건설기간
Period of construction

10. 임대료
Rent _____

11. 지불방법
Method of payment _____

12. 사용료
Usage fee _____

13. 특혜조건
Incentives _____

14. 제재 및 분쟁해결 방법
Sanctions and method of
settlement of disputes _____

임대자
The lessor

임차자
The lessee

공인
Official seal

공인
Official seal

년 월 일
Y M D

년 월 일
Y M D

토지재임대신청서

APPLICATION FOR SUBLEASE OF LAND

1. 기업명
Name of enterprise _____

재임대하는 기업
Sublessor enterprise _____

제임대받는 기업
Sublessee enterprise _____

2. 토지내역
Description of land

1) 위치 _____ 도, _____ 시, _____ 군, _____ 리
Location _____ Province, city, county, ri _____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_____

2) 면적 _____ 3) 용도 _____
Area _____ Use _____

4) 제임대받는 기간 _____ 부터 _____ 까지
Period of sublease _____ From _____ To _____

3. 문건
Documents

1) 임대차계약서 사본
Contract of Lease (copy) _____

2) 제임대계약서 사본
Contract of Sublease (copy) _____

3) 투자능력확인
Certification of investment capability _____

우와같이 토지제임대를 신청합니다.

We hereby apply for sublease of land as described above.

제임대자 Sublessee	공인 Official Seal	수표 Signature
제임대한자 Sublessor	공인 Official Seal	수표 Signature

년 월 일
Y M D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1997년 5월 1일 발 행

발행처 통일원 교류협력국
(TEL. 738-7776, 722-8910)

인쇄처 금강문화인쇄
(TEL. 279-6901, 263-9021)

〈비매품〉